第 61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 會 議 會 議 錄

('96. 3. 25 ~ 3. 28.)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 61 屆 忠清北區教育委員會(聯席會)

議 會 會 本

(90. 3. 25 ~ 3. 28.)

忠清北區教育委員會

목 차

1996 • 3 • 통권 제47호

Ⅰ.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

Ⅱ.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5

Ⅲ.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31

Ⅳ. 부 록

1. 의사일정(안) 83

2.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5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7

5. 시·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추진현황 119

6.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121

7.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27

8.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39

第61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第 1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3월 25일 (월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附議된 案件

1. 교육감 인사
2. 경과보고
3.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9.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사회 : 의사과장 강인형)

(11시 00분 개식)

● 의사과장 강인형

지금부터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바로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11시 04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에 앞서 교육감님의 인사말씀과 아울러 지난 3월초 인사 발령에 따라 보직이 변경된 집행기관 간부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1. 교육감 인사

●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박재현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6학년도 새학기가 시작된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제61회 임시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안건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처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들은 심도있게 의결해 주시고 학교현장의 교육활동을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바입니다.

본인이 교육감으로 취임하면서 무엇보다도 충북교육의 인간화, 일류화, 민주화를 3대 조건으로 하여 세계화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본도의 교육지표로 세우고, 특히 '96학년도를 교육개혁추진의 원년으로 삼아 새학기에는 충북교육의 각종 시책들이 학교현장에 활발히 착근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다하여 왔습니다.

여기에 '96학년도 4대 교육시책을 중점으로 그간의 추진상황과 구체화된 계획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람다운 사람을 길러내기 위한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3월 새학기부터 인성교육 자율시범학교를 18개 학교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으며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사례 발표회 개최, 논문집 발간 추진, 교육전문직 특별연수를 2차에 걸쳐 실시하여 왔습니다.

'95년도 25개 시범 연구학교를 '96년도 새 학기부터는 51개 학교로 대폭 확대 실시케 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학년도는 현장교육 연구위원 30명을 발탁하여 현장교육의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1인 1덕목 실천교육을 강화하고 금학년도 계획으로 학생야영장에 8만명의 학생들을 수련활동에 참가시킬 계획이며 심성교육의 확대에도 각별히 힘써 갈 것입니다.

둘째,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에 행정적 지원을 다하여 가겠습니다.

학교경영의 발전적 요체는 자율성의 보장입니다.

'96학년도 새학기부터는 학교운영 평가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학교에 대한 평가항목은 106개에서 50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연 2회의 평가를 1회로 줄임으로써 자율적 경영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교사의 업무를 크게 경감시켰습니다.

또한 각종 교육규제를 완화·정비하고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조직 운영키로 하였으며, 금년 12월 31일까지는 규제성이 있는 모든 행정 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97년 12월 31일까지는 일체의 법규문서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학교장은 근무지 학교에 상주하면서 열린 마음으로 열린 교육을 만들어 주고, 창의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여 학교행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에 바탕한 교육개혁을 주도 할 것입니다.

교장선생님의 상주를 위한 사택 신축과 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셋째, 질 높은 교육을 통한 경쟁력 신장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도출하여 세계화 교육을 이끌어 내고 인간존중과 인성, 창의성을 지향하는 교육으로 학생들의 소질과 능력을 한껏 발휘시켜야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교수 학습방법에 부단한 연마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확연하게 신장시켜야 하겠습니다.

또한 교실의 현대화, 교단의 선진화를 기필코 이룩하여 선생님과 학생들이 보람차고 즐겁게 가르치고 배울수 있도록 창조적 공간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본도에서는 교단의 선진화를 위하여 '96학년도부터 매년 50억원씩 4년간 200억원을 투자할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학년의 실시계획으로 초·중·고 학교당 평균 1천만원을 선진화 사업에 지원키로 하였고 25개 학교를 교단 선진화 시범학교로 지정하여 800만원씩 특별예산을 추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에 따른다는 원칙

을 명심하고 교직원의 각종 연수와 연찬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교육의 질적 전환에 힘써 갈 것이며, 보충·자율학습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 학생중심의 다양한 학습방법과 수준별 반편성 운영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별활동 교육의 활성화 대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쾌적하고 편리한 교육환경의 조성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교단선진화사업 200억 투자계획의 추진과 더불어 충청북도 과학교육원 신축 이전과 외국어고등학교 독립 신축계획은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신대로 예산확보와 사업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 과학관의 운영에도 과학교육 센터로써 그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도를 철저히 할 것입니다.

신학기에는 컴퓨터 교육의 강화를 위한 추가 보급 계획에 따라 26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교육용 컴퓨터 2,255대를 구입, 일선학교에 보급하였고, 학교운영을 위한 학교경비로 전년대비 31%를 증액하여 159억원의 예산을 일선학교에 투자하였으며, 육성회비 8.8%의 인상과 함께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주지역의 학생 수용을 위한 여자고등학교 1개교 및 초등학교 3개교 신설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충주지역의 학생 문화공간을 설치하기위하여 그 필요성을 교육부에 수차에 걸쳐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97학년도 고등학교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혁을 위해서는 수요자의 욕구 충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예·체능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의 입시제도 개선과 인문계 고등학교 총정원 입학제도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학교주변의 유해환경 정화와 학생폭력 추방운동을 폭넓게 전개하여 면학풍토를 새롭게 조성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각계 각층과 연계하여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교육개혁 일선 현장 정착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역사상 문명사적 일대 전환기로 세계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은 이미 우리 앞에 세차게 도래하고 있으며, 지구촌은 국경없는 초국가적 개념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경쟁과 협력을 강조하면서 전 인류가 다함께 잘 사는 공존공영의 공동체의 구축에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5.31 교육개혁은 우리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이며, 이는 종국적으로 인재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으로 이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

으로, 획일과 규제에서 자율과 책무성 중심으로 그 틀과 제도를 과감히 고치고 새로운 인식과 발상의 전환으로 열린 교육사회의 구축과 평생 학습사회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21세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의 총체적 변화로서의 개혁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5.31 교육개혁을 학교현장에 착근시키고 세계화 교육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국가발전의 근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초점을 모아 충북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힘차게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개혁 실천의 핵심적인 과제로서 본도에서는 이미 '95년도에 20개 학교를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96년도에도 115개교로 확대하여 자율과 자치를 통한 교육 민주화를 강화하고 교육개혁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화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1일부터는 교육개혁의 현장화, 구체화를 위해 본청 기획감사실에 교육개혁 추진점검반을 상설 운영토록 하였으며, 교육감과의 대화를 확대하기 위해 P·C통신을 통한 충북교육 열린마당을 개설하고 일선학교 선생님과 학부모들의 교육의사를 광범하게 수렴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산업화·공업화를 시작한지 25년만에 기적같은 대망의 1만불 시대를 맞게 되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과감한 변신과 선진국의 진입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충북교육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다짐과 결의, 보다 겸허한 자세로 마음을 활짝 열고 교육개혁의 실천적 의지로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여 충북인재의 육성에 온갖 노력을 바쳐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교육위원님들의 행정질문도 대승적 교육적 견지에서 문제가 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동지들의 하나로 결집된 힘으로 21세기의 주역, 우리의 2세 교육이 활기차게 진군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지난 3월 정기인사로 새로 부임하신 본청 간부들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 3월 25일 충청북도교육감 김영세. 나오세요.

(새로 부임한 간부들 단상 앞으로 나와 차례로 인사함)

먼저 본도 부교육감으로 부임하신 송영식 부이사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으로 근무하다 본도 부교육감으로 취임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으로 조성근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청주혜원학교 학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으로 송대헌장학관을 소개합니다.

한국교원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장선생님에서 부임하셨습니다. 전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공보담당관으로 김홍묵사무관을 소개합니다.

총무과 인사계장으로부터 승진했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으로 정금옥 지방서기관을 소개합니다.

공보담당관에서 전임됐습니다.

초등장학과장에 김천호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초등장학담당관에서 승진했습니다.

다음에는 중등장학과장에 이재관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진천교육청 학무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등교직과장으로 김영기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생활지도담당장학관을 역임했습니다.

사회교육체육과장으로 한상우장학관을 소개합니다.

체육교육담당장학관을 역임했습니다.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2. 경과보고

(11시 20분)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 및 집회공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96년 3월 16일 교육감으로부터 집회 요구되어, 같은 날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공고 제96 - 3호로 집회 공고하였습니다.

다음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 결과입니다.

제60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신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96년 2월 16일자로 공포하였으며 충청북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은 같은 날 집행청에 이송하여, 그 중 조례안은 '96년 2월 29일 제1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난 3월 8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 금회 처리안건입니다.

금회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그리고 정만재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겠습니다.

또한 김정길위원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아울러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21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는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하여 교육감 제출 의안 및 위원 발의 의안 처리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3월 26일은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3월 25일부터 3월 28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23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정길위원외 세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김정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길위원 발언대로 나옴)

● 김정길 위원

김정길 교육위원입니다.

본인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4조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시는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가 개최되는 3월 27일과 28일 각 10시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그리고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관리국장, 이상 5명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교육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상 제안한 바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길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길위원께서 제안설명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6.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25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동일국 소관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평소 충북 교육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회계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중 공무상 재해 보상금 부족분 지원 5,078만 3천원과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8,800만원, 합계 1억 3,878만 3천원을 지출하였기에 본도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공무상 재해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충북상고 교감 허영회의 재해보상금 지급액이 부족하여 5,078만 3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고, 또한 '95년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학교 시설의 조속한 복구비를 위하여 현도상고 외 3개교에 8,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 총 2건에 1억 3,878만 3천원의 예비비를 지출 사용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별첨2

(끝에 실음)

이어서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 공동체를 구축,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공립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26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44조의2와

1996년 2월 22일 공포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고, 운영위원회의 설치특례로 학급수가 6학급이하이거나 학생수가 100명이하인 소규모 학교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일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자격으로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2개교 이상의 위원을 겸할수 없도록 하였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학교의 예산·결산, 교복·체육복선정, 수학여행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 요청할 교원의 선정, 기타 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건의 제출·발의는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금년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대상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청주, 충주, 제천시 소재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와 '95학년도 시범운영학교 20개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24개교로 모두 115개교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별첨3

(끝에 실음)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은 오는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도 교육위원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7.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4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만재위원외 세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으로 발의 위원을 대표하여 정만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만재위원 발언대로 나옴)

● 정만재 위원

정만재 교육위원입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 및 법령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가 대통령령 제14,877호로 '95년 12월 30일 개정되었고 또한 공무원의 국내외출장시 경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인 국내·외여비규정이 '95년 12월 29일 및 '95년 6월 10일 각각 개정됨에 따라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액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 또는 조정하고자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위원회 사무실 소재지로부터 편도거리 60킬로미터이상 원격지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참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며 위원이 국내외 출장시 근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을 현실화하여 상향조정 지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4

(끝에 실음)

(정만재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처리 역시 앞서 구성키로 한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서 해당 소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8.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37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한 바대로 김정길, 조일환,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위원님, 이상 다섯분을 위원으로 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제의한 바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11시 39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회의록 서명위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사전협의의 순서에 따라 김정길, 정만재 두분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김정길, 정만재, 두분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산회후 회동하셔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 11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신용철,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 출석공무원 : 17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송영식,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홍묵,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의사일정(안) : 별첨1
-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별첨2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별첨3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별첨4

第61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第 2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3월 27일 (수요일) 10시 02분

議事日程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먼저 지난 3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를 같은 날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교육감으로부터 교육행정 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해 부교육감이 금일 교육부에서 개최되는 시·도교육청 교육개혁추진위원장회의에 참석관계로 출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철위원께서는 오늘 일신상의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안병일위원님께서는 조금 늦어진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4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교육행정사무의 발전에 대한 계획 및 현황 등을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것으로, 특히 이는 보다 발전적인 충북교육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본 건을 '96학년도 신학기 초에 다루게 되었음은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는 모두 다섯분 위원께서 질문요지를 제출하셨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위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2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길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길위원 발언대로 나옴)

● 김정길 위원

교육위원 김정길입니다.

지역순위로 발언을 하게 되다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김영세 교육감도 금년을 교육개혁 착근의 해로 정하고 갖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 올해 충북교육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변화와 시련이 예상되는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교육감은 지난 3월 12일자로 부임 1백일을 맞이했으며 그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확보, 예·결산 통과, 대규모 교직원 인사등 어렵고도 힘든 많은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취임과 함께 교육지표를 세계화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으로 정하고 10대 과제를 밝혔으며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기저를 선정,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권 안에서의 교육이 발전하려면 많은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되겠습니다만,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면서 발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독선이며 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급자와 수요자간에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 공급자가 되는 충북교육청이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겠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시책과 구성원의 사명감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감께서 밝히신 10대 과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당한 것이어야 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또한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이 밝히신 10대 과제는 교육감 개인의 구상에 의해 마련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기획 팀에 의한 것인지 계획수립의 주체와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10대 과제가 수요자나 지역사회가 공감할 것이라는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의 10대 과제의 공론화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이 밝히신 10대 과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필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10대 과제에 대하여 일선교사들이 어느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10대 과제를 모두 숙지하고 있는 교사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2,3개 정도밖에 알지 못하고 있으며 전혀 모르고 있는 교사들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선교사들이 교육감의 의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감의 의지를 어떻게 수요자와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져 주겠습니까?

본 위원은 지역사회로부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10대 과제를 지속적으로 공론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주기적으로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직원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을 경제논리로 말하자면 공급자는 무형의 재산을 파는 자이며 수요자는 이를 사는 자인데 제도권 안에서는 수요자가 공급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교육발전에는 공급자의 질과 사명감이 먼저 높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급자의 질을 높이고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안이 있겠으나 우선 철저한 인사관리와 교직자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우수교원 확보와 능력 중심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우수교원 확보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원 명예퇴직 확대를 위해 작년보다 21%나 늘어난 70억원의 예산을 올해 확보하였는데 이는 우수요원 확보라는 명목으로 교원 물갈이의 폭을 넓혀 나가려는 의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감께서는 능력 중심인사에 대해 강한 집착을 가지시고, 직급별 능력인사 지침까지 마련하였으며 지난 3월 1일자 정기인

사에서는 상당수의 관리자들을 전보하면서 능력을 중시하여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인사는 공개된 인사지침에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에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직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3월 1일자 인사에서 교육감 또는 고위 공직자의 마음에 든다거나 측근이라하여 능력점수를 높이 준 사례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직원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모두에게 말씀드린 대로 교직원의 사명감은 공급자가 수요자들에게 갖추어야 할 기본적 예의이며, 교직자의 사명감은 사기진작을 위한 최고 책임자의 의지에 많이 좌우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시책이 있겠으나 교원 해외연수와 기능직 순환근무제에 대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시대에 있어 교육의 세계화는 필연적인 과제이며, 이에 따라 교직원들에게 해외견문을 넓히는 일은 사명감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충북교육청은 일부 특수직 교직원들에 한하여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 폭이 좁고 그나마 선발기준이 모호하여 불만이라는 것이 교직자들의 여론입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계획과 대상자 선발기준을 밝혀주시고 해외연수 대상을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청 관내에는 서무보조, 기사, 조무등 상당수의 기능직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순환근무의 폭이 적어 교직원, 기능직 모두가 불만의 소리가 높습니다.

기능직도 교직원들처럼 순환근무 규정을 두어 순환근무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 실력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취임 1백일을 맞는 기자회견에서 교육 공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교육수요자와 함께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님들께서 바라는 것은 학생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족함 없이 성장함은 물론 인성, 실력, 건강에 대해 무엇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밝히신 실천과제를 보면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개성존중 교육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수요자가 원하는 실력향상에 대하여는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염려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학생들에게 특기신장, 자기발전의 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지난 겨울방학중 고 3학년 학생을 제외한 중·고등학교 전학년에 대하여 보충수업을 폐지한 바 있었으나 올해 들어 운영개선을 통해 이를 완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자율학습도 일률적으로 교과과정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 다양하게 실시키로 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님들은 타시·도와의 비교를 통하여 충북의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개선이 결국에는 전국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대학입시에서 실력저하현상으로 나타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타 지역과 비교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만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수요자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지침이 일관성있게 확실히 실천돼야 되겠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충북도내 학생들의 실력이 전국에 비하여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 실력향상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농간의 실력격차 해소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를 알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에는 중·고등학생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마저 도시로 유학하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까지 농촌학생들의 지역학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학생들이 어려운 학비부담에도 불구하고 도시로 유학을 가는 것은 농촌학교가 실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제에 교육감께서 밝히신 농촌지역 거점 우수학교 육성은 매우 시기적절하며 바람직한 것으로 환영합니다만, 농촌학교가 실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는 복합적인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촌지역 실력향상을 위해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주지역 초등학교에는 청원군과 괴산군등 인근 농촌지역 학생들이 다수 유학하고 있어 교실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데 그 실태를 밝혀 주시고,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성교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

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은 수요자들의 절대적인 바램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요구 또한 큰만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밝히신 10대 과제를 보면 인성교육에 대해 각별한 의지를 기울이고 있으나, 실천계획에 있어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6개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과 활용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비행청소년이나 패륜아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학생들은 문제학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정부도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 배양을 도모키 위해 청소년 1인 1단체 가입을 적극 권장, 앞으로 2,3년 내에 학생의 4,50%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년단체 참여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경상북도 교육청은 청소년단체총재 표창을 받은 교사에 대하여는 순환보직때 가산점을 주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할 때는 이를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에서도 청소년단체에 활동하고 계신 교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이해 별도의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시설공사 발주에 대하여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대전 지방검찰청의 수사자료를 보면 대전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의 시설계 직원들이 교육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설계용역금액의 10%내지 20%의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해 준다는 명분으로 사례비조로 받아서 사무실 운영비 및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이 몇년에 걸쳐 반복되어 온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직원이 구속되고 파면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는 입찰에 낙찰된 설계사들의 공사실행금액 내역서 작성에 시설과 직원들이 아르바이트라는 명분을 내세워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충북도교육청과 산하 시·군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낙찰된 설계사가 공사비 내역서를 직접 작성하는지, 또한 전문업체에게 하청을 주고 있는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하며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길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일환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일환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일환 위원

질의에 앞서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관 그리고 위원님들께 일일이 자료를 배포해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교육감님 그리고 의장님께만 저의 질문요지를 배포하여 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조일환 교육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관계관 여러분!

교육개혁은 국운이 걸린 절대절명의 시대적 요청이며 폭증하는 정보문화, 급변하는 세계화에 대비하는 현실에 우리의 교육이 변하지 않고서는 국제경쟁력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 국민소득이 만불시대를 넘어섰습니다.

놀라운 경제성장의 공은 모두 산업현장의 역군의 몫이라면 자원과 자본이 열악한 우리 처지에서는 오늘의 위대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에너지는 산업역군을 양성한 교육의 힘이라 해도 지나친 찬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은 대승적 교육적 견지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해결해야 할 행정질문의 기능을 다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본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의 솔직한 충고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회에서 흔히 "교직자는 말을 잘한다."라고 평합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으로, 부정적 의미로는 임기응변에 능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감 취임 백여일의 시점에서 행정질문의 성격은 교육감의 행정결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취임사에서 밝히신 역점시책의 충실한 실천이 가능한가의 여부를 가늠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15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이 상정된 후, 본 위원이 현장을 조사한 바, 3월 8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을 해당 126명의 교감회의에서 시달하였고, 3개교를 표집조사한 바 시달된 지침의 일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 및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동료의 아픔을 무릅쓰고 법을 준수한다는 교육감 취임선서를 준수하려는 고매한 의지로 특별 상여수당 지급을 보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주주의는 의회주의요. 의회주의는 법치주의입니다.

교육부로부터 예산이 시달되었음에도 추

경예산집행의 정당한 절차없이 예산집행을 할 수 없다는 회의규정을 실천하여 법을 준수하는 전국유일의 훌륭하신 교육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조례도 없이 지침이 시달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불법적으로 설치된 사실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관계부서의 직원에게 구두로 문의한 바, "일신여고 및 제천지역 학부모의 집단항의로 조례상정이 늦었다." "교육부로부터 지침시달이 늦어 불가능 했다." 또는 "업무과다로 일정을 맞추기 어려웠다." 등의 설명이었습니다.

금학년도 입시의 학부모 집단항의가 전국적인 현상이고 교육부로부터 같은 일자 지침시달내지 시행령 공포 이전의 행정조치를 시행한 타시·도의' 경우는 별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 참조 시·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추진현황 : 별첨5

(끝에 실음)

별표에 의하면, 부산, 경북, 강원의 3개 시·도는 교육위원, 그리고 광역위원회의 의결한 조례에 준하여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본도는 현재 상정 심의중이며 상정 각 시·도별 일별 순위가 14위이고 보면 가히 본청의 행정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통계에 의하면, 본도의 교육경쟁력이 13위, 평생교육 경쟁력이 14위의 현실에서 과연 도약하고 앞서가는 충북교육의 구현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앞섭니다.

이 시점에서 과감한 결단이 요망됩니다.

구태의연한 구각을 벗고 변화를 싫어하는 그릇된 관행과 타성에서 각성 변신해야 된다고 믿어, 본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교육감님께 질문합니다.

첫째, 기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를 철회하고 앞으로 제정되는 조례에 의하여 재설치가 요구됩니다.

둘째, 학교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와, 특히 규정을 무시한 행정집행의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부서간 업무량의 과다와 인력배치의 형평을 재평가하여 균형적 업무분담으로 효율적인 행정력 제고가 요망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의 비행과 폭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청소년의 비행과 폭력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염려되는 바는 근간의 추세가 연령이 낮아지면서 성별을 초월하여, 성별을 초월하여 그 내용이 날로 흉폭화하도 지능화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가기 싫다.", "학교가 무섭다." 라는 어린이의 울부짖음,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는 초등학교 어린이, 머리카락과 혀를 자르는 비정한 행위가 어린이의 짓이라면 크게 우려할 바 입니다.

수일 전 부강초등학교 여학생 집단폭행으로 입원가료 중이며, 그 수법이 일본의 이지메현상이라는 보도를 접하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고, 부끄럽고, 야속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더욱이 이 문제의 심각성과 관계되는 어른들이 책임을 면하려는 임기응변이었습니다.

1년여 두 어린이와 자모간에 심각한 다툼이 있음에도 적극적 지도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사고발생 후의 수습현장은 마치 책임전가의 경시장 같았습니다.

1년을 두고 특히 심히 다투었다는 두 어린이의 학생발달상황의 객관적인 자료로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두 어린이 모두 4년간 개근이고 학과성적, 행동발달사항, 기타 학교의 활동이 모범 어린이였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범 어린이를 문제 어린이로 만든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누구하나 "내 탓이요."하고 선듯 책임지고 지도하려는 어른이 없는 현실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답변에 참고하여 근본적 예방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지도 감독관과 관련 교직원의 미온적 대응으로 미루어 투철한 인성교육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둘째, 두 어린이가 1년 간의 장기간 갈등으로 다투었는데도 생활지도 및 상담한 객관적 자료가 없습니다.

셋째, 생활기록부의 활용이 형식적입니다.

원인제공을 모두 피해 어린이에게 지우려는 책임전가 풍토가 짙습니다.

셋째 질문을 드립니다.

5.31 교육개혁이 발표 시행한지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소비자는 교육개혁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 품종의 나무를 옮겨 심었는데 새 잎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와 교단이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진화된 교실에서 열린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하는 학교는 학생들이 즐겁게 생활하고 학교에 가고 싶어하면서 학생 개인의 소질과 특성이 개발, 신장되고 있습니다.

예로, 충주에서 동북 방향으로 약 10킬로미터 지점 농촌에 위치한 오석초등학교의

열린교육, 실천학교의 경우 농촌에서 도시로 전출하던 학생이 역으로 충주에서 15명이라는 어린이가 시골 오석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사실은 열린교육 프로그램 학습이 교육수요자의 교육 욕구를 만족시켜 준다는 본보기입니다.

강원도, 전라도 등 각지에서 선생님들이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린교육을 성공한 대표적 사례를 신교육의 메카(Macca:발상지)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구태의 학습방법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노래가 가요 순위 1위로 불려지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됐어 됐어 그런 가르침은 됐어 조그만 교실로 몰아 놓고 9백만의 머리속에 모두 똑같은 것만 집어넣고 사방이 막힌 우리를 먹어 삼킨 이 시커먼 교실에서 내 젊음을 보내기는 너무 아까워.....』하는 서태지의 노래의 구절입니다.

참으로 가슴을 메어지게 하는 노래 말입니다.

한참 아름답게 피어야 할 꽃송이들이 방황하며 몸부림 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위 학교의 열린교육 성공사례를 보아 비젼(Vision)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학교가 이 학교처럼 주변에서 학생이 몰려 들도록 열린교육 프로그램으로 신체제의 열린교육 수업에 참여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교단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열린교육 프로그램의 준비내용과 보급현황입니다.

신체제의 열린교육 수업에 관한 교사 연수현황.

셋째가 앞서가고 있는 열린학교의 지원, 구체적으로 인사·재정에 대한 방안.

넷째,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본도의 특수시책.

마지막으로 신설학교 및 이전학교 개교에 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신학기 3월 초면 연중행사처럼 개교학교의 미비한 교육환경과 교구준비의 불충분으로 학교교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질책과 그 개선을 언론이 힘주어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육환경과 교육기자재가 교육의 성과와 상관관계라는 학설은 지극히 일반화 된 이론입니다.

더욱이 어린이일수록 환경변화에 대한 정신적, 신체적 저항이 크고 민감합니다.

충주시 금가초등학교의 경우 군사상 계획에 의거 '97년 2월 말까지 이전 개교해야 할 시한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유재산 변경계획도 확정하지 못한 현실이니 이

역시 이전 개교 일정의 차질은 물론 공기부족이 예상됩니다.

교육감께서는 관행처럼 공기가 부족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교육감님의 임기 4년의 충북교육의 연도별 선진화 구현, 구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만재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재위원 발언대로 나옴)

● **정만재 위원**

정만재 교육위원입니다.

우선 복식학급의 해소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 교육과정은 단식학급 운영을 전제로 구성된 것이므로 그대로 복식학급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교사의 교과적 지도력 분산으로 당연히 수업 결손이 발생되며 의무교육의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불평등 교육을 받고 있으므로 교육의 평등주의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교원의 자질 측면에서 볼 때 교원양성기관에서 단식학급 운영을 전제로 한 교육을 받았으므로 복식학급의 운영에 대한 기본 자질이 부족되며 2개 또는 3개 학년의 교육과정을 재편성하여 복식과정을 조직하는 능력과 학습과정의 설계와 수업전개에 따른 수업기술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수업방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1명의 교사가 2명이상의 교사들이 지도해야 할 2개 학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지도해야 하기 때문에 지도력이 분산되어 학습효과가 저하됩니다.

수업문제 해결의 지속시간과 지도시간이 1개 교육과정에 집중되어야 하나 2개 과정을 지도함으로써 지도과정이 모두 장애를 받아 학습효과가 저하되며, 2개 학습과정이 하나의 물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주 학습과정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본도 교육청의 1996학년도 복식학급의 편성원칙을 보면 1개 학년이 18명이하이고 2복식은 계 16명이하, 3복식은 계 7명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본교 44개교 분교장 46개교로 합계 90개교에서 3복식이 4학급 학생수 22명, 2복식이 159학급 학생수 1,605명이 복식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수의 감소로 부득이 복식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복식수업을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일반학

생에 비하여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단식수업을 하는 학생들과 똑같은 여건하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다만 학급의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2복식 내지 3복식 수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볼 때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모든 면을 고려할 때 3복식 수업은 학습에 큰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식수업을 받는 지역은 대다수가 농촌지역으로 문화시설 및 모든 환경이 도회지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복식학급의 운영은 예산 및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부득이 한 조치이기 하지만 복식 학급수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현재의 여건하에서는 복식학급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렵지만 복식학급의 인원 수를 지금보다 하향 조정함으로서 복식학급 수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복식학급 수를 줄이는, 즉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학교주변 폭력 조직의 현황 및 근절대책에 대한 건데, 이것은 앞서 조일환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을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만재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발언대로 나옴)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교육위원 여러분 또한 충북교육을 총 책임지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세 교육감님과 관계관 여러분!

새해 새학년 초 새로 취임하신 교육감님을 상대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21세기의 문턱에서 내일의 밝은 청사진을 그리면서 21세기 주인공이 될 주역들을 교육하고 있는 참으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것을 대비하기 위한 특단의 교육개혁을 마련하여 질 높은 인간화 교육에 힘쓰고 있는 줄 알고 있으며, 또한 본도 김영세 교육감님께서도 교육감 취임사에서 화려한 교육시책을 발표하여 내고장 교육발전에 획기적인 성과가 있으리라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각각 1일 생활권 시대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경쟁시대에 들

어섰습니다.

세계화 속에서 일류 국가, 일류 사회, 일류 산업을 이룩하지 못하면은 살아 남지 못하고 완전히 낙오가 되는 세상에 오로지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은 수준 높은 교육의 힘만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하는 홍익인간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파행적이고 편견되게 입시위주 교육에만 치중하여 왔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들을 야기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보면은 입시교육을 탈피하고 인성을 중요시하는 전인교육에 치중하고 참교육을 실시하여 질 높은 충북교육을 이룩한다고 하였습니다.

모쪼록 충북교육이 알차고 향상있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정길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린 사실입니다마는 중·고등학교의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래의 보충수업은 전학생에게 일률적으로 학생이나 학부형의 의사에 상관없이 학교측에서 일방적으로 국·영·수 중심으로 해왔는데 이것이 바로 학교교육의 실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한참 성장하여야 할 학생에게 정규수업도 지겨운데 아침 저녁으로 틀에 박힌 보충수업을 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율학습이라는 명목으로 밤늦게까지 붙잡아 놓고 있으니 참으로 문제가 아니될 수 없습니다.

저마다 지닌 개성과 소질을 충분히 개발하여 진정한 일류학생으로 성장하게 하게 함이 좋으리라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보충수업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육위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교육감님께서는 가급적 보충수업을 안한다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만약 보충수업을 일체 안한다면은 아직은 입시경쟁이 전국적으로 대단히 첨예화되어 막말로 사생결단을 하는 판에 유독 우리 도만이 보충수업을 안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않은가 싶어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보충수업을 안한다면은 도청 소재지 또는 시 지역은 그런대로 학원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군·읍이하 지역은 학원이 없어서 보충수업을 할 수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학원이 있는 곳에도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하면은 보편적으로 만원이하의 보충수업비만 내게 됩니다마는 학원에서 할 것 같으면 한과목당 보편적으로 3만원이 됩니다.

국·영·수만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여만원

의 학원비가 들기 때문에 학부형들에게 또는 보충수업을 하는 학생들에게 막중한 경제적인 부담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오후나 밤에 학생 교내의 생활지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보충수업을 한다면은 이제까지의 방법을 탈피하고 어떠한 이상적인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장단점을 들어서 교육감님의 고견을 묻습니다.

이상 보충수업, 자율학습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교육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윤 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윤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경윤 위원**

교육위원 이경윤입니다.

존경하는 박재현 의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교육위원과 관계직원 여러분!

저는 농어촌 교육진흥지역 지정상의 형평상 문제에 대하여 첫번째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농어촌교육진흥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근무 교원에게는 인사고과상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농어촌 진흥지역을 지정하면은 상당한 타당성과 객관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사한 지역적 여건임에도 농진지역으로 지정받고 또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해당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불만의 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일례를 들면 과거 제천군에 속했던 지역은 거의 모두 농진지역으로 지정을 받았는가 하면, 과거 중원군에 속했던 지역은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교통등 제반지역적 여건이 제천군과 별차이가 없는데도 농진지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것이 중원군 외에도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진지역 지정상의 형평성문제에 대하여 지난해 교육위원회 본청 정기 감사에서 일부 교육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었는데, 농진지역 지정의 불균형 여부의 검토와 그 해소방안에 대하여 연구해 보겠다라고한 집행청 관계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후 농진지역 지정상의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는 어떻게 됐으며,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가지는 교육용 컴퓨터 보급 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사무가 전산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일선교단의 선진화를 위한 교육용 컴퓨터 보급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학교 규모별 배정기준 및 보급현황을 6학급, 12학급, 18학급, 이와 같은 규모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경윤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명확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0 출석위원 : 10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7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송영식,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흥묵,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추진현황 : 별첨5

第61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第 3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1996년 3월 28일 (목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1.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5. 기타안건 처리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
2.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박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1. 경과보고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들으신 '95

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같은 날 조례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해당 소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와 함께 수정안이 제안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각 안건별 심사보고를 들으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또한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신용철위원님께서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김광수위원님께서는 지역사정으로 회의 참석이 늦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2.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11시 02분)

● 의장 박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5분)

● 의장 박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 이경윤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각각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윤위원 발언대로 나옴)

●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경윤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이경윤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충청

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회기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25일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같은 날과 그 다음날인 26일 2차에 걸쳐 회의를 갖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어서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단위학교 운영의 민주적 절차와 자율성의 확보라는 대전제 아래 면밀히 축조 심사한 바, 일부 조문에서 의미의 불명확, 용어 선택의 부적정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기로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았는데,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은 소규모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여부를 학교장의 판단하에 결정하도록 하므로써 도내 상당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그 설치 여부가 의문시 되는 등 단위학교 자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고, 또한 궐원 위원에 대한 보궐선출 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명시하고자 하며 보궐선출을 유보할 수 있는 경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때로 하는 것은 최대 1학기에 상당하는 기간임을 고려할 때 운영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유보할 수 있는 잔임기간의 폭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이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있는 경우와 대표자가 운영위원회에 출석 가능할 수 있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서류제출 요구권의 부여로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최초 위원의 임기 개시일을 조례 공포일로 정하여 합리화하고자 하며, 기타 용어의 통일과 일부 조문의 적절치 못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안 제2조와 14조에서 "위원회"로 약칭한 것을 "운영위원회"로 안 제1조의 약칭 규정에 맞추어 통일하고, 안 제2중 소규모 학교의 운영위원회 설치 여부의 결정을 학교장이 하도록 한 것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하도록 하며, 안 제3조 중 궐원위원의 보궐선출 기한을 궐원된 날부터 20일 이내로 명시하는 한편 궐원위원의 보궐선출을 유보하는 단서중 6월 미만을 3월 미만으로 하며, 안 제5조 중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이 다른 학교 위원을 겸할 수 있는 범위를 1개교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의 조문제목 "위원의 퇴직"을 "위원의 자격상실"로 하는 한편 본문에 각호를 두어 명료히 정비하고, 안 제10조에 학교장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의 근거를 추가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20조 후단에,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를 추가하며, 부칙중 최초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일을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중 당해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6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별첨7
(끝에 실음)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마련한 수정안을 참석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지난 3월 16일 정만재교육위원 외 3인 위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이외의 심사경과는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의 경우와 같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역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근거법령등을 토대로 면밀히 심사하였는 바, 개정조례안이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에 충실하여 적정히 작성되었다는 데에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정만재 교육위원 외 3인 위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8
(끝에 실음)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 5인 위원이 타시·도의 조례안등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비교·분석하는가 하면, 오랜시간 난상 토론 끝에 어렵게 마련하여 의결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

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본 소위원회 심사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입안하고 본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장시간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의 관계관 여러분께 그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윤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사내용과 수정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께서,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는 교육청 관계관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본 건에 대해 조례심사소위원회 수정안과 교육감 제출 원안에 대하여 각각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소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원 거수하여 찬성)

전원 찬성하셨습니다.

전원 찬성이 되셔서, 따라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소위원회 수정안과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진행 요령은 앞서와 같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 마지막 안건인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어제 있은 간담회 협의결과에 따라 정회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본 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5.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의장 박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 의사일정 제4항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제2차 본회의에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관계관별로 일괄답변을 들으신 후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교육감 김영세

존경하는 박재현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1세기의 주역인 우리의 2세 교육이 활기차게 진전될 수 있도록 항상 충정어린 마음으로 염려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심도있는 교육행정 질문에 대하여는 대승적 견지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학교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이룩하기 위한 충언으로 받아들여 충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은 본인이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이고 충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부교육감과 해당 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길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이 밝힌 10대 과제선정 및 계획수립의 주체와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지난 11월 21일 본인이 교육감에 당선되고서 바로 본인이 충북교육을 이끌어 나갈 포부로서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세계화를 위한 인재육성 10대 방안을 본도의 교육비젼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한 주체는 본인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평소 본인이 느껴왔던 평소의 교육적 소견을 요약한 것입니다.

또 본인의 교육적 소견을 요약해서 본인의 창안으로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초등교육국, 중등교육국 장학관에게 제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제가 자문을 받은 인원은 약 8명이 됩니다.

장학관 및 그 외에 교육학 박사의 그 학문적인, 또한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교육학 박사 등 사계 권위자, 그리고 일부 일선학교 선생

님들의 검증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쉽게 이해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본인은 이제 교육감에 취임하고 나서 이 10대 방안을 발표한 것은 본인이 교육감 취임, 당선되고 나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제 교육감에 취임하면서 바로 본도 교육의 지표를 이것을 모태로 해서 지표를 설정한 것이고, 또 그에 의해서 우리 도교육청 직원에게 제가 앞으로 우리 충북교육의 7대 중점과제를 이것을 기초로 해서 냈습니다.

또 7대 중점과제를 기초로 해 가지고 본도의 4대 교육지침을 설정케 되었던 것입니다.

이 10대 방안에 대한 과정을 그와 같이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인 10대 과제가 교육수요자, 공급자,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할 것이라는 확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설명회 개최 용의를 물으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10대 방안의 내용은 본인이 평소 여러가지 학문적 조예나 교육적 소견을 가졌던 이러한 것을 기초로 해서 교육정책 분야, 또 교육내용, 교육행정, 교육환경, 교육재정 등 이 정책중심의 5개 분야입니다.

그리고 정책중심의 5개 분야에서 과학기술교육, 인성교육, 보건환경교육, 진학과 진로, 교직원 사기진작문제 등의 교육내용 분야의 개선과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천명한 5대 분야입니다.

그래서 10대 분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 5월 31일 교육개혁 이념을 바탕으로 구안된 것이기 때문에 공급자, 수요자,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감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꼭 새로운 것이 아니고, 평소 우리가 교육적 소신에 의해서 나온 거고 교육개혁안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별도의 공청회나 설명회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다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 본인의 의견을 구안한 것 뿐입니다.

인재육성 10대 방안은 본인의 구상에 의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기저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충북의 교육지표 4대 교육시책 속에 10대 방안이 집약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 이 10대 방안을 가지고서 본도 교육시책 4대 시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충북의 4대 교육시책을 숙지하고 이의 구현을 위한 실천의지와 노력이 요구될 뿐이며 10대 방안을 별개 시책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질문 네번째, 10대 과제중 우수교원 확보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셨습

니다.

우수교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대략 세가지의 큰 방향을 저희들이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원 임용후보자 선발고사를 통한 확보방안입니다.

둘째는 교원 재교육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문제.

세번째는 현직 연수와 자기 연찬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방안.

이 세가지 방안으로 앞으로 본도의 우수교원 확보책의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내용이 교원 임용후보자 선발고사를 통한 우수교원 확보방안은 교원 임용후보자 선발고사를 통하여 교원으로 갖춰야 할 소양과 교직 및 전공과목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며,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이러한 자는 선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임용고사 평가방법도 점차 주관식 평가로 전환하여 평가의 질을 높여 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재교육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계획은 현재의 교원연수 기관을 확대 지정해서 교사 수가 적은 과목의 교사, 또 자격연수와 일반연수가 3년 이상이면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오늘날 세계화 교육, 국제화 시대에 즈음해서 제일 역할의 중요성을 느끼는 영어교과 교사에 대하여는 심화과정을 설치해서 5년을 주기로 모든 교사가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교원연수 방법을 자율연수 체제로 전환하여 교원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다양한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으므로써 교원으로서의 자질함양과 전문성 신장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바로 무슨 내용인고 하니 이제까지의 연수는 연수기관의 숫자가 있고 시일이 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비율로 우리가 추천을 해서 시켰는데, 앞으로는 본인이 교사 본인이 방학 때나 어떤 별도의 야간이나 여가를 이용해서 정식으로 공인받은 연수기관에 가서 자기가 자율적으로 연수를 받은 이수증명을 떼오면은 그것을 곧 바로 자기의 연수 성적으로 가산해 주고 합산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번째, 현직연수와 자기연찬을 통한 우수교원 확보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각급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직연수와 해외연수를 포함해서 휴가중에 개인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연수가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외국에 가서라도 공인기관에서 정식으로 연수를 받아서 이수증을 떼오면은 이런 것도 전부 연수로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

다.

항상 교사들로 하여금 연구, 노력하면서 교육현장 개선에 앞장서는 우수교원을 발굴해서 그들을 표창하고 그들을 우대하는 이러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특히 우수교원 확보를 명분으로 해서 이 교원 물갈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강제적으로 명예퇴직하는 이러한 사례는 아닌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퇴직 희망자는 오히려 많아서 지금 예산이 그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편이고 그렇게 이것이 명예퇴직제도가 교원들의 물갈이에 이용되는 건 아닙니다.

또 분명히 명예퇴직은 본인이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오히려 희망자가 더 많고 예산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매년 예산을 늘려주는 것도 일선교원을 위한 이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길위원, 김광수위원께서 질문하신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은 교육수요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학습능력을 제고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보충학습하고 자율학습의 우선 첫째 정의입니다.

그러면 보충학습의 운영은 이제까지 소위 종래의 획일적인 보충수업에서는 학생의 욕구가 무시되었으므로 앞으로는 순수 희망하는 학생, 또 희망하는 학생에 의해서 그 희망하는 교과, 이 희망 학생, 희망 교과를 중심으로 수준별로 반을 편성하여 학습부진학생에게는 보충학습의 기회가 되도록 하고 우수학생에게는 수월성교육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고하니 과거에는 그저 모든 학생에게 보충수업을 획일적으로 다 했기 때문에 희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에 딸려온 것이고, 또 본인들이 학과에 필요치 않은 교과까지도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받게 되었던 것이고, 또 수준의 차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기초학력을 놓친 사람이 자기가 그 기초학력을 보충할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진학을 위한 일부 학생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냥 딸려 갔기 때문에 이를 학습부진아가 자기 실력을 보충할 기회도 안 된 것이고, 또 아주 우수한 학생에게 주어야 할 능력신장, 자기신장을 가할 수 있는 수월성 교육에도 결함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수준별 반편성을 하겠다. 수준별 반편성을 해서 본인이 자기 기초학력을 보충할 사람은 그런 기회로 하고, 또 우수한 애들은 마음껏 신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향, 이러한 방향의 기회를 제도를 택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러나 어디까지나 보충수업은 학교장의 자율적인

운영사항입니다.

그러므로 학교별의 학교별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칙만을, 원칙만을 우리가 제시하고 그 원칙을 가지고 각 학교장이 창의력을 발휘해서 그 학교의 특수성있는 이러한 보충수업의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자율적인 운영체제를 갖추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고등학교 3학년은 당면한 게 입학시험문제가 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율학습의 기회를 학교에서 제공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중학교의 전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은 일률적으로 자율학습하는 것은 폐지하고 순수한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집이나 또는 학습할 자학자습할 장소가 없는 사람은 학교의 여러 환경을 제공해서 주고, 그 이외에 자기 특기신장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시간의 할애를 위해서 자기가 보충하여야 할 학습을 또 해야할 이런 사람에게는 바로 시간을 돌려 주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자율학습을 하고싶은 사람이나 하기싫은 학생이나 같이 몰아서 획일적으로 해놓으면 결국 하기싫은 사람이 방해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순수 희망하는 학생에게 제공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그 희망하는 학생에게는 학교의 도서관이나 특별실, 컴퓨터실, 다양한 학습 장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사고하고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또 그 학생들에게 대한 생활지도나 안전지도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또 물으셨는데, 자율학습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이나 또는 실시되지 않을 때에는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특별 교과지도도 보충지도를 할 수 있게 지금 금년서부터 교육부가 지침을 내려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의 교육활동으로 국·영·수의 특별지도나 또는 컴퓨터 및 서예, 예·체능 등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특별지도를 실시하고 또한 취미활동이 되도록 운영하겠으며, 특기신장 및 잠재력 신장의 기회로 제공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욕구가 충족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운영될 경우에는 전인교육은 물론이고 일부 학부모들이 걱정하시는 소위 타시·도와의 실력저하 현상은 타시·도와 비교해서 실력저하 현상은 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왜그런고 하니, 능력에 따라서 수월성 교육도 하고 학력이 미달된 학생한테는

보충의 기회로 수준별 학습편성을 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이것이 오히려 더 학력신장을 위한 좋은 방법으로 본인도 알고서 그와 같은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일환 위원께서 질문하신 교육개혁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개혁은 21세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발전의 총체적 변화로서의 개혁이고 이같은 교육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당위이며 더 늦출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육개혁은 과거마냥 아주 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꼭 우리가 다음 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개혁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을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 또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 또 자율성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운영, 또 질높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경쟁력 신장, 이러한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현장의 변화와 개혁에다가 초점을 두고서 교육개혁의 조속한 정착과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 모두의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열린교육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는 교육개혁추진위원장을 맡고있는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실제로 부교육감 이 실무자로서 그간의 추진 경위라든지 단계적으로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듣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실감나실 겁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답변을 마치고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서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과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실감있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실까요?

(김정길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 김정길 위원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길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15가지 중에서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여섯가지가 항목이 됩니다.

교육감님의 말씀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개혁의 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교육개혁의 의지가. 충북교육의 발전을 염원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충북교육에는 개선해 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일선교사들로

하여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상부기관이 공문을 보낼 때 그 문구가 공문서 문구나, 교장선생님들의 지시태도, 학교운영방법이 아직도 권위주의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구시대적인 관행으로 교직원들은 공정성이 결여된 인사와 일선학교의 교육환경을 무시한 획일적인 행정지시와 답습적이고 모방적인 장학관행과 학교재정의 비공개 운영과 관리청 직원과 학교 직원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선 교직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충북교육에는 아직도 구시대적인 관행이 상당 분야에 걸쳐서 상존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청의 고위 공직자들과 학교장 선생님들의 의식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충북교육의 발전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충청북도교육청을 비롯한 시·군교육청 직원과 학교장의 의식개혁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추진하고 계신지 궁금하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영세**

예, 좋은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제일 첫째 전제조건이 의식의 전환입니다.

종래와 같은 쉬쉬하고 감독하는 행정으로부터 일선학교에 단위학교에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이제는 지원해 주는 행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교육개혁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까지 있었던 관행이 대폭 개선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일선학교에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공문서 자구라든지, 또는 교장선생님들의 권위적 태도를 선생님들이 못마땅해 할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너무 획일적인 교육체제에 있었던, 이게 병폐인데 점진적으로 이걸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 첫번째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인식의 전환이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제는 행정도 성숙돼야 합니다.

성숙돼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고하니 이제는 감독, 지도하는 지휘하는 이런 행정이 아니고 지원 조장하는 행정으로서 전환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 행정력이 성숙돼야 한다. 그 성숙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이제는 일선학교에 단위학교에 자율성를 보장하는 방향의 모든 지원행정, 이런 면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식의 전환을 제일 급선무로 삼고있고, 이제 이따가 숫자로 나오지만 교육개혁운동의 제일 첫째 항이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확실히 우리 행정에 종사하

는 사람들도 그 인식이나 태도가 바뀌야 되겠고, 또 교장선생님들의 이 창의적인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또 교장선생들로서의 교장선생님들의 자율적인 운영권을 줄 적에는 그 분들에게 그 분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피동적이고 지시일변도의 사회에서는 책임이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본인의 창의력에 의해서 자율적 운영을 할 때는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또 그 교장선생님들은 밑에 선생님들이 교사가 바로 개혁운동에 앞장서서 주도해 주지 않으면 이 교육개혁운동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개혁운동이라는 것은 정부가 무슨 개혁을 하고 재정을 내려줘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정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선학교에 선생님의 의식이, 인식이 전환되고 교육개혁운동에 본인이 스스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나오는 자세. 이것이 있어야 착근할 수 있고 학교장 선생님의 그런 역할 속에서 또한 자율적 경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교장선생님의 소위 책임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든 교육행정은 바로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에 있다. 이런 점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수업에 관한 권한도 원칙만을 우리가 내려주는 것이지 나머지는 그 학교 교장선생님의 자율권에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시정해가나, 우선 교육개혁운동의 일환으로써 제일 급선무가 이 인식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개혁 PR활동, 계도활동에서 그 활동을 제일 급선무로 삼고서 지금 그 숫자는 다음에 부교육감 보고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하고 또 이게 개선돼야 할 것으로, 이래야 교육개혁운동이 착근이 내립니다.

그 다음에 각급학교 재정공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재정공개는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이것이 정착되면은 거기서 이것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일조일석에 이루어 질 수는 없으되, 확실히 교육개혁 성공의 해로 우리가 그 뿌리를 내리려면은 이러한 것등이 방금 김정길위원이 말씀하고 걱정하신 이 내용이 개선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공감을 표해 올립니다.

● **김정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조항은 실·국장님들이나 부감님

께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교육감님께 한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문제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일자로 단행된 정기인사시에 말이죠, 교장승진자와 자격연수대상자 선발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었다는 문제가 시내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또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의정활동의 일환으로써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 충청북도교육위원회 회의규칙 54조에 의해서 후보자와 선정된 인원에 대한 사정자료를 좀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해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6조에 근무성적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이 조항을 들어가지고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한 내용은 답변이 곤란할 시에는 구두라도 설명을 해 줄수 있는 충분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의연한 그런 태로로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들어가면서 답변을 회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치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교육위원들의 권한과 권리를 크게 침해한 것으로 제가 볼 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활동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교육감님한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충북교육청에 그 내용에 상당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은폐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교육감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26조 외에 그 외에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있으면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감 김영세**

금년도 인사이동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것은 저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규정에 의해서 지금 평교사나 모든 인사가 규격에 맞춰져 있어요. 그 공식에 의해서 전부 평교사나 이 이동대상이 된 것이 서열이 다 공개돼 있습니다. 서열은 공개가 되어 있는데 단, 그 승진하는 자료가 되는 것이 소위 근무평정이라는 게 있겠죠. 근무평정이나 학교인사자문위원회의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중에서 특히 근무평정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데 근무평정에 대한 자료는 본인의 사생활에 대한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비공개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서식에 의해서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만일의 경우 그 공개함으로 인해서 당사자의 불이익이 초래됐었다든지, 명예가 훼손됐을 때는 중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가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것이지 결코 거기에 부정이 있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의가 있고 비리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척결돼야 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 모든 사항이 비밀을 전제로 한 사항에서는 질문한 분들도 그 질문한 분도 그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전제로 한 것은 공개를 하지를 못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상 질문에 대해서 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김정길 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 관계국장님이나 그 담당국장님이 같이 앉아서 볼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모든 행정 자체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기부라든지, 보안대라든지, 일거 비밀을 취하는 국가 기밀단체에서도 누가 어느 의원이든지 이렇게 자료요구를 하면은 거기다가 관리번호를 찍고 비밀문서 표시를 해 가지고 공개를 원칙으로 안한다는 입장에서 그걸 지금 전부 다 자료제출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모든 공개행정을 시도하고 열린교육을 하시겠다면서, 그러면은 제가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만약에 그 서면으로서 답변을 해 주실 수가 없다 이러면은 관계국장님이나 누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같이 앉아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해 줄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공개하지 않는 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언론이나 일반인들한테 공개 안한다는 그런 취지지,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정보수집을 하기 위해서 그걸 좀 요구를 했는데 그것까지도 안된다고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교육감 김영세

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대상은요 그 개인에게 개인 신상에게 불이익이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하겠습니다.

해당자가 되는 사람에게 동의가 있으면은 그 사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의가 있으면 공개할 수가 있지 이것이 무슨 행정의 비공개가 아니예요. 행정

의 비공개라든지 비밀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의 소위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동의가 있어가지고 와서 열람할 수 있는, 본인에게는 얼마든지 열람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와서, 당사자가 와서 "나의 근무평정을 열람토록 해다구" 그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는 공개해 줍니다. 열람해 주는 겁니다.

● 김정길 위원

교육감님, 참 좋은 말씀인데요.....

● 교육감 김영세

교육위원회 활동도 아무리 정보활동이라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 김정길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며칠전에 신문을 보니까, 한달쯤 됐습니다.

국방부에도 소장이나 중장이나 대령이나 전부 승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는 그 내용도 일반인들한테까지 다 공개를 한다고 보도가 됐었다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워 가지고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담당국장님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부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감 김영세

아니 물론 위원님이 오셔서 담당국장, 실무자한테 이 근무평정이라는 것은 평교사의 경우는 학교장이 하고 또 간부직에 대해서 또는 전문직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과 부교육감 전결로 끝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지, 어떤 본인의 불이익이 왔다고 해서 보자고 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하에서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실무적으로 거듭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입회하에 와서 보신다고 하면 그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 조일환 위원

의장님께 의사진행상 오늘의 보충질의 시간이 1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간측정도 대단히 어렵고, 또 이것이 안건당 10분인지, 아니면은 위원 1인당 10분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재현

보충질문할 수 있는 1건이 아니라 1인당에 대해서 10분이랍니다.

● 조일환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행정질문이 어느 일 개인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는 공적인 입장에서 정말 충북교육의 행정에 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과히 위원

님의 보충질의가 과다하지 않다면은 일일이 그 시간을 측정할 수도 없고 가능한한 시간을 배려해 줄 수는 없는가?

● **의장 박재현**

질문하시는 시간만 여기서 재고있기 때문에 답변하는 시간은 거기에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가능한한 시간을 지키는 게 규정상.....

● **조일환 위원**

저는 이 질문서를 이렇게 접하고 저는 어저께 나름대로 저희와 본청과는 어저께 질문을 하고 오늘 답변을 받는 자리에서 어떤 유인물을 요청하는 것은 대단히 실례입니다.

그러나 제가 교육감님께 앞으로 이러한 교육행정질문할 때는 제 나름대로는 어저께 교육감님, 그리고 부교육감님, 의장님께 유인물로 드리고 저는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그 교육감이 말씀으로 다 하시고 또 저희는 회의록을 뒤져보고 하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서 이해하는데 돕고자 앞으로 행정질문이나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 **교육감 김영세**

그 답변은요,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했으면 서면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러나 답변은 이중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구두로 답변한다든지, 아니면 서면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답변하라면 서면으로 답변해 드립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감님께서 취임 100여일을 맞이해서 그동안에 교육철학내지는 교육감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교육감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신 계획은 의욕적이지마는 과거의 교육관행이 개선의 실적의 결과는 없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사고의 전환을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교육감님께서 취임하실 때 누구든 교육감님의 업적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가 나오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며칠전 백일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평가는 사설에서 논했습니다.

매우 의욕적이고 개혁적이고 과거와 변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주제로 한 사설을 접했을 때 그야말로 진심으로 교육감님의 앞으로의 건승을 빕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교육개혁에 대해 교육철학을 논하였는데 저는 교육현장을 교육감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국운이 걸려있는, 이 오늘의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약 13조원을 또 지원합니다. 대단한 국가의 특단의 조치인데 현재 일선에서 가보면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변한 것이 우리가 부르짖고 바라고 또 타시·도에 비해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현재 우리 충청북도교육이 일반 타시·도보다도 교육개혁에 앞장서 가신다
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우리 교육개혁의 의지가 현재 더 변화를 요구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그야말로 진솔한 현실적인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 **교육감 김영세**

예. 의욕은 앞서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욕은 앞서갈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어느정도 딸려오느냐 하는 것은 일조일석에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임기중에 교육개혁 이 구현 계획으로써 4개년의 연차계획을 세웠어요. 금년에는 우선 그 기초를 닦는 착근의 해, 내년도에는 뿌리를 내린 것을 더욱 가속하는 해, 또 98년에는 바로 교육개혁이 이제는 정착돼서 성공을 거두는 해, 내 임기 말인 '99년에는 결실을 봐야 할 해, 또 사실상 금세기 안에 교육개혁이 확착이 안된다면 우리의 교육은 다음 세기를 이끌어 갈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우리 국력에 비례하고 다음 세기야말로 교육의 역량과 역할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교육의 힘에 의해서 다음 세기를 준비할 이 때에 바로 교육의 책임은 막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간에 이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선 현장에 아직 이 감지가 어느 정도 갔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할 과제고, 현재로서는 바로 금년을 착근의 해,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는 바로 더 열심히, 더 심화가 되도록 노력을 할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분명히 우리가 남보다 앞섰다, 뒤떨어 졌다, 이렇게 현재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첫 단계이기 때문에요.

● **조일환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감 김영세**

더이상 없으십니까?

● **의장 박재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또 없으세요?

(위원 모두 침묵)

● **교육감 김영세**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박재현**

없으시면 다음은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발언대로 나옴)

● **부교육감 송영식**

부교육감 송영식입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미력하나마 충북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재현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길위원님께서 교원명예퇴직예산이 전년보다 21% 늘어난 70억원은 우수교원 확보 명목으로 교원 물갈이 폭을 넓히려는 의도가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아까 개략적으로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20년이상 근속자로써 정년퇴직일 전 1년이상 10년 이내에 자진해서 퇴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심사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의 퇴직의사가 전제가 돼야되고, 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교원을 물갈이 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 2월 교원들 정년퇴직이 학기말이었기 때문에 2월말, 8월말, 두차례 명예퇴직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희망자가 164명이 명퇴를 희망했는데 122명밖에 명퇴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42명의 선생님에 대하여는 명퇴를 시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와 같은 작년도 현황을 감안해서 다소나마 수당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자면 명예퇴직제도는 현직교원이 명예롭게 퇴직하면서 또 퇴직수당도 일부 받습니다마는 한직급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조일환위원님께서 열린 교육과 교육개혁 특수시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까 개괄적인 사항은 역시 교육감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위원님께서 열린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공사례까지 말씀드려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교단 교사가 활용할 수 있는 준비물과 그 보급현황으로는 장학자료로 충북의 열린교육, 그리고 "열린학교","열린교육"을 각 600부씩 발간 배포를 했고 참고적으로도 교육부에서도 충북은 열린교육이 가장 앞서가는 그런 도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린학습을 위한 교수자료의 TP(Trans-Parency)자료 600부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신체제 열린교육 수업에 관한 교사 연수 현황으로는 지난해 초등교원과 교육전문직 13명을 대상으로 일본 현지 연수를 실시를 했고, 또한 세미나를 2회에 걸쳐 개

최를 했으며, 열린교육 연구협의회를 도·시·군단위로 조직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앞서가고 있는 열린학교의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난 5년 전부터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열린교육 제도를 도입을 초등학교에 권장을 해서 지금은 활성화 단계에 돌입을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올 7월에 개최되는 교육개혁 박람회에도 열린교육, 즐거운교실 운영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학교 다섯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이에 대한 연구 가산점 부여와 연구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는 등 열린교육 정착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로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본도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먼저 주요 과제에 대한 추진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7개의 과제를 선정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 등 19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과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20개교에 시범 운영하였고, 종합생활기록부제 도입을 위해 실험학교 8개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시지역까지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115개교로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시범학교를 17개교 지정을 했고, 농촌지역 거점 우수학교 13개교 지정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114개교에 301명이 입학 조치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네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지원부서를 상설 운영하고 국민적 이해 확산과 교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서 각종 연찬회, 연수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금년도를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시키는 해로 정해서 교육개혁방안의 현장에 조기 착근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결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윤위원님께서 농진지역 지정상의 불균형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는, 그 결과에 따른 처리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진지역을 지정한 법적 근거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인데 이것이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교원들이 거기 거주하면서 학생지도를 하므로써 농촌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원들에 대한 특혜로서는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로 농진지역 학교지정은 '94년 11월달에 했고, 2차로 추가지정을 당해년도 12월 31일날 했습니다.

당시 농진지정학교 지정기준은 지역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서 작성을 하였고, 지역교

육청 교육장의 농진학교지정 신청서를 받아 지정상의 불균형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와 예비심사를 거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 추가지정하게 된 내용으로서는 막상 농진학교를 지정하고 나니까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간에 불균형이 일고 있었고, 또 지역간의 불균형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정의 필요성을 느껴서 1차 지정지와 같은 절차로 추가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95년도 도교육위원회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시 농진학교 지정확대요구가 있어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종래 제원군 지역은 지금 제천시로 통합되었습니다마는 옛날에 제원군 지역은 오지이기 때문에 동지역은 소재학교를 전부 농진지역 학교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도 지정비율이 타시·도 지정비율보다 높은 상황이었고, 중원군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는 게 중원군이었는데 종래 중원군 지역에 대해서 학교 지정을 할 경우 타 군지역과의 심한 불균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95년 12월 8일날 지역교육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농진지역학교 지정확대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했더니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기 때문에 확대조치를 안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조일환 위원**

부감님 참 저희 교육에 대해서 아직 상황도.....

● **의장 박재현**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답변내용에 한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조일환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 **조일환 위원**

지금 교육개혁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네번째 제시한 내용은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본도, 본도의 특수시책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이걸 밝혀 달라, 지금 부감님께서 제가 이 안을 준비하면서 타시·도의 시책도 견주어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도의 특수시책으로 볼 수가 거의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어느 시·도도 다 설치·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행정질의의 본지를 좀더 부합하는 이러한 답변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

앞서도 저희들이 행정질의를 하면서 이제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교육개혁이 효율적인 이것이 어떤 사안이었느냐, 지금 연수를 많이 했다. 본 위원이 확인하기

로는 오석초등학교 같은 경우 본도에 열린교육 교육개혁에 관심있는 사람이 거의 공식적으로 연수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타시·도 제가 알기로는 타시·도에서 영화로 비디오를 찍어가고 선생님들이 방문하고, 오히려 우리가 등하불명격으로 가까이에 전국에 모범이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 질문한 본지는 실제 현지를 방문하고 잘하는 사람을 장려, 또 지원하고, 이러한 뜻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데 저희 충청북도 내에서도 상당수의 교사내지는 현직에서 현장에서 열린교육에 노력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부탁말씀드린다면 이러한 것을 좀더 찾아 보시고 살피셔서 우리 가까운 지역에 있는 이러한 열린교육의 학습자료부터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닌가, 이래서 이런 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송영식**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교육개혁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윤 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만.

● **의장 박재현**

하시죠.

● **이경윤 위원**

조금 전에 농진지역 결정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듣고 바로 그 답변한 내용이 바로 이 잘못된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저희들이 일선에서 듣는 정보와 부감께서 듣고 있는 정보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지금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은 이 가산점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승진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물어 본 것인데 바로 지역교육장님들 한테 농진지역 지정에 대한 실정을 묻고 그것을 가지고 처리했다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아주 실망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일선학교 현장 선생님의 소리를 듣고, 과연 농진지역이 아무 이상이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육장님의 의견만 수렴하시지 마시고 일선 대표되는 몇분 선생님들을 모아놓고 그 실정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깊은 내용은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바로 교육장님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현 상황이 좋다고 하는 그 답변을 듣고 그만 뒀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실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의 말씀만 드리고 다시 한번 정말로 농진지역 지정이 고려할 가치가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교육감 송영식**

감사합니다.

(김광수위원 "의장님"하고 거수하여 발언 신청)

● **의장 박재현**

하시죠.

● **김광수 위원**

농진지정학교에 관해서 질문에 나온 사항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학교 선생님들은 이 가산점에 대해서 상당히 방금 말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농진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주민등록을 학교 소재지 있는 데로 옮겨야 된다 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에 있으면 되는 건지, 면내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송영식**

'95년 1월 1일 교육감이 지정한 그 공문에 근거해서 말씀을 올리면은 그 지역 면 단위 같으면 면단위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을, 사실상 거주한 분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단위에 나가서, 근데 인접 면단위에 가는 문제와, 또 읍단위에 나가서 얼마 안떨어진 읍단위 거주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 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상위법령을 개정할 사항이고 또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개정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자세히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개선된다면 개선시키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덧붙여서 '9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해왔다고 한다면 그 동안의 가산점수는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또는 그 소재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산점을 줬는가, 안 줬는가, 그 실상을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송영식**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 **박동기 위원**

그 상위법과 그 행정지시는 그 소재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송영식**

예 그렇습니다.

● **박동기 위원**

다시 검토할 문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걸 적용을 해서 가산점을

부여를 했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송영식**

일부 시·도에서는 이제 바로 옆에 학교 소재지가 있는 면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인접 면에 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읍과의 거리가 한 5분내지 1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 건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침대로라면 면단위에서 거주해야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상 지역적 여건을 따지면 선생님들께서 "좀 억울하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확대하는 문제는 상황을 알아 본 다음에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이 대처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수 위원**

원칙이, 지침은 학교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요?

● **부교육감 송영식**

예 그렇습니다.

학교소재지에 주민등록된 교사인 경우에는 '95년 1월 1일부터 월별 가산점이 나옵니다.

소정의 가산점이 붙어 나오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농진지역에 근무하더라도 그 학교 소재지에 근무 안하는 사람은 가산점을 안주고 있는 거죠?

● **부교육감 송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뜻은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교육적인 문제점은 과거에 가산점 부여가 없을 때는 전부가 시내나 최소한 읍내같은데 주거지를 얻어서 그 쪽으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일찍 퇴근하고, 또 토요일같은 데는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 한 분도 사시지 않기 때문에, 학생지도 문제에 굉장히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가지 여론이 선생님들이 학교 근방에 주민과 학생과 같이 거주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

● **김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편의상 주고 있다 이거죠.

● **부교육감 송영식**

예

● **정만재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진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에게는 이제 특혜, 즉 가산점을 주게 돼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학교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결국 거주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 **부교육감 송영식**

예 그렇습니다.

● **정만재 위원**

그럼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만 이전이 되고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는 없는지요. 그거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

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려우면 다음에라도 서면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교육감 송영식**

예

● **의장 박재현**

또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안계세요?

(위원 모두 침묵)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감님.

(부교육감 자리로 돌아감)

그러면 다음은 초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초등교육국장 조성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길위원께서 여덟번째 질문하신 '96학년도 교직원 해외연수 계획과 대상자 선발기준 및 연수대상자의 확대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해외연수 계획은 458명에 소요예산 8억 6,970만원이며, 연수과정은 30개 과정입니다.

대상자 선발기준은 시찰연수일 경우 교육경력 5년이상인 자로써 교육감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학생을 지도하여 도대회이상의 각종 대회에서 입상시킨 실적이 있는 자, 연구실적이 있는 자로 선발되도록 되어 있으며, 영어교사, 과학교사, 농업교사등의 현장연수 등은 연수과정별로 전공분야 적임자로 선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외연수 확대실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찰연수는 매년 정원의 1% 수준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 '95년도는 정원의 2.1%인 279명을 실시하였고, '96년도는 정원의 3.5%인 458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7년도서부터 2000년까지 매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열세번째로 농촌지역 학생의 학력향상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학생의 학력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열린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습의 개별화를 통한 자기학습력을 신장시키겠습니다.

첫째, 농촌학교의 교실 공간을 독서실, 자료실, 탐구장화 하는 등 교실을 다기능화하고, 둘째, 최신 교육장비를 농촌지역 학교에 우선 배치하는 등 교단 선진화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농촌지역 거점 우수교를 육성하여 도·농간의 교육환경 격차를 해소시키겠습니다.

농촌지역 거점 우수학교를 시·군별로 14개교를 지정, 집중 육성하여 내고장 학교 보내기를 정착시키고 농촌학교 지역의 주민과 교육시설을 주민공동체화 하는 등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력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열네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역 초등학생의 청주지역 유학실태와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타지역에서 청주시내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은 청원군에서 26명, 조치원에서 1명을 합하여 27명입니다.

이들 중 청원군 구암초등학교가 폐교되면서 구암초등학교 학구였던 남이면 상발리와 구암리가 중원 남이초등학교와 청주 사직초등학교의 공동학구로 됨에 따라 이 지역 학생 17명 전원이 청주 사직초등학교로 통학하고 있으며, 나머지 열명은 가정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사 올 학생이 네명, 이사 갈 학생이 두명, 환원조치 예정으로 있는 학생이 네명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공동학구제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학생 지도에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여러가지 사정으로 먼 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은 최 단시일 내에 전출입 조치가 완료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일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둘째번 "부강초등학교 여학생 집단 괴롭힘" 이란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한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 제고와 지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건의 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15일 13시 10분경 부강초등학교 5학년 1반 피해자 노가람이와 이은주 어린이가 인주를 가지고 장난치던 중 싸움으로 확대되었을 때 이를 말리는 같은 반 다른 어린이들과 한테 어우러진 것이 집단괴롭힘으로 보여져 같은 날 오후 자모가 노가람을 병원에 입원시킴으로써 언론기관에 제보되어 여론화 되었던 바, 피해자는 외견상 약간 부은 상태이었습니다.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학교에서는 부모와 어린이를 위로하고 설득시켰으며, 다음날로 학교에서 담임교사와 교장·교감 등이 문병을 하였으며, 청원교육청과 도교육청의 관계자까지 문병하여 위로하였으며, 3일만에 퇴원하여 다음 날부터 등교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후 매일 담임교사와 교장·교감이 학교생활을 면밀히 관찰하고 학교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등 생활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교장, 교감, 담임교사에게 학생들의 교우관계와 생활지도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과 부모가 지나친 물의를 일으켜 학교와 당국에 대하여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가람 어린이도 원만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 상황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교감, 4학년 담임, 5학년 담임에게 엄중한 주의를 촉구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앞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학원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근절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정만재위원님의 복식학급 운영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도 교육청의 1996학년도 복식학급 편성 원칙을 보면, 1개 학년이 8명이하로 2복식은 계 16명이하, 3복식은 계 7명이하로 돼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2복식 159학급, 3복식 4학급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식학급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여 통학버스로 통학하게 하거나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으며, 복식학급 수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복식수업을 개선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식수업의 문제점은 교사의 지도력 분산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저하가 문제가 되므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첫째, 복식학급 담임교사 연수회를 개최하고, 둘째, 열린교육을 통한 개별화 학습을 추진하며, 셋째, 교육연구원 발간 "복식학급 지도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업개선을 도모하고 복식학급 학생들의 학력향상에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 **김정길 위원**

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길위원입니다.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교직원들 해외연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특수과목을 맡고 있는 영어교사나 과학교사들, 이런 특수교사들만 한다고 합니다마는 거기에다가 지리교사나 세계사를 연구하는 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광범위하게 좀 해가지고 실시를 했으면 어떤가 생각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선교사들이 그 연수비를 50%를 자부담을 해도 연수를 받고 싶다 하는 이런 열망을 하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자부담이 50%가 됐든, 50%가지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면 한 70%를 하시든 뭐 하여간 자부담을 해서라도 그 해외연수를 하고 싶다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많으니까 그걸 좀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농촌지역 그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교실공간이나 이런 것은 활용해서 과학교재나 특수장비나 이런 최신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충분한 검토 후에 실력향상을 위해서 노

력을 하여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예

● **조일환 위원**

그 생활지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강초등학교 사건이 보도되고 본청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당일 8시 30분경에서 저희들은 그 이튿날이죠. 바로 지역교육청과 학교에 연락을 해서 현지 상황을 파악할려고 노력을 했으며, 그후 저희 담당 장학관과 장학사가 계속해서 그 현지 상황을 알고 그 내용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미흡히 생각하는 그런 점이 없지않아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조일환 위원**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텔레비젼에서 그것이 9시 지방뉴스에 방송할 때 KBS 보도국에 전화번호를 문의를 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해당 언론인이 퇴근을 해서 제가 보도내용 정도만 확인을 했고, 익일 9시 10분경 본 위원이 출근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말씀을 처리하고 약 11시 30분경 본청에 해당과에를 갔습니다.

해당 선생님에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도 지금 이것을 지역청에다가 지시를 하고 현재 신문보도 정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맡길 것인가, 어째서 사안에 비추어서 언론보도 정도를 알고 있다. 제가 고등학교를 생활지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두 군데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 생활규정이라는 것이 전부 다 형식적입니다.

또 어느 학교나 똑같습니다.

농촌과 도시가 다를 것 없고 그러면 적어도 이 생활규정에 있는 대로 얼마만큼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가, 저는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관계자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 학교에 흡연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글쎄 추측은 어렵습니다마는 3학년 같은 경우는 반이상 피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도 했습니까?" 지도하는 방법이 없답니다.

이제 우리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고등학교 3학년은 담배를 피고, 학교에서 화재가 나고, 하수도가 그 필터로 메였다는 일화, 그럼에도 이러한 국민학교 열살 어린이가 보도에 집단폭행입니다. 집단폭행. 이 중차대한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고 인성교육, 인성교육. 어디서부터 이루어 집

니까?, 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며는 피해자만 지역이 어디 출신이고, 평소의 성격이 어떻고 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했습니다.

원인이나 우리가 교육적으로 모범아를 문제아로 만들었다는 것은, 제가 어저께도 제시했습니다마는 직접 상대가 된 두 학생의 이 생활기록부가 앞으로 교육개혁에 활용이 되고 교육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그 학생이 교감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1년여 싸웠습니다, 1년여.

나중에 학생과 학생의 감정이 학부모까지 갔습니다.

"교장실이나 교감선생님께 자모님이나 학생을 상담을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럼 그 기록을 팩스로 좀 보내주십시요." "기록은 안남겼습니다." 이러한 의지로, 이러한 현실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저희 충북에 인성교육을 강조한 이러한 시책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생활지도는 어디까지나 문제가 발생한 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 보다는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로써 신속하고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안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다른 위원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들 안계세요?

(정만재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 **정만재 위원**

방금전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복식학급 해소방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여러가지 있지만 통폐합등 이런 것등에 의해서 복식학급을 해소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통폐합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복식학급을 해소하는 방안이 없는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초등교육국장님, 그리고 제가 어제 질문할 때 '96학년도 본도 교육청에서의 복식학급에 대한 편성원칙을 아까 초등교육국장님 말씀하시고 어제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1개 학년이 8명이하이고, 2복식 학급은 계 16명이하, 3복식은 계 7명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본도 교육청이 '94학년도 복식수업 편성원칙을 보면은 1개 학년이 10이하, 2복식이 20명이하, 3복식이 7명이하로 편성원칙이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폐합을 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나 현재의 편성원칙에 나와 있는 학생수, 인원수를 지금보다 약간 하향조정하므로써 그만큼 복식학급 수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은 말씀을 해 주십시요. 가령 예를 든다면은 1개 학년이 8명이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5명이라든가 6명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은 몇명이 줄게 됩니다.

이렇게 되므로써 복식학급 수가 상당히 줄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학교별로 봤을 때는 복식학급을 받는 학생 수가 얼마 안되지만, 전체, 충청도 내 전체를 따졌을 때는 2복식 학급이 159학급으로써 1,605명이라고 하는 많은 학생이 복식, 2복식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인원 수를 갖다가 현재 그 편성원칙에 나와 있는 그 인원 수보다 조금씩 줄이므로써 복식학급 수를 좀 줄일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초등교육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복식학급을 되도록 줄여서 어린이들 학력 향상에 전력하면은 상당히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나 이 복식학급 편성원칙에는 저희도 어찌할 수 없어서 이 내용은 좀더 자세히 제가 행정과와 연락을 해서 아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만재 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3학년도 교육부에 복식학급의 편성원칙을 보면은 1개 학년이 10명이하, 2복식이 20명이하, 3복식이 15명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인원 수가 많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96학년도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이 인원 수보다 상당히 인원 수를 하향조정해 가지고 복식학급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보다 좀 저희 도에서 그 정한 편성원칙보다 조금 좀 더 하향조정하는 게 어떠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예 감사합니다.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위원 모두 침묵)

수고하셨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회의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중등국장님과 관리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2분 회의계속)

● **의장 박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발언대로 나옴)

●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가운데 중등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 말씀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정길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7항목에 있는 교직원 인사와 관련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첫째, 교직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질의요지가 계셨습니다.

교직원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교원들의 능력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주로 학교장과 교감이 평가하는 교사 근무성적 평정 결과입니다.

교사 근무성적 평정 내용에는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사명의식을 포함한 자질 및 태도와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급경영,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 추진과 관련한 근무실적 등 교직생활 전반을 통한 활동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감과 교육전문직, 교감과 교육전문직의 능력평가 역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감과 교육 전문직의 근무성적 평정은 소속 기관장이 하고 확인점은 부교육감님이 부여하고 있습니다.

교감의 경우는 학교 경영평가결과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에 대한 근무평정은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실시하지 않으나 학교경영 전반에 걸친 경영능력과 실적등을 고려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능력 점수를 높여 준 사례는 없는가 라는 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원들이 능력점수라 할 수 있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근무성적 평정에 대한 최종 조정은 부교육감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근무성적 평정점 조정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는 각 기관별로 평정된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취합하여 근무성적 평정 조정점 급간 산출표에 의거하여 조정점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교육감님이나 고위 공직자의 마음에 든다고 해서, 평정자의 마음에 든다고 하여 능력점수를 높여줄 수는 없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정길위원님께서 도내 학생의 학업 실력수준과 전국 비교는 어떠한가 라는 질문요지가 계셨습니다.

초·중등학교, 전국 초·중학교는 전국을 비교하는 데이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비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수학능력고사를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9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 결과 전국 평균이 92.12점, 200점 만점에 92.12점이었습니다.

본도는 88.66으로 3.46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그러나 인문계, 인문계 고교만을 별도로 저희들이 산출한 결과는 101.67로 9.5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96학년도 대학 진학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비해서 1,842명이 더 진학을 하였습니다.

또 참고로 직접적인 학업 실력 수준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하더라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12대 전국 중·고생 논술경시대회 결과를 저희들이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중학생 4명과 고교생 6명이 참석해서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최우수 1, 금상 1, 은상 2, 동상 1, 장려 1명이 입상하여 전국 최고의 실력을 과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김정길위원께서 질문하신 학생 실력향상 대책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학생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교육감님께서도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 본청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을 말씀 올릴까 합니다.

첫째, 교수 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학습자 중심의 학습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고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을 통한 교수 학습방법의 개선에 노력토록 하며, 교단 선진화를 위한 기자재 구입 지원으로 편리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보충자율학습 방법을 개선하고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로 자율장학 체제를 확립하며, 다양한 교원연수제 운영으로 교사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교육과정 운영지도 및 교과별 교육과정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고, 특수재능아의 학교급별 연계지도 및 학습부진아를 책임지도하며, 교과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초등학교의 학년 전담제 및 교과전담제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것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부단한 자기 연찬을 통해서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하고 또 학생들이 그 깨우침에 의한 자주학습능력, 스스로 할려고 하는 그 능력을 불러 일으켜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김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단체활동, 교원의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본청에서는 보이스카웃, 걸스카웃, 청소년연맹, 대한청소년적십자,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등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1인 1단체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6개 청소년 단체에 7만 4,172명, 대상학생의 34.1%, 이 대상학생은 그 청소년 육성법에 9세서부터 24세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9세서부터요.

이미 가입하여 단체활동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현재 가입 신청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이 단체들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은 청소년단체 활동이나 업무로 출장할 때는 학교에서 출장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단체 우수 지도교사에 대하여는 청소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매년 15명씩 교육감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제기해 주신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는 다른 모든 교수와의 형평성, 다른 단체와도 형평성 관계로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27일 정만재 교육위원님의 질문에서 학교주변 폭력조직의 현황 및 근절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다가, 조일환 교육위원님하고 중복이 돼서 생략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초등국장님의 답변이 초등 어린이들에 대한 답변에 국한해서 말씀이 계시기에 우리 학교주변 폭력조직의 현황과 근절대책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95년 학교주변 폭력조직을 우리가 조사한 결과 22개파 231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학교별 지속적인 지도로 '95년 11월말 현재 완전 해체되었습니다.

충청북도 경찰청 형사기동대의 통계에 의하면 청주시내 폭력조직이 거의 소탕되었으며 극소수의 불량배가 잔존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둘째 말씀드릴 것은 '96 학교주변 폭력 근절대책으로 도덕성 함양과 인성교육의 강화로 전 교과를 통한 전 교사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지도하도록 하겠으며, 학교장 중심의 생활지도 강화로 특히 1교장 1교사 근무지 상주를 시키도록 예방 차원의 지도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학급담임의 적극적인 학생지도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생활지도 및 상담기법에 의한 교원연수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비단 이 문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정과 사회에 연계된 문제이므로 가정교육

의 기능도 한층 강화해서 학부모나 또 학교 보급의 가정통신문이라든가, 또 이에 대한 여러가지 학부모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 사회와의 연계에 있어도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생선도협의회 운영이나 학원폭력예방, 자원봉사자연합회 결성,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유대를 강화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지금 학교차원의 학원 주변의 폭력배 문제는 학교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화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학교, 가정, 또 사회가 그 밖에 사직당국도 연계가 돼 있죠.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심, 특히 학교측면에서는 소외되고 가정이 가정결손 학생, 이런 것에 보다 우리 선생님들이 정성을 쏟고, 등도 두드려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끊임없는 지도가 이 문제의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경윤 교육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교단 선진화에 따른 교육용 컴퓨터 학교별 배정기준 및 현 보급현황은 어떠한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학급별 규모를 제시하셨습니다.

기준이 6학급, 12학급, 18학급, 학급별 규모에 따라서 배정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요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정하는 기준은 학급규모에 따른 기준이 아니고, 학교별 한 한급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하였습니다.

학교별 한 학급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했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90년도서부터 '95년까지 가장 많은 학급의 학생 인원이죠. 학생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2인 1대로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95년 8월 30일 현재까지 초·중·고에 한 학급분을 100% 보급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드리면 한 학급 학생이 60명이면 그것의 2분의 1이니까 학생용 컴퓨터 30대와 교사용 컴퓨터 1대해서 31대가 보급이 되어서 100% 그 기준에 의해서 보급이 되었습니다.

'96년부터는 금년부터 컴퓨터 교육의 강화를 위해 1인 1대로 추가 보급할 계획입니다.

'96년도 교육용 컴퓨터는 586급으로 27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초등학교 1,032대, 중등학교 682대, 고등학교 497대, 과학교육원 40대 해서 계 2,251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교육용 컴퓨터의 보급현황은 '95년 11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적에 286급이 초·중·고에 6,290대, 386급이 초·중·고에 6,299대, 486급이 1,614대, 계 1만 4,71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말씀을 올렸습니다.

● 의장 박재현

예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 김정길 위원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길입니다.

지금 중등국장님께서 7번 열 번, 열 한번, 열 다섯번, 제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번에서 교원들이 능력평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평점내용을 보며는 자질이나 태도나 학습지도방법이나 생활지도방법이나 여러가지의 근무실적에 따라서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 그 평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어느 집단적인 사회든 교장선생님이 조금 가깝다든지, 또 조금 마음에 든다든지 하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에서 점수를 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 하는 일선교사들의 소리가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집행청에서 그러한 일이 발생이 안되게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열 번에 가서 학생들이 실력이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그렇게 낮은 편도 아니고 높은 편도 아니고 한 중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학부형들이나 일선교사들이 그 바램이 우리 쪽에서도 서울대학이나, 물론 꼭 일류대학을 가야 출세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진학률이 좀 낮지 않느냐 하는 이런 우려의 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충수업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또 과목을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좀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학생들이 실력향상이 될 수 있게끔 적극 좀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열 한번째 가서 교수 학습방법을 개선하는데 연구실적이나 교단의 선진화나 보충자율학습의 개선이나 여러가지로 나왔습니다,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그 교단의 선진화에 보며는 이에 대한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조도관계, 진학지도를 하는 교실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모양입니다, 환경개선에 대해서. 또 분필도 저는 잘 아직까지 그걸 모르겠습니다마는 흑판에 분필이 가루가 흐르지 않는 그런 분필이 있답니다, 그게. 그래 교육감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좀 특별히 좀 배려를 하셔가지고 우선 교단의 선진화에 좀 예산배정을 하셔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데이타는 작년 데이타인 모양입니다마는 34.1%라는 게. 지금 그 각 6개 단체의 그 청소년 단체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피나는, 교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청소년 단체를 지금 7년째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실정은 소상히 알고 일선 지도자 선생님들을 보며는 정말 얼굴이 부끄러워 가지고 고생하는 걸 어떻게 격려를 해줘야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는데.

사기진작책으로 출장을 달아주시겠다.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토요일, 일요일 달아주시겠다는 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모든 청소년 단체의 활동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기 때문에, 또 평일 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이고, 우수지도교사에 대한 그 매년 15명씩 교육감님 표창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한번 국장님이 한번 나중에 살펴보십시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몇년 전에는 이걸 주셨는데 너무 교육감님의 표창이 남발이 된다. 이래 가지고 아마 이것을 지양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교육감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배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가산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산점이 무슨 말씀이냐하며는 그 어떤 승진의 가산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전부 참여하는 교사들한테 가산점을 다 달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번이 됐든, 2년에 한번이 됐든, 6개 단체의 중앙연맹, 충북연맹이 아니고 중앙연맹의 총재표창을 받은 교사, 그러면은 한 단체에서 아마 한명정도도 1년에 나오기가 힘들 겁니다. 그 중앙총재의 표창을 받는 다는 것은 그것도 점수제가 있습니다. 연간 몇시간을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얼마를 해야 되고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6개 단체에서 제가 아는 걸로는 말이죠. 연간 한 3명정도, 3,4명정도 총재표창을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승진가산점이 아니고 순환보직때 보직가산점을 조금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 중에서 지금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교사들이 그런 조그마한 그런 기대에다 이런 게 뭐가 있어야지 열심히 하시지마는 더 열심히 하실려고 노력을 하지, 토요일 나와, 일요일 나와, 뭐 차비를 줍니까, 뭐가 있어요. 호주머니 돈 털어가지고 나와 가지고 밤늦게까지 학생들하고 열심히 먼지 마셔가면서 열심히 하고 돌아가는데, 우리 교육계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배려도 안해 주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 안타까운 것이 그런 것이라도 조금 배려를 해주시면은 더욱더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 그 분들이

물론 교육감님한테도 얼마전에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사실은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청소년 단체는.

지금 7만 4천명이 넘는 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청소년단체에서 다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적으로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연간 지원비는 한개 단체에 고작 연간 지원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 6개단체 다해 봐야 1,200만원이예요.

그걸 가지고 한개 단체에 줘도, 참 정말 이거는 제가 웃으면서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감님이 별도로 정책사업비, 그런 걸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말씀도 드려봤는데 이 부분에도 물론 중등국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겠지만은 사체과의 아마 소관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관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청소년단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또 일선학교 교사님들 한테 좀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어떤 묘안이 있으면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교육감 김영세**

그 답변석에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 듣는 거보다 내가 직접 책임지고 답변해 줄 사항이 있으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가 소위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속에 사회교육 분야가 대단히 자못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사회가 곧 학교의 교육개혁의 지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소위 바로 내 자식마냥 애정어린 지도를 해서 감싸주었을 적에 바로 인성지도 효과를 거둔다고 내가 자못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교육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을 나는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성교육 차원에서 봉사활동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청소년단체 사무국장 실무자들이 왔을 때 내가 그 중요성을 강조해 줬어요. 앞으로 나로서의 어떤 권장하고 격려해 주고, 지원해 줄 바가 있으면 서슴치 않겠다. 내 약속을 한 바가 있었고, 또 이제까지는 아마 그런 계획 없었던 것 같은데 내가 이 행사가 자꾸 중복됨으로써 그렇지 사실은 이달 말에 내가 청소년 단체 대표들을 초청을 해서라도 간담회를 가져 볼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4월달에 가서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그 청소년단체 지도자들 중에서 격려책으로, 지도자들 격려책으로 종전에 교육감 표창제도가 있었던 것이 중단되었다고 그러는데 만일에 이것이 중단되었다면 부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장해 드리겠고요, 그러나 이 재정문제는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이 무슨 재량 재정권이 없습니다, 현재는. 재량사업비라는 게 시설투자밖에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는 내 장담을 못하나 우리가 그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어떤 인사 고과에 그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있으면 아마 그 분들이 사기진작이 될 것이고, 그 분들이 더 열심히 할 게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겠다는 걸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교실환경 중에서 지금 조도가 말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일선학교의 조도개선비를 내가 교육위원때 각 학교 조도개선비 전부 한번 일률적으로 각 학교 다 환특금해서 배정한 일이 있었어요. 한 2년 전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조도라는 게 항상 이 오래가면은 조도가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학교운영관리비가 금년에 31% 늘려주었습니다.

매년 이렇게 늘려주면 한 학교에 적어도 학교관리운영비나 육성회가 증액돼 가는 게 1년에 큰 학교는 육성회 합치고 운영비 합쳐서 한 3천만원 증가가 됩니다.

그런 속에서 교장선생님이 우선 순위를 두면 되는데, 그래도 부족하다면 나는 조도개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이 거의가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것 등의 원인이 공부 열심히하는데 원인도 있겠지만 조도에 원인도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 이런 문제가 일선에서 문제가 된다면 별도 예산을 책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시급히 해결할 문제로 봅니다.

그러나 분필 등의 선호, 좋고 나쁜 것을 쓰는 건, 그건 교장선생님의 안목에 달렸습니다.

교장선생님이 주어진 예산에서, 종전보다 많이 윤택해 졌습니다.

지금 청주시내 큰 학교 육성회비 이월액을 보면요 전부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1년에 이월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등을 교장선생님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안목있게 그런 예산집행도 하느냐, 이런 것들이 문제고, 또 하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면 재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거기서 학부모의 의견이 진지하게 여기 발휘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런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 **김정길 위원**

감사합니다.

● **이기수 위원**

제가 질문 잠깐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예

● **이기수 위원**

국장님 학생 실력향상 방안을 여섯가지, 교수학습방법개선, 교단선진화, 죽 이렇게 해가지고 여섯가지 방법 이상을 강구하고 있으시고 많은 연구를 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데 얼핏 보면 물론 어느정도까지는 가능하지만은 학생 실력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너무 두다보면 학생의 인성교육에 소홀해지기가 쉽습니다.

어느정도까지는 두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이걸 지나치게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면 너무 실력향상방안에 치우치게끔 노력을 하시다보면 인성교육을 무시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사실 실력향상방안이라는 얘기는 아까 점수로서 예시했지마는 대학에서 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결과들이란 얘기는 주요과목 영어, 수학, 국어, 또는 과학이라든지 이런 몇개의 과목, 즉 암기 위주식의 집중적인 창의적인 공부 방안보다는 그 쪽에 노력을 경주해야 만이 정말 실력향상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이 양쪽을 적당히 안배를 하셔가지고 실력도 향상하며 학생 인성교육도 충분히 될 수 있게끔 그걸 잘 중용을 지켜가면서 시행을 해 나가셔야지 한쪽을 너무 강조했다가는 한쪽이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더 많은 연구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며, 또 학생 선도나 지도방법에 있어 저희는 사실 놀이공간이 부족하며 건전한 청소년 문화공간이 부족합니다.

결국은 학생들이 정말 건전하게 뛰어 놀 수 있는, 어느 교육청같은 경우는 자전거타기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이 정말로 건전하게 즐길수 있는 문화공간들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안에서 좀더 확장해서 학생들이 퇴폐오락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건전하게 모든 것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을 더욱더 확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또 모든 것이 말입니다. 지금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는 지금 교육개혁의 일환으로써 대학이나 보통교육이나 또는 고등교육에서도 아주 획기적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학부모님들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꼭 내 아들은 말입니다. 특수한 직종을 보내야만 된다. 소위 얘기한다고 하면 권력을 쓰는 판·검사라든지, 또는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직종이라든지, 또 일류대학을 가야된다 하는 이런 생각이 고착되어 있을 때 그것을 바꾸지 않는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교육개혁을 하려면, 첫째, 교육자도 중요하겠지마는 사회가 따라줘야 되고, 학부모들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사회교육 측면으로서 학부모들의 정신개혁을 할 수 있고 가치관을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마련하셔 가지고 좀 사회도 변할 수 있게끔 해서 교육도 위 개혁이 원만하고 순탄하게 갈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같이 경주 부탁드리겠습니다.

●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이기수위원님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실력향상 방안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다 보니까 그게 편중된 것 같은데 도교육청의 4대 중점시책의 첫번째 항목이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강화입니다.

우선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알찬 실력을 갖춰야지요. 거기에다가 굳센 의지까지 갖춘 다면은 참 완전한 전인적인 인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점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 쪽으로 노력을 해 올리려고 그럽니다.

놀이공간 문제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를 지적해 주셨고, 또 교육개혁이 성공하자면 학부모님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것이 제일 돌파하기 어려운 벽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 선생님들도 의식을 바꿔야 되지만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의식도 같이 바꿔 나가야 저희들이 변화와 개혁의 틀 속에서 성공하리라고 생각하고 지적해 주신 점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수 위원

감사합니다.

● 의장 박재현

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 이경윤 위원

예.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여러가지 느낀 바가 많습니다.

컴퓨터의 이용가치라든가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컴퓨터 보급규정에 다 학급 인원 수에 2분의 1, 또 '96년도 들어가서는 거의 100%의 지원을 해서 교육에 조금도 지장이 없는 이러한 차원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무엇을 저는 느꼈느냐 하면은 오늘 신문에도 『19세기의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킨다.』 이러한 신문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로 컴퓨터의 기종에 대해서 286 폐기종이든, 뭐든 간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각 학교를 돌아 봤을 때 역시 컴퓨터 보급은 많이 확보됐구나. 그런데 이것이 일선학교에 잘 활용이 되지를 못하고 그냥 사장되는 컴퓨터가 많습니다.

이 원인은 바로 교사들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동들이 우리 현 실정에서는 컴퓨터의 능력위주보다는 컴퓨터와 익숙해 질 수 있는 교육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학교의 실정을 보면은 몇몇 선생님들은 잘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학급, 그러한 선생님 밑에 있는 학생들은 정말로 컴퓨터와 가까이 돼서 아주

가치있는 기구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선생님, 즉 컴퓨터를 다룰 수 없는 선생님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사장된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아울러서 컴퓨터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를 주자면 우선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전부 다룰 수 있는 재질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올 하기 방학때 방학이 오기 전에 일선학교의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분이 상·중·하로 했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다룰 수 있는 선생님이 몇이나 되며, 또 못 다루는 분은 어떤 분인가, 지금 아마 학교든 사회든 이 컴퓨터 문제로다가 많은 이야기가 오고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첨단교육이 바로 컴퓨터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조사하셔서 이 컴퓨터를 다룰 수 없는 분들은 올 하기 휴가 때는 어떠한 방법을 쓰든 간에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을 배우도록. 저도 일선학교 바로 작년까지도 있었습니다마는 곧 하기 휴가가 돌아오죠. 이게 15년, 20년전 제도가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교육감이 바뀌고 교육장, 교장선까지는 교육감의 교육개혁의 의지가 어느 정도 지금 침투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선학교는 아직도 잠을 자고 있어요, 컴퓨터의 한 예를 보더라도.

그래서 여름방학때 선생님들 그 연수라고 하는 그 문제. 이 15년전, 20년, 30년전에 제가 겪었던 것이 지금도 3일간 연수를 한다, 5일간 연수를 한다, 교장에 따라서 그렇게 학교가 운영이 되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새 교육감이 바뀌더니만 뭐 바뀌어 지는 것이 실제 일선교사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장, 교장선까지는 어느정도 침투가 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일선학교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 자그마한 예이지만은 올 여름방학은 컴퓨터를 전부 조작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을 자유롭게 연수활동 시간을 줄 수 있는 개혁방안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 교육감이 들어오더니만 정말로 15년전, 20년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도 3일, 5일, 그 눈치보는 연수입니다.

가장 선생님들이 싫어하는 것이고 또 교장은 뻔히 알면서도 상부관청의 눈이 무서워서 눈길이 무서워서 그대로 그 방법을 실시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학교교육을 직접 경영하신 분은 느끼실 겁니다.

현장 선생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 제도를 왜 과감하게 개선을 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컴퓨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 여름방학을 계기로 해서 컴퓨터 조작을 할 수 없는 교사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이런 방책을 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므로써 교단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교육감님이 매년 50억씩 확보해서 4년간 200억원이라고 하는 그 자원을 바로 교단선진화를 하기 위해서 자원을 확보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교단선진화를 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정말로 이룩될 수 있도록 잘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이경윤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컴퓨터의 활용문제, 컴퓨터가 아무리 많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는가, 활용이 되지 않는 것은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요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사들이 우선 컴퓨터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고 여름방학 동안에 연수를 통해서 100%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그간 교원들이 PC를 얼마나 다룰 수 있나 하는 데이타가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급은 A,B,C,D에서 잘한다에서부터 상,중,하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잘한다해서 서툴지만 컴퓨터를 워드정도까지 친다 까지 할 수 있는 계가 전 교원의 63%가 PC에 워드까지만 칠 수 있다 까지 잘하는 사람부터 계가 63% 입니다.

그러면 37%가 우리 선생님들이 아직 컴퓨터의 컴맹에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37% 선생님에 대해서도 빨리 컴퓨터를 익혀서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보다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경윤 위원**

예.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름방학을 잘 연수, 그 20년, 30년동안 흘러온 그것을 바꿔주도록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37%든 20%든 그 컴퓨터와 가까워질 수 있는 정도의 아이들의 그 자질을 길러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만이라도 좀 자유롭게 연수, 또는, 그 지금 각학교에서 또는 각 교육청에서 여름방학때 연수를 하죠. 1주일씩, 혹은 10일씩. 그 연수활동도 상당히 효과를 이루지만은 그 보다도 옛날에, 왜 일선에서 풍금 음악수업 못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장선생님이 풍금 테스트를 하고 그랬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한번 37%, 아니면은 20%, 이것이 없도록 지금 일선에서 가장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다시 말씀드려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박재현**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중등교육국장 자리로 돌아감)

다음은 관리국장께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먼저 김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능직 순환근무 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1년도에 기능직 공무원 보직관리규정을 개정을 해서 5년이상 장기 근무자의 순환근무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근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작년 12월 27일 전보특례 유예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내용은 전보특례로 유예할 수 있는 폭을 아주 줄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년이 3년밖에 남지 않은 기능직은 5년이 넘더라도 그 학교에서 정년할 수 있도록, 또 특수지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 목장이 있으면 목축을 다룰 수 있는 이러한 특수직에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좀더 그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유예규정을 잡아놓고, 그 전에 교장선생님이 "나는 이 사람이 필요하니까 유예를 해다구, 전보를 유예해다구" 하는 것을 전부 없앴습니다.

그래서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확대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인사에 장기근무자 즉, 5년이상 근무한 사람 129명을 저희들이 이번에 순환전보를 시켰습니다.

아직 미전보된 장기근무자에 대해서도 생활근거지나 또는 기능직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순환전보로 해서 근무 분위기를 저희들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기능직에 5년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능직이 총 1,984명이 있는데, 그 중에 5년이상 장기근무자가 587명입니다.

587명 중에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월 1일자로 129명이 전보 조치가 돼서 지금 현재 전보 조치가 되지 않은 5년이상 근무자는 23%에 해당하는 458명이 남아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장기근무로 인해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뜻에서라도 순환전보를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위원님께서 열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설계용역 낙찰자의 공사금액이 그 내역서 작성에 관한 공무원의 개입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시설공사의 설계용역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설계도면은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내역서 작성은 설계사무소에서 직접 작성을 하거나 그

렇치 않으면 적산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게 해가지고 그게 납품이 됩니다.

납품된 도면과 내역서는 교육청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검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95년부터 '96년 현재까지 설계용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47건 중에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내역이 34건, 적산 전문업체에서 작성한 것이 13건입니다.

위와 같이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작성 및 내역서 작성을 주관하고 있고, 설계용역기간 내 용역을 업무를 마감하기 위하여 설계사무소의 요구에 따라 중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나 질문 내용과 같은 사례는 저희 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1992년 이전에는 건축설계의 예술성을 고려해 가지고 용역비가 좀 많더라도 수의계약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이후에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 대상 금액이 아닌 일반 공개 경쟁입찰로다가 현재는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일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가초등학교 신축이전 사업 공기 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축이전은 재정확보를 전제로 하는 사업으로 금가초등학교의 경우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배경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이전추진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전추진이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충주교육청으로부터 금가초등학교의 위치변경, 즉 이전승인 신청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검토한 결과 6학급 규모의 학교로서는 부지면적 책정이 너무 과다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 매각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아서 그 계획을 수정 보완할 사유가 발생을 했고, 또한 '95년 11월 중에는 지역주민이 금가초등학교 이전을 반대하면서 대미초등학교와의 통폐합을 주장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지역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전사업 계획이 부득이 '96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4월초에 개회 예정인 제62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이전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월중에 예정된 교육위원회에서 이전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도의회에 저희들이 예산안, 그에 따른 예산안도 이번에 같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즉시

이전사업을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97년 3월 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95, '96년도에 개교한 시지역 신설학교 공사기간을 말씀드리면 36학급 규모 5층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대개 5월경에 착공을 해서 익년도 2월 말경 공사기간이 약 9개월정도 소요가 됩니다마는 준공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금가초등학교는 6학급 규모 2층 건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저희들이 이 사업의 독려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경우에는 내년 3월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며 이전예정지는 현재 준 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4월초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이 확정되면 충주시에서 학교용지 시설결정으로 변경 고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타 설명은 저희들이 앞으로 4월 의안상정과 함께 제안설명 시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철회와 재설치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되어 있는 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지침이 교육부로부터 하달이 돼서 이에 따라서 운영위원을 선출토록 하는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법률과 시행령은 공포되었다 하더라도 조례의 제정이 되지 않은 현시점임을 감안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즉시 중단토록 조치를 하겠으며 이미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운영을 중단하고 사전 준비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조례가 공포된 후에 구성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앞으로 최선의 방법과 저희들이 최대의 노력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힘쓰겠고,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없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고, 그 다음에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균형적인 업무조정에 관해서는 도교육청 각과에 해당하는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담당업무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 **김정길 위원**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재현**

예

● **김정길 위원**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학교에 있는 기능직에 보면은 운전수나 서무보조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포함되지 않습니까?, 기능직에 말이죠.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김정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일선학교에 계시는 교직원들이 이제 그 학교에 발령을 받아가지고 보면 말이죠. 이 기능직들이 말을 안듣는 다는 얘깁니다.

그래 서무보조나 이런 분들은 일선 교육행정의 교사들이 교육을 하는데 정말 도움을 주는 분들이거든요. 뭐 프린트를 좀 해달라든지, 뭐 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래야 되는데 그냥 너무 오래 근무를 하다보니까 터줏대감이 돼 버렸어요. 학교에 처음 와가지고 일을 시키느냐, 심부름을 시키느냐, 이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상당한 마찰이 일선에서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데 3월 1일자로 대대적인 인사를 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순환근무를 시킨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떤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시설 설계용역 낙찰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이죠. 국장님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을 드려도 이해를 해주십시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원래 어느 사회나 공사에 대해서는 말이 많게 마련입니다.

학교공사가 됐든, 설계용역이 됐든, 그런데 제가 노파심에서 질문을 한 건데 이게 바로 지난해 대전 지검에서 사건이 돼가지고 12명이 파면되고 구속된 공소장입니다, 이게 그 서류입니다. 이걸 보다 보니까 이게 대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드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하다가 충남에서 축소를 해가지고 마무리 지었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충북에서도 몇 군데를 알아보니 심지어는 제가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르바이트하는 이런 명분을 붙여가지고 그런 일이 좀 있었다.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실 때는 '92년도 이전에는 뭐 조금 그렇게 검토들도 하고, 지금은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조일환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그 금가초등학교의 공사과정이 늦다 아니다 하는 것은 국장님이 조금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못 짚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예로 제시한 것이고 실제 3월 초가 되며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신문보도를 통해서도 자주 학교개교, 또는 이 이전에 있어서 상당한 공기의 차질, 아니면은 충분한 학교교구의 미설비로 인해서 새로 개교하는 학교가 완전한 이러한 학습환경이 조성이 안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대책을 물은 겁니다.

차제에 제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국장님께서는 현재 설치를 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법에 위배한 행정의 집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교육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 **조일환 위원**

아 그것만 말씀을.....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침을 내려 보내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빨리 구성을 해라. 3월 31일까지 구성을 해서 우리가 보고를 받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후에 그 조례로 제정을 하도록 조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침도 역시 저희는 상부의 지시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 조례지침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먼저 지침에 의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시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률로, 법률로 교육법이 개정이 됐고, 시행령인 대통령령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거에 준한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 거는 저희들로서도 지금 교육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럼 처음부터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시를 했어야지 지시를 운영지침을 내보내고, 그 다음에 또 조례를 만들으라고 그러니 사실 저희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법규를 위배를 했다고는 일단 긍정이 갑니다.

위배를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위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시행령에 설치근거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질문하시는 사실 저희들은 여러가지로 교육부에 다가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 **조일환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솔직하게 상위법이 제정이 됐지만은 우리 본 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는 상태

에서 설치가 됐다면 위법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셔서.

● **관리국장 신재철**

위법은 아닙니다.

법을 위반한 건 아니고.....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위반해서 설치가, 행정집행상 절차가 잘못돼 가지고.....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근거는 위에 교육법이나 교육법시행령에 지방교육자치법이나 그 시행령이 나와는 있습니다. 그것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타시·도의 경우를 보며는 아직도 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성, 이것을 신중하게 해서 아직도 본 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이것에 대한 걸 공청회를 하고도 있고, 또 이런 지역에 제가 유선으로 확인한 바로는 어림도 없다. 설치·운영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행을 하느냐, 우리는 교육부에게 당당하게 이야기 한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을 주고 령을 시달한 다음에 몇월 며칠까지 해라 하는 일자의 제한을 받으셨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지침에 그게 나와 있어요.

● **조일환 위원**

받으셨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조일환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같은 경우에 우리 본청에서 국장님이나 교육감이나 이 분들이 어떤 지침에, 지침이 지금 현재 시행하는 조례나 기타 행정규정에 어긋난다면 시행을 합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이 사실은 저희들이 지침도 어쨌든 교육부 장관명의로 내려오는 겁니다.

제가 상위기관에서 이거를 해라 하는데 저희들이 그걸 못한다고 할 수 있는 입장은 또 아닙니다.

● **조일환 위원**

그것을 분명히 해주십시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못한다.

● **관리국장 신재철**

못한다가 아니라 입장이 지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조일환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못한다, 아니다만 말씀해 주십시요. 하느냐 못하느냐.

● **관리국장 신재철**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죠.

● **조일환 위원**

그러니까 그 지시에 의해서 시행한 이 설치안 자체가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는 위반한 것이 없다. 어느 쪽입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위법은 아니고.....

● 조일환 위원

위법이든, 하여튼 시행령에 법령에 의해서 그럼 법령을 위반했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의회 규정이나 행정절차에 과오가 있느냐 없느냐.

● 관리국장 신재철

행정절차에, 글쎄 중앙에서부터 지시된 절차에 과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부서에 실제 교원이더라도 부당한 것을 이것을 업무를 맡겼을 때는 거절합니다. 또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며는 더구나 민선교육감 시대가 도래됐고, 또 타시·도에도, 타시·도에도 지금 실제 조직을 안하고 공청회라든가 또는 그 안이 상정된 시간이 여의치 않다. 여러가지 그거에 의해서 반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실제 우리가 교육부의 령이 늦게 도착했다. 또 일찍 도착했다. 거기에 소정의 설치일정 언제까지 운영보고해라 하는 일정이 나왔을 겁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조일환 위원

그럼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이것이 부득이 하다 하는 것을 공식으로 공론화하고 우리가 조례가 설치 안됐으니까 조례가 설치된 다음에 하겠다 하는 쪽의 조치를 했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지금 이제까지 말씀드린 게 그 말씀 아닙니까?

정부에서 공청회를 정부에서 거쳐가지고 이 방법을 시행하는 겁니다.

● 조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저희가 공청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 조일환 위원

예 뭐 본청에서 받아주고 안받아 주는 것은 본청의 사안이고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이 설치는 행정이든, 어떤 조례든, 법령이든 여기에 근거가 없으므로 본 위원은 기설치된 이 운영위원회는 다시 무효로 하고 앞으로 언제 이것이 광역 도의회까지 이것이 통과된 이후에 거기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지 설치 및 운영조례입니다.

설치만 중단했다, 이거는 아니죠.

● 관리국장 신재철

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즉각 중지를 시키겠다.

● 조일환 위원

중지라는 것은 지금의 설치해 놓은 상태를 중지하겠다. 이런 것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기설치된 이 운영위원회는 이런 설치조례에 근거없이 한 것이니까, 본 도는 이 본 위원이 요구하기는 이런 설치를 철회하고 새로 제정되는 조례에 의해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합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조일환 위원**

두번째, 지금 금가초등학교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의안관계 받은 게 있습니다.

금가초등학교의 위치변경계획이나, 또 여기에 있는 3개교에 초등학교에 설립계획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옮긴다, 새로 신설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월달에 공사를 시작해서 그 익년에 충분하다. 이것은 공사가 다 발주되고 실제 공사착공일을 말합니까, 토지 매입에서부터 말합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토지매입부터 저희는 말하고 있습니다.

● **조일환 위원**

토지매입부터 5월달에 했는데도 충분하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적어도 이 세학교는 내년, 후년 '98년 3월달이예요. 충분한 여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 '97년 3월입니다.

본 위원이 현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이전할려는 그 대지에는 지형도 열악하고 또 거기에는 분묘도 소재하고 있고 또 지금의 지주들의 성향이 승낙을 받았다. 우리 삼수학교 같은 경우에도 승인할 때는 아 다 승락 받았습니다. 이런 쪽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초등학교도 제가 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지금 분묘문제도 이걸 이장을 하자, 상당한 말썽이 있습니다.

그리고 댐이라든가 어느 토지를 수용할 때 보면 반드시 상대평가를 합니다.

이 땅이 3만원에 잘 받았는데 위 땅은 열악한데 나보다 더 받는다든가 똑같다든가, 충분히 민원소지가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금가초등학교뿐 아니라 앞으로 본청에서 시행되는 신설내지는 이전에 이런 학교 공기를 충분히 생각해서, 충분히 생각해서 집행해 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 **김광수 위원**

국장님, 금가초등학교 이전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그 부지도 매입이 안됐다고 하는데 그 부지매입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 계획대로 추진 안될 수도 있죠?

● **관리국장 신재철**

부지매입은 지금 교섭은 다 해놓고 있습니다.

현찰을 주고 돈을 치르지 않은 얘기입니

다.

교섭은 충주시교육청에서 다해 놓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래도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봐서 잘 추진이 안될 적에는 내년 3월 1일 개교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금가초등학교는 조금 저희들이 다른 학교하고 달라서 이전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 단지가 신설이 돼가지고 그 학교에 당장 학교가 필요한 학교는 아닙니다.

공군부대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공군부대에서 그 학교를 수용하기 때문에 그 다소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 **김광수 위원**

본 위원 말씀은 그것을 성급하게 그렇게 급하게 추진할려고 하지 말고 착실하게 천천히 완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수용문제 때문에, 군의 수용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는 토지의 보상을, 학교용지의 보상을 제대로 안해 줄려고 그러고, 저희는 이걸 받아야 할 입장이고, 그것 때문에 시일이 굉장히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 **조일환 위원**

김위원님 지금 물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내년 '97년 2월까지 그 학교만 이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락 전체가 이전합니다, 부락 전체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짚었을 때도 1년 늦으면 어떠냐, 그 동네가 다 떠요, 다. 그래 지금 이 예산이 추가경정이 도의회를 통과해 가지고 저희가 집행을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거기에 또 민원을 해결하고 이 공사가 착공예정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이 초등학교 문제는 별도의 본 위원회에 상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본청에 요청한 바도 있고 제가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추진사항 내지는 본 주민들을 제가 확인한 다음에 이 초등학교 변경안에 심의할 때 제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웃음소리)

● **의장 박재현**

또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위원 모두 "없습니다."하고 말함)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에는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위원발의 및 교육감 제출 의안의 처리 등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이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행정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영세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본회의 산회와 아울러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 58분 폐회)

0 출석위원 : 10명

의장 박재현, 부의장 조일환, 위원 김정길, 정만재, 이기수, 김광수, 이근수, 박동기, 안병일, 이경윤.

0 출석공무원 : 18명

교육감 김영세,	부교육감 송영식,	초등교육국장 조성근,
중등교육국장 송대헌,	관리국장 신재철,	공보담당관 김흥묵,
기획감사담당관 신택희,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	초등장학과장 김천호,
초등교직과장 노현우,	중등장학과장 이재관,	중등교직과장 김영기,
과학기술과장 백경흠,	사회교육체육과장 한상우,	총무과장 고일영,
행정과장 이상찬,	재무과장 이기수,	시설과장 박성근.

※ 부 록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6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별첨7
-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별첨8

(별첨1)

議 事 日 程(案)

第61回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96.3.25-3.28(4일간)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6.3.25(월) 10:00 11:00	□ 교육위원 협의회(교육위원실) □ 개회식 [제1차 본회의 개의] 1.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기 : 1996. 3. 25~3. 28(4일간)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안설명)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제안설명)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제1차 본회의 산회] □ 소위원회 활동 o 조례심사소위원회	
'96. 3. 26(화)	□ 소위원회 활동 o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의 휴회
'96.3.27(수) 10:00	□ [제2차 본회의 개의] 1.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제2차 본회의 산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96.3.28(목) 10:00	□ [제3차 본회의 개의] 1. '95 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4.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 5. 기타안건 처리 [제3차 본회의 산회] ※ 폐회	

(별첨2)

의안번호	제 61-1 호
의 결 년 월 일	1996. 3. . (제 회)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 출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출년월일	1996. 3. 16.

19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의안 번호	61-1

제출년월일 : 1996. 3. 1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안이유

'95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 지출 건수 : 2건 (공무상 재해 보상금 부족분 지원 1건,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 1건)

○ 지출결정액 : 138,783,000 원

○ 지 출 액 : 138,783,000 원

○ 잔 액 : 없 음

□ 예비비지출내역 : 붙 임

□ 예비비사용명세서 : 붙 임

□ 예비비사용내역서 : 붙 임

□ 참고자료 :

○ 예비비 지출 공문 사본 2부.

예 비 비 지 출 내 역

(단위 : 천원)

순번	건 명	지출결정일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1	공무상 재해 보상금 부족분 지원	'95. 7.10.	50,783	50,783	0	
2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	'95. 9. 5.	88,000	88,000	0	
계			138,783	138,783		

`95. 예비비 사용명세서

(단위 : 천원)

과목					예비비 지출 결정액	예비비 사용액	예비비 사용잔액	예비비 사용내역	비고
장	관	항	세항	목					
본청	교육사업비	교육행정기관기타사업	관리행정사업(경상교육사업비)	민간경상이전	50,783	50,783	0	ㅇ공무상 재해보상금 부족분 지원 - 충북상고 교사 허영회 - 50,783천원	
본청	사학지원비	사학시설지원비	고등학교(투자교육사업비)	민간자본이전	53,000	53,000	0	ㅇ`95.8.25 ~ 8.26.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 - 현도상고 : 11,000천원 - 형석고 : 42,000천원 계 : 53,000천원	
보은교육청	시설비	학교기타시설비	국민학교시설(투자교육	시설비	22,000	22,000	0	ㅇ`95.8.25 ~ 8.26.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 - 수정국 : 22,000천원	
옥천교육청	시설비	학교기타시설비	국민학교시설(투자교육	시설비	13,000	13,000	0	ㅇ`95.8.25 ~ 8.26.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 - 군남국 : 13,000천원	
계					138,783	138,783	0		

예 비 비 사 용 내 역 서

(단위 : 천원)

<table>
<tr><th>구 분</th><th>사 용 내 역 및 사 유</th><th>사 용 액</th><th>비 고</th></tr>
<tr><td>1. 공무상 재해보상금 부족분 지원</td><td>ㅇ 공무상 재해보상금 예산을 358,390천원 확보하였으나 년도중 예측하지 못했던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여 부족분 지원
- 지급대상자 : 충북상고 교사 허 영 회
- 지급구분 : 장해 보상금
- 지 원 액 : 50,783천원</td><td>50,783</td><td>`95. 7.10. 지출결정</td></tr>
<tr><td>2. 중부지방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td><td>ㅇ `95.8.25 ~ 8.26.까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학교시설에 대하여 복구비 지원
<table>
<tr><th>학 교 명</th><th>피 해 내 용</th><th>지 원 액</th><th>비 고</th></tr>
<tr><td>현도상고</td><td>비탈면 유실 1,200㎡</td><td>11,000천원</td><td></td></tr>
<tr><td>형 석 고</td><td>진입로 석축 붕괴 235.5㎡</td><td>42,000천원</td><td></td></tr>
<tr><td>수 정 국</td><td>석축 붕괴 108 ㎡
담장 붕괴 36 M
맨홀 및 하수구 유실 1개소 6 M</td><td>22,000천원</td><td></td></tr>
<tr><td>군 남 국</td><td>담장 붕괴 70 M</td><td>13,000천원</td><td></td></tr>
<tr><td>계</td><td></td><td>88,000천원</td><td></td></tr>
</table></td><td>88,000</td><td>`95. 9. 5. 지출결정</td></tr>
<tr><td>계</td><td></td><td>138,783</td><td></td></tr>
</table>

충청북도교육청

360-160 / 청주 흥덕구 산남4-11 / ☎ 279-0287(0431) / 전송 66-8927 / 담당 원영흔

문서번호 : 행정 81450 - 490

시행일자 : 1995. 7. 10. (년)

취급		교육감
보존		
부교육감	[illegible]	정인영 7.10
관리국장	[illegible]	총무과장 [illegible]
행정과장	이상찬	인사계장 김호식
예산계장	[illegible]	협조
기안	원영흔	

(제1안)

받 음 : 내부결재

참 조 :

제 목 : 예비비 사용결정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중 공무상재해보상금여 예산 부족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비비 사용결정 하고자 합니다.

다 음

(단위:천원)

과목						예비비 사용액	사용부서	비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본청	교육사업비	기타교육사업비 교육행정기관	관리행정사업	사업비 경상교육	민간경상이전	50,783	총무과	공무상재해보상금여 지급액 부족분

덧붙일 : 예비비 지출조서 1부. 끝.

(제2안)

수 신 : 받는곳 참조

제 목 : 예비비 사용결정 통보 및 배정 통지

'9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출예산중 공무상재해보상금여 예산부족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재무회계규칙 제2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예비비 사용결정 되었기 통보하오며 배정통지(별도 배정서 없이 배정번호에 의거 배정 간주처리)하오니 집행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단위:천원)

기관명	과목						예비비 사용액	금회 배정액	비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총무과 (배정 제130호)	본청	교육사업비	기타사업비 교육행정기관	관리행정사업	사업비 경상교육	민간경상이전	50,783	50,783	공무상재해보상부 지급액



충 청 북 도 교 육 감

받는곳 : 본청 10, 12

충청북도교육청

360-160 / 청주 흥덕구 산남4-11 / ☎ 279-0287(0431) / 전승 66-8927 / 담당 김옥진

문서번호 : 행정 81450 - 614

시행일자 : 1995. 9. 4. (년)

최급		교 육 감
보존		정인영 9.5
부교육감	김준환	
관리국장	선재철	
행정과장	이상갑	
예산계장	권건철	
기안	김 옥 진	협조

발 음 : 내부결재

참 조 :

제 목 : 예비비 지출

재무 13330 -1402('95. 9. 4)호로 요청된 풍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복구비 지원 요구를 검토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복구소요액 10,000천원 이상 피해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하고 기타 피해는 자체복구토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1. 예비비 지출

(단위:천원)

과목					예비비 지출액	비 고
장	관	항	세 항	목		
교육청	사학지원비	사학시설지원	고등학교	민간자본전입	53,000	- 현상고 11,000 - 현석고 42,000 ※ 예비비 지출결정(복구소요액의 50%지원)
교육청	시설비	학교기타시설	국민학교시설	시설비	22,000	수정금
교육청	"	"	"	"	13,000	금일금
합 계					88,000	

2. 자체복구

(단위:천원)

구 분	학 교 명	복구소요액	복구주관부서	비 고
부 청	예 술 고	5,000	시 설 과	· 기타시설비 집행잔액으로 복구
	영등농공고	6,000	"	"
괴산교육청	감 물 국	5,000	괴산교육청	· 집행잔액으로 교육청에서 지원
음성교육청	금왕부곡	6,000	음성교육청	· 집행잔액으로 교육청에서 지원

끝.

(제2안)

수 신 : 받는곳 참조

제 목 : 예비비 지출 통보

중부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학교 피해복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기 통보하오니 조속히 복구하여 학교운영에 적정을 기하시기 바라며, 예비비 지출에 따른 배정은 부 공문으로 갈음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예비비 지출

(단위:천원)

과목					예비비 지출액 배정액	배정 번호	비 고
장	관	항	세 항	목			
부 청	사 학 지원비	사학시설 지 원 비	고등학교	민간자부전이	53,000	132	- 현도상고 11,000 - 형석고 42,000 ※ 복구소요액의 50%지원)
음성교육청	시설비	학교기타 시 설 비	국민학교 시 설	시 설 비	22,000	133	수정금
괴산교육청	"	"	"	"	13,000	134	감액금
합 계					88,000		

※ 복구소요액 10,000천원 이상만 예비비 지출. 끝.

충 청 북 도 교 육 감

받는곳 : 행정과, 재무과, 부교육청, 옥천교육청

(별첨3)

의안번호	제 61-2 호
의 결 년 월 일	1996. . . (제 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1996. 3. 16.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61-2

제출년월일 : 1996. 3. 16.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 제정이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를 구축,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주요골자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2. 운영위원회 설치특례 (안 제2조).
   - o 소규모학교 (6학급이하 또는 학생수 100명이하)는 학교장이 결정

3. 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 (안 제3조).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4조).

5. 위원의 자격 (안 제5조).
   - o 위원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o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을 제외하고는 2개교 이상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6.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음 (안 제6조).

7.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함 (안 제8조).

8.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안 제9조).
   - o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 o 학교예산·결산
   - o 교복,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o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요청 교원 선정
   - o 기타 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사항

9. 회의소집등 (안 제10조).
   - o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함.
   - o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
   - o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10. 안건의 제출, 발의는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 (안 제11조 및 제12조).

11.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 (안 제14조).

12.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21조).

□ 제정근거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같은법시행령 제31조

□ 조 례 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o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o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영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한 학생수가 100명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이하인 학교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원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 (위원의 선출등)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의무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위원의 퇴직) ①학생의 전학·졸업,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28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비와 학교운영지원비등의 실행예산·결산 및 찬조금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8.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9.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8호의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 (회의소집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1조 (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2조 (의사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3조 (교직원의 출석발언)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회의록 작성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8조 (운영경비등)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19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청의 지원·지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1997년 4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당해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관 계 법 령 발 췌 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1995. 7. 26. 법률 제4951호)

제44조의2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1996. 2. 22. 대통령령 제14924호)

제22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의 범위)

5. 관할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27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7인 내지 15인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구성비율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이하 "학부모위원"이라 한다) 40퍼센트 내지 50퍼센트, 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이하 "교원위원"이라 한다) 30퍼센트 내지 40퍼센트,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일상생활의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기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기업경영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규정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경우에는 학부모위원을 30퍼센트 내지 40퍼센트, 교원위원을 20퍼센트 내지 30퍼센트, 지역위원을 30퍼센트 내지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규정으로 구성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50퍼센트이상은 기업경영자로 선출한다.

④학생수가 100명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이하인 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설치여부와 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 분리·통합운영 여부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8조 (위원의 선출등) ①당해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③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회의의 직접투표에 의하여 교사중에서 선출한다.

④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한다.

⑤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제2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등) ①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도서 및 부교재의 선정,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활동 기타 시·도의 조례(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규정)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학교운영에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중 이를 시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①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공립학교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법령 및 시·도 조례의 관계규정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 (조례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시기) 법률 제4951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는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는 1998년 4월 30일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별첨4)

의안번호	제 61 - 3 호
의 결 년 월 일	1996. 3. 28. (제 61 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정만재 교육위원 외 3인
제출년월일	1996. 3. 1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 - 3

발의년월일 : 1996. 3. 16.
발 의 자 : 정만재위원외 3인

□ 개정사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1995.12. 30., 대통령령 제14,877호)의 개정 및 국내여비규정의 개정(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7호)과 국외여비규정의 개정(1995. 6. 10., 대통령령 제14,662호)으로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함.

□ 주요골자

o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편도거리 60킬로미터 이상)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원격지 회의출석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토록 함.

o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함.

o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국내·외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함.

□ 근거법령

o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o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별표5』
o 국내여비규정 「별표 2」
o 국외여비규정 「별표 2」

□ 조례안 : 덧붙임

□ 참고사항 : 덧붙임

o 신·구 조문대비표
o 관계법령 발췌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회의수당 지급)중 "회의수당을"을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을"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위원회사무실 소재지로부터 편도거리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를 지급한다.

③제2항의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은 별표3과 같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 및 식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 원)

구 분	숙 박 비 (1 야 당)	식 비 (1 일 당)
의장 · 부의장	37,500	25,000
위 원	37,500	25,000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중 숙박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위: 미불화)

구 분	숙 박 비 (1야당)
의장 · 부의장	가 등 급 169 나 등 급 123 다 등 급 97 라 등 급 83
위 원	가 등 급 137 나 등 급 99 다 등 급 76 라 등 급 65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지역(제7조제3항 관련)

(단위 : 킬로미터)

시·군별	대 상 지 역
충주시	동일원(71.0), 상모면(80.7), 살미면(71.7), 소태면(94.8), 엄정면(85.8), 산척면(85.8), 동량면(81.8), 금가면(83.8), 가금면(81.8), 앙성면(77.8), 노은면(69.8), 신니면(63.8)
제천시	동일원(118.9), 봉양읍(109.2), 백운면(120.9), 송학면(129.0), 청풍면(129.7), 금성면(130.2), 수산면(116.0), 한수면(124.7), 덕산면(109.4)
보은군	산외면(64.3), 외속리면(63.2), 내속리면(66.1), 삼승면(66.1), 탄부면(67.2), 마로면(70.1)
옥천군	동이면(63.4), 안남면(74.2), 안내면(72.1), 청성면(75.8), 청산면(77.5), 이원면(64.6), 군서면(60.6)
영동군	영동읍(83.4), 용산면(87.2), 황간면(100.0), 추풍령면(108.0), 매곡면(104.9), 상촌면(110.7), 양강면(87.4), 용화면(113.4), 학산면(97.7), 양산면(100.9), 심천면(74.0)
괴산군	장연면(65.6), 연풍면(70.4), 불정면(62.2)
음성군	생극면(60.5), 감곡면(71.6)
단양군	단양읍(143.5), 매포읍(155.6), 단성면(154.7), 대강면(155.4), 가곡면(150.7), 영춘면(164.4), 어상천면(164.8), 적성면(168.6)

참 고 사 항

□ 신·구조문대비표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 교육위원 국내여비지급범위

○ 교육위원 국외여비지급범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제2조(생략)	제1조-제2조(현행과 같음)
제3조(회의수당 지급) 위원이 회기중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단서신설)	제3조(회의수당 지급).....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을.....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제4조-제6조(생략)	제4조-제6조(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60,0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①..... ....
(신 설)	②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위원회사무실 소재지로부터 편도거리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한 교통운임(현지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 1)를 지급한다. ③제2항의 원격지회의출석비 지급대상 지역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제10조(생략)	제8조-제10조(현행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숙박비	식 비
의장·부의장	20,700	11,000
위 원	20,700	11,000

</td><td>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제8조제1항 관련)
(단위:원)

구 분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장·부의장	37,500	25,000
위 원	37,500	25,000

</td></tr>
<tr><td>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8조제2항 관련)
(단위:미불화)

구 분	숙 박 비
의장·부의장	가등급 147 나등급 117 다등급 92 라등급 79
위 원	가등급 130 나등급 90 다등급 72 라등급 62

</td><td>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제8조제2항 관련)
(단위:미불화)

구 분	숙 박 비
의장·부의장	가등급 169 나등급 123 다등급 97 라등급 83
위 원	가등급 137 나등급 99 다등급 76 라등급 65

</td></tr>
<tr><td>(신 설)</td><td>

[별표 3] 원격지회의출석비지급대상지역
(제7조제3항 관련)

시·군별	대 상 지 역
충주시	동일원(71.0), 상모면(80.7), 살미면(71.7), 소태면(94.8), 엄정면(85.8), 산척면(85.8), 동량면(81.8), 금가면(83.8), 가금면(81.8), 앙성면(77.8), 노은면(69.8), 신니면(63.8)
제천시	동일원(118.9), 봉양읍(109.2), 백운면(120.9), 송학면(129.0), 청풍면(129.7), 금성면(130.2), 수산면(116.0), 한수면(124.7), 덕산면(109.4)

</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보은군	산외면(64.3), 외속리면(63.2), 내속리면(66.1), 삼승면(66.1), 탄부면(67.2), 마로면(70.1)
	옥천군	동이면(63.4), 안남면(74.2), 안내면(72.1), 청성면(75.8), 청산면(77.5), 이원면(64.6), 군서면(60.6)
	영동군	영동읍(83.4), 용산면(87.2), 황간면(100.0), 추풍령면(108.0), 매곡면(104.9), 상촌면(110.7), 양강면(87.4), 용화면(113.4), 학산면(97.7), 양산면(100.9), 심천면(74.0)
	괴산군	장연면(65.6), 연풍면(70.4), 불정면(62.2)
	옴성군	생극면(60.5), 감곡면(71.6)
	단양군	단양읍(143.5), 매포읍(155.6), 단성면(154.7), 대강면(155.4), 가곡면(150.7), 영춘면(164.4), 어상천면(164.8), 적성면(168.6)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7조의4 내지 제19조,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교육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경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소위원회"로, "지방의회" 또는 "본회의"는 "교육위원회"로, "의원"은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으로 "내무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본다.[개정 92. 3. 25.]

[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회의수당(원격지회의출석비를 포함한다)의 지급기준은 별표 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지회의출석비는 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 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인 도서지역(연육지역을 제외한다)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되,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95.12.30]

[별표 5]

지방의회의원 회의수당 지급범위(제15조관련)

구 분	회의수당지급범위	원격지회의출석비지급범위
시·도의회의원	일 60,000원이내	별표6의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교통운임(현지 교통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3분의1) 범위이내
시·군·자치구 의회의원	일 50,000원이내	

□ 교육위원 국내여비지급범위

1995. 12. 29(대통령령 제14,857호) 국내여비규정 개정에 의함.

(단위 : 원)

구 분	철 도	선 박 운 임	항 공 운 임	자동차 운 임	현 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 부 의 장	1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6,500	37,500	25,000
위 원	1등급	2 등 정 액	정 액	정 액	6,500	37,500	25,000

□ 교육위원 국외여비지급범위

1995. 6. 10.(대통령령 제14,662호) 국외여비규정 개정에 의함.

(단위: 미불화)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부의장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급행요금 또는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2등급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공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침대요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실비액	1등정액	실비액	가등급 30 나등급 30 다등급 30 라등급 30	가등급 169 나등급 123 다등급 97 라등급 83	가등급 133 나등급 99 다등급 72 라등급 61	150	180	210
위 원			1등정액		가등급 25 나등급 25 다등급 25 라등급 25	가등급 137 나등급 99 다등급 76 라등급 65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별첨5)

시·도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 추진현황

1996년 3월 25일 현재

시도명	교육위원회 의결현황		비 고 (도의회 의결상황)
	상 정	의 결	
서 울	1996. 2. 27.	1996. 3. 16.(수정의결)	의안상정(4. 30. 처리예정)
부 산	1996. 2. 23.	1996. 2. 27.(수정의결)	수정통과(3. 18.)
대 구	1996. 3. 2.	1996. 3. 8.(원안가결)	의안상정 : 의사일정 부족으로 반려(4. 15. 처리예정)
인 천	1996. 3. 5.	1996. 3. 6.(수정의결)	3. 16. 의안상정 : 공청회 개최후 재심의
광 주	1996. 3. 22. 예정		청원제출중(4월중 처리예정)
대 전	1996. 3. 4.	1996. 3. 8.(수정의결)	의안상정(의결보류중)
경 기	1996. 3. 26. 예정		의안상정(4월중 처리예정)
강 원	1996. 2. 28.	1996. 2. 29.(수정의결)	의안통과(3. 19.)
충 북	1996. 3. 25. 예정		
충 남	1996. 3. 5.	1996. 3. 8.(원안가결)	의안상정(4. 20. 처리예정)
전 북	1996. 3. 18.	1996. 3. 22.(수정의결)	의안상정(4월중 처리예정)
전 남	1996. 3. 19.	1996. 3. 22.(수정의결)	의안상정(4월중 처리예정)
경 북	1996. 3. 5.	1996. 3. 7.(원안가결)	의안통과(3. 15.)
경 남	1996. 3. 19.	1996. 3. 22.(수정의결)	의안상정(4월중 처리예정)
제 주	1996. 3. 5.	1996. 3. 6.(원안가결)	의안상정(4월초 처리예정)

(별첨6)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3. 28.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123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123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124

4. 토론 주요내용 124

5. 심사보고 주요내용 124

6. 수정안의 주요내용 124

7. 심사결과 125

8. 소수의견내용 125

9. 기타 필요한 사항 12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6년 3월 16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1996년 3월 25일

다. 상정일자 : 1996년 3월 25일(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ㅇ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6년 3월 25일)

ㅇ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6년 3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자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인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학교공동체를 구축,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ㅇ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ㅇ운영위원회 설치특례(안 제2조).

-소규모학교(6학급이하 또는 학생수 100명이하)는 학교장이 결정

ㅇ학부모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까지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안 제3조).

ㅇ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

ㅇ위원의 자격(안 제5조).

- 위원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을 제외하고는 2개교 이상의 위원을 겸할 수 없음.

ㅇ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할 수

없음(안 제6조).

ㅇ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가능함(안 제8조).

ㅇ운영위원회 심의사항(안 제9조).

-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 학교예산·결산
- 교복,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교원을 초빙할 경우 임용요청 교원 선정
- 기타 학교운영에 관련된 건의사항

ㅇ회의소집등(안 제10조).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함.
-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
-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ㅇ안건의 제출, 발의는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ㅇ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함(안 제14조).

ㅇ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1조).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단위학교 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절차와 자율성의 확보라는 대전제 아래 면밀히 축조심사한 바, 일부 조문에서 의미의 불명확, 용어선택의 부적정 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기로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았음.

6.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수정이유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안은,

ㅇ소규모 학교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설치여부를 당해 학교장의 판단하에 결정하도록 함은 도내 상당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그 설치여부가 의문시되어 학교단위 교육자치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고,

ㅇ궐원위원에 대한 보궐선출 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명시하며, 보궐선출을 유보할 수 있는 경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 6월미만인 때로 하는 것은 학기운영을 고려할 때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기간의 폭을 축소하며,

ㅇ위원의 타교위원 겸직과 대표자가 운영위원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학교내·외 자생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ㅇ서류제출요구권 부여로 기능을 강화하고 최초 위원에 대한 임기개시일을 조례공포일로 정하여 합리화하고자 하며,

ㅇ기타는 용어의 통일과 일부 조문의 적절치 못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ㅇ"학교운영위원회"를 일부조문에서 "위원회"로 약칭한 것을 "운영위원회"로 통일함(안 제2조 및 제14조).

ㅇ소규모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여부 결정을 "학교장"이 하도록 한 것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하도록 함(안 제2조).

ㅇ궐원위원의 보궐선출 기한을 "궐원된 날부터 20일이내"로 명시하고, 궐원위원의 보궐선출을 유보하는 단서중 "6월미만"을 "3월미만"으로 함(안 제3조).

ㅇ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이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있는 범위를 1개교로 한정함(안 제5조).

ㅇ"위원의 퇴직"이라는 용어를 "위원의 자격상실"로 하고 해당 조문을 명료히 정비함(안 제7조).

ㅇ운영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 조항을 추가함(안 제10조).

ㅇ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에 한하도록 단서를 추가함(안 제20조).

ㅇ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일을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 이내의 기간중 당해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로 함(안 부칙 제2조).

다. 수정안 : 따로붙임.

7. 심사결과 : 수정안 의결(참석 5명, 찬성 5명)

8. 소수의견내용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별첨7)

의안번호	관련 제61-2호
의 결 년 월 일	1996. 3. (제 회)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 안 자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제안년월일	1996. 3. 28.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61-2호

제안년월일 : 1996. 3. 28.
제 안 자 :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1. 수정이유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제정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은,

ㅇ소규모 학교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설치여부를 당해 학교장의 판단하에 결정하도록 함은 도내 상당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그 설치여부가 의문시되어 학교단위 교육자치 정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우려가 있고,

ㅇ궐원위원에 대한 보궐선출 기한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이를 명시하며, 보궐선출을 유보할 수 있는 경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 6월미만인 때로 하는 것은 학기운영을 고려할 때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그 기간의 폭을 축소하며,

ㅇ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의 다른 학교의 위원 겸직과 대표자가 운영위원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학교내·외 자생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ㅇ서류제출요구권 부여로 기능을 강화하고 최초 위원에 대한 임기개시일을 조례공포일로 정하여 합리화하고자 하며,

ㅇ기타는 용어의 통일과 일부 조문의 적절치 못한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일부조문에서 "위원회"로 약칭한 것을 "운영위원회"로 통일함(안 제2조 및 제14조).

나.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여부 결정을 "학교장"이 하도록 한 것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하도록 함(안 제2조).

다. 궐원위원의 보궐 선출기한을 "궐원된 날부터 20일이내"로 명시하고, 궐원위원의 보궐선출을 유보하는 단서중 "6월미만"을 "3월미만"으로 함(안 제3조).

라.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이 다른 학교의 위원으로 겸직할 수 있는 범위를 1개교로 한정함(안 제5조).

마. "위원의 퇴직"이라는 용어를 "위원의 자격상실"로 하고 해당 조문을 명료히 정비함(안 제7조).

바. 운영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 조항을 추가함(안 제10조).

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을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에 한하도록 단서를 추가함(안 제20조).

아.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일을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중 당해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로 함(안 부칙 제2조).

3. 수정안 : 따로붙임.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붙임.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의 제목중 "위원회의"를 "운영위원회의"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학교장이"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중 "궐원된 때에는" 다음에 "궐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를 삽입하고, 단서중 "6월미만으로서"를 "3월미만으로서"로 한다.

안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1개교에 한하여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의 전학·졸업·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안 제10조내지 제21조를 각각 제11조내지 제22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안 제14조중 "위원회에"를 "운영위원회에"로 한다.

안 제2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안 부칙 제2조중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1997년 4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의"를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원안과 같음>
제2조(위원회의 설치특례) ①영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한 학생수가 100명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이하인 학교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원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②~④<생략>	제2조(운영위원회의·····) ①·····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 ②~④<원안과 같음>
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생략>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삽입)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생략>	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원안과 같음> ②·····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 ····· 3월미만으로서····· ····· ③<원안과 같음>
제4조(위원의 임기) <생략>	제4조(위원의 임기) <원안과 같음>
제5조(위원의 자격) ①~②<생략> ③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②<원안과 같음>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1개교에 한하여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의무등) <생략>	제6조(위원의 의무등) <원안과 같음>
제7조(위원의 퇴직) ①학생의 전학·졸업,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직된다. ②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의 전학·졸업·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8조~제9조 <생략>	제8조~제9조 <원안과 같음>

원 안	수 정 안
<신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제12조 <생략>	제11조~제13조 <원안 제10조내지 제12조와 같음>
제13조(교직원의 출석발언)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에.... ....
제14조~제18조 <생략>	제15조~제19조 <원안 제14조내지 제18조와 같음>
제19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
<단서 신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0조~제21조 <생략>	제21조~제22조 <원안 제20조내지 제21조와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1조(시행일) <원안과 같음>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내지 제4항에 의하여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하여, 1997년 4월 1일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 당해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특례) ①영 제27조제4항에서 규정한 학생수가 100명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이하인 학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원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는 당해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③분교장은 당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 이 경우, 분교장에 재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분교장에 소속한 교원을 위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④병설학교의 운영위원회는 통합하여 운영한다.

제3조(위원의 선출등)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②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궐원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3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학부모 및 지역위원의 자격중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 여부 및 교원위원의 자격은 규정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1개교에 한하여 위원을 겸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의무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학생의 전학·졸업·퇴학, 교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2.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8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영 제28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심의사항) ①운영위원회는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규칙의 제·개정

2.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교육비특별회계의 학교비와 학교운영지원비등의 실행예산·결산 및 찬조금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을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임용 요청할 교원(교장·교사)의 선정
8. 학부모·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
9.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제1항제8호의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소집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부터 15일이내에 소집한다.

③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3조(의사등의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4조(교직원의 출석발언)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공개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등을 통하여 회의개최일자, 안건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등) ①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

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9조(운영경비등)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제21조(교육청의 지원·지도)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지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내지 제4항에 의하여 1996년도에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 기간중 당해 학교의 규정이 정하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별첨8)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6. 3. 28.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141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141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141

4. 토론 주요내용 141

5. 심사보고 주요내용 142

6. 심사결과 142

7. 소수의견 내용 142

8. 기타 필요한 사항 14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1996년 3월 16일 정만재 교육위원 외 3인

나. 회부일자 : 1996년 3월 25일

다. 상정일자 : 1996년 3월 25일(제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ㅇ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6년 3월 25일)

ㅇ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1996년 3월 26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7호)의 개정 및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7호)과 국외여비규정의 개정(1995. 6. 10. 대통령령 제14,662호)으로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액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함.

나. 주요골자

ㅇ회의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편도거리 60킬로미터 이상)에 거주하는 위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 원격지회의출석비를 회의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토록 함.

ㅇ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함.

ㅇ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의 국내·외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함.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개정조례안의 근거법령등을 토대로 개정내용을 면밀히 심사한 바,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충실하여 적정히 작성되었다는 데에 심사위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였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참석 5명, 찬성 5명).

7. 소수의견 내용 : 해당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第 61 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條例審查小委員會 會議錄

('96. 3. 25. ~ 3. 26.)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臺北市議會 會員參小查審附錄

（96.3.25 ～ 3.26）

臺北市議會教育委員會

목 차

1.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3

2.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49

3. 부 록

가.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나.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 1 호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6년 3월 25일 (월요일) 14시 30분

의사일정 (제61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 30분 개회)

1.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박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정길

김정길 교육위원입니다.

이경윤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 이경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계질서가 있는 건데요, 여러 가지 연장순으로 보더라도 우리 안병일위원님이 저는 하는게.....

(여러 위원 웃음)

● **위원 안병일**

제 생각은 이게 큰 저기도 아니고 임시위원장을 하시는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하셨으면 하고 바랬는데, 이것도 돌려가면서 한다는 것도 하나는 경험도 좋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서로 내약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경윤위원이 겸양지덕의 말씀은 고마우나 그냥 이경윤위원으로 이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 **위원 이경윤**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 **위원장직무대행 박동기**

지금 말씀을 이경윤위원님과 안병일위원님이 있었고, 사실 2명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을 부쳐야 되는데 전부 합쳐서 5명인데 표결하기도 그렇고, 우리 이경윤위원이 제일 먼저 추천이 됐고, 두분 위원님들께서 암시적으로 호응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경윤위원님으로 추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표결없이 이경윤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시위원장은 이대로 물러 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경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방금전의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안병일**

김정길위원님이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경윤**

예, 위원님들 모두 찬성하시므로 김정길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셨음을 선언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정길**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소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

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 의사일정안

(14시 36분)

● 위원장 이경윤

다음은 본 소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의 의사일정안은 활동기간을 금일과 내일, 2일간으로 하여 본 소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바라며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바와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참 조〉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

3.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경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오전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하고, 본 개정조례안 작성에 직접 관여한 의사과장의 보충설명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님 설명바랍니다.

● 의사과장 강인형

의사과장 강인형입니다.

그 개정사유나 주요골자 이것은 먼저 정만재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변경되는 것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관계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안의 6페이지를 보시면은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참 조〉

2.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과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환

그 거리와 숙박,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은 100키로 이상이면 하루 회의를 하더라도 숙박으로 간주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조례는 필요가 없습니까?

● 의사과장 강인형

예, 조례는 그게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는 경우거든요, 회기가 아닐 때는 안됩니다.

이거는 회기중의 일비 및 여비를 저희 작년 9월 이전에는 회기 중에는 다드렸습니다.

여비도 드리고, 수당도 드리고 다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전국을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하다보니까 회기중에 안나온 분도 드리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부 공휴일도 안되고, 회기중에도 안나오면 안준다 전부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수당을 주고 그래도 현재 작년보다 받던 것만도 못하다. 위원들 여비를 다 받던 것이 출석한 날만 받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전에 안드리던 60만원, 저희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교육위원님들은 그전에 30만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6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안납니다마는 도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현실화 해준다 하더니 현실화가 아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러 생기니까 지금 회기중에 공휴일이 들어간 때는 공휴일날도 회의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는 이렇게 다시 만들어 진 겁니다.

● 위원 조일환

예, 그 다음에 식비의 1/3 식비만이죠?

● 의사과장 강인형

예.

● 위원 안병일

이 키로수를 60키로다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기안을 한겁니까, 도 조례를 인용한 겁니까?

● 의사과장 강인형

도 조례의 별표를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 위원 안병일

그러면 먼저보다 개선된 것은 지금 60키로 이상하고, 그런데 우리 같이 연간 60일밖에 안되는 사람들은, 도의원처럼 연간 120일될 때에는 공휴일이 거의 삽입되니까 많이 받지만 우리는 별거가 아니네요?

● 의사과장 강인형

예, 우리는 별 의의가 없어요. 단지 이제 공휴일을 넣어서 금, 토, 월, 화 이렇게 잡아가지고 회기 5일을, 이제 4일이지만은 하루를 넣어서 5일로 잡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전에 회의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회의도 않고 말이지 수당을 주기 위해서 공휴일을 넣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공휴일을 빼고 저희들이 해왔고, 정기감사때 정기회때는 20일이니까 공휴일이 어떻게 하든지 들어가게 되지요.

그럴때에는 그냥 지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충분한 질의가 계셨으므로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건에 대한 의결은 내일 2차 소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의견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지금 시간 3시 5분이 안됐습니다.

3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분)

(15시 10분)

---

7.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이경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집행청 관계관으로부터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설명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제안설명은 아까 제가 본회의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대충 개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간단히 제안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조문별로 축조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한조문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이어서 다음 조문에 대한 질의를 차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조부터 심사를 하겠으니 질의하실

분 질의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관리국장 신재철**

제가 이 조문을 한조가 통과되면은 다음 조를 낭독을 해드리죠.

● **위원 조일환**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그 위원장님이 사회가 안되고 하니까, 조문만은 위원장님이 낭독해 주시죠?

● **관리국장 신재철**

좋을대로 하시죠.

● **위원장 이경윤**

예, 그러면 제가 2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2조)

(끝에 실음)

여기까지 이의없으십니까?

● **위원 조일환**

거기 2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조례안에 본 위원이 유선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시·군이 약 70%, 그 다음에 제출이 되어 있는 데는 모두가 상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광역의회까지 통과된 시·군은 제가 확인한 데는 3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의사국에 부탁을 드려 가지고 대전, 충남, 부산, 서울, 그리고 본도에서 제출한 안을 비교표를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좀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에 충청북도에 보면은 예시안에 규정한 소규모 학교라는 말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규정한 "학생수가 100명이하이거나 6학급미만인 학교" 즉, 소규모 학교는 무엇이냐, 이것을 괄호안에 집어 넣어었는데 이것을 삭제한 이유, 그 다음에는 학교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원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그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을 본 교육부안에는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학교장으로 바꾼 배경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학교장도 위원입니다.

위원 스스로가 이것을 설치한다, 안한다, 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면서 학교장으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 안은 제 개인적으로 학교장은 도로 교육장으로 바꾸는 것이 모순이 없다,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 **위원장 이경윤**

지금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 말씀을 드리죠.

여기 지금 소규모 학교라고 해놓고 괄호해서 학생수 100명이하 또는 6학급이하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우리는 소규모 학교의 괄호를 풀어 쓴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규모 학교 자체를 빼고 "학생수가 100명이하이거나 학급수가 6학급이하인 학교는" 바로 소규모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환**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라는 것 하고 괄호를 열고 거기에 한계, 리미트(limit)를 쳤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하게 소규모 학교다 이렇게 하고 괄호를 해서 하는 것이 제 생각은 더 분명하고, 두 번째 지금 말씀하신 학교장이.....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그것은 아직 설명을 안드렸고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법제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심의를 거쳤는데, 우리 법무계장 얘기가 결국 이 내용은 말이 괄호를 해서 풀어 본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 뜻은 소규모 학교가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소규모 학교를 빼도 학생수가 100명이하거나 학급이 6학급이하면은 그게 다 범주내에 다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 **위원 조일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떤 학교로 정해졌느냐, 소규모 학교 범위를 얘기하라고 하며는 괄호에다가 설명이 필요할 때 주는 것이지, 제가 볼 때에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내내 같은 뜻인데 법무계장한테 물었더니 그 얘기가 이게 설명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괄호해서 하지마는 통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규모 학교라는건 학생수가 100명이하거나 학급이 6학급이하를 통칭 부르니까 이중으로 소규모 학교해서 괄호해서 써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린 이걸 뺀겁니다.

● **위원 조일환**

예, 알겠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그 다음에 아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위원인데 어떻게 이것을 설치여부를 결정하느냐 이랬는데, 학교장이 당해학교 학부모, 교원 등 여론을 수렴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한다는건 이미 설치되기 전에 학교장으로서의 얘깁니다.

설치가 되고 나서의 위원으로서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학교는 소규모 학교다 이겁니다, 학생수가 100명이하이고 학급수가 6학급이하인데, 우리도 한 번 학부모나 교원들 여론을 들어가지고 우리도 한 번 이걸 이상적으로 학교는 적지만 한 번 운영해 볼 필요

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미 설치가 되어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설치되기 이전에 학교장이 그런 것을 한다 그 얘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율권을 교육장이나 뭐 이렇게 위에다가 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교장선생님의 의지가 뚜렷하고 나는 해보겠다 하면은 자율적으로 학교장이 결정을 하도록, 그런 얘깁니다.

● **위원 조일환**

이게 실제 지난 해에 시범학교를 운영한 교장선생님 두 분을 만났는데 전부가 무용론입니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교육장이라는 통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때에.

어느 교장선생님이고 이 위원회 환영하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정말로 이것은 교육계에 해야 된다, 사실상 일선에서는 마치 본청의 교육위원회처럼 왜 우리가 상전 하나 더 모시느냐, 지금 금년에 아마 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구성을 해서 실현들 해라 했을 겁니다.

안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학교장이라는 말을 국장님 의견까지는 좋은데 하여튼 학교장이라는 말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거의 할 의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장이 일괄성도 있고, "자 이것은 이 지역은 열린 학교나 교육개혁이 잘 안돼서 해봐" 해서 행정으로 이것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쪽이니까, 저는 학교장을 교육장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지금 신국장께서도 충분한 의견을 제기했고, 또 우리 조위원께서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위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조항을 학교장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은 교육장으로 하는게 좋으냐 하는 두가지 안에 대해서.....

● **위원 박동기**

내 의견하나 제시할께요.

이것은 검토를 안해봤는데, 이것을 보니까 제2조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당해 학부모,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희망적이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권장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해도 좋다 라고 하는 소규모 학교에 이걸 규정한 것 같아, 그러니까 당해 학교 교장이 딱 봤을 때 우린 소규모 학교지마는 학생수도 적고, 학급수도 적으면 연쇄적으로 교원수도 적어집니다.

오히려 이 위원회가 7인내지 15인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교원수 보다도 오히려 많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객이 전도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여.

그러니까 우리 소규모 학교에서 좀 계획적인 의견을 가지고 조금 전진하는 자세로서 한 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교장의 의욕이 있

을 때는 한 번 해도 좋다.

그러나 강제규정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까닭에 학교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면은 교육감내지 교육장은 그 학교의 실정을 감안해서 그 교원들이나 그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이것도 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서 좋다라고 하면은 교육감, 교육장이 권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조일환**

여기의 내용은 이것은 우리 도내에 100명 이하의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농촌에 대다수입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운영계획에 있어서 종합생활기록부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를 하자는 이 차질이 상당한 차질이 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에 교육부에서도 법제관을 동원하고 법적으로 이것도 심의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학교장이라고 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한, 또는 현장에도 갔습니다.

제가 이 축조안을 개별적으로도 구했고, 또 제나름대로 이것을 오려서 이렇게 쳐가지고 뭐 제 생각이 옳다는게 아니라 이 법의 취지가 뭐냐, 설치운영을 해라 하는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학교장으로 했을 때에 학교장이 판단해라 했을 때에 제가 확인하고 지금 현지 학교 운영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이것을 어떤 분들은 짐스러워 하고, 지금 청주시내 어느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4월 1일부로 운영위원회를 열겠다 하는 학교도 세상에 이게 서무가 뭐 간사다, 전부가 이건 고통입니다.

그래서 학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장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행정과 행정계장 안용균**

제가 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예시안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교육부에서 예시안을 가지고 시·도 담당 계장하고 장학관, 또 교육부의 비상기획과장, 담당사무관해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 조항뿐만아니고 몇 개 조항은 예시안에 있는 것보다 거기 자리에서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조일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학교장이 했을 때는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안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당해 학교의 학부모나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교장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

왔습니다.

이걸 이렇게 교육감 또는 교육장하지 말고, 필요에 따라서 "학교장이 하던지, 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시·도에 따라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서 참 타시·도 비교는 안되지마는 충남하고, 저희는 학교장으로 바꿨습니다.

● **위원 조일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 안병일**

지금 조일환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설득력은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모든 학교를 교단중심으로 하라, 그리고 공급자 보다는 교장입장을 생각하고 교육자치의 근본이념이 거기에 있다고 하면은 그 학교에 대한 실정을 이걸 나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학교장이 귀찮아 안할려고 그래가지고, 그 사안을 민주적으로 운영해야겠다고 하는 교육개혁이 있기에 위반될 소지 또한 없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학교장을 의심하고 학교장을 소외시켜가지고 그 학교운영이 제대로 될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학교는 학교장의 책임하에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학교장의 의견을 전적으로 듣고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일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이 뭐냐, 학교장 중심, 지금까지의 한 사람의 생각가지고 학교가 경영이 됐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원위원회도 학부모위원회도 지역위원회도 들어오고, 위원장이 학교장이 해선 안된다고 못이 박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저의가 학교장 한 사람이 마음대로 했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학교장이 1인 혼자의 생각으로 학교를 경영하고, 전횡의 경향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1조를 보면은 목적이 뭡니까?

저는 그래서 학교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한다, 그러면 학교장이 필수위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심사했을 때 정말 그야말로 이 법을 만들어 주고 일선에서 사문화 되지 않도록 참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자 제 나름대로는 며칠을 고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장이 한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다.

● **간사 김정길**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조일환위원님께서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장이라는 이 문안을 각 시·군 교육장으로 고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주같은 경우에는 100명이하 되는 학교에 설치를 안하고 있으면은 청주시 교육장님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또 음성은 음성, 단양이면 단양 그 시·군 교육장님들은 그 시·군에 대하여 상당하게 밀도있고 깊이 있게끔 그 지역 실정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장님으로 고치는게 어떻겠습니까?

● **위원 박동기**

그런데요. 지금 이 개념을 한 번 보시고 잘 따져 보시라고요, 이 조를.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우리 집행기관하고 나하고는 같은 맥을 통하는 얘기인데 이것은 소규모 학교이건, 대규모의 학교이건 간에 역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도록 하라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보다도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수가 많은 이런 거치장스러운 이런 학교에서는 이 운영위원회 조직을 해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학교장이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 학교는 소규모 학교이지마는 예외시키지 말고 우리도 한 번 의욕적으로 한 번 해보자 이런 의사를 들어서 사전에 하고 싶다고 하면은 조그만 소규모 학교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감, 교육장 할 필요가 없다 이거여.

왜냐하면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알겠지만 시범학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률로써 정했지마는 시·도의 실정에 맞게끔 점진적으로 권장을 하는 겁니다.

또 타기관에는 우리가 인건비고 전부가 보조되지마는 역시 사립학교는 권장을 하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하라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규정이 아녀, 우리 학교는 조그만 학교이지마는 이 교육부에서도 지침을 내릴 때 조그만 학교는 예외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예외인데 그 학교에 학교장이 소신껏 해볼려면은 해도 좋다 이겁니다.

이것을 여기 표기한겨, 그러니까 교육장이고 교육감이고 암만 의지가 있다손치더라도 결국은 교장들에게 의견을 수렴을 해보는 건데 그럼 교장이 우리는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만이다 이거여.

그러니까 교장이 하고 싶다고 하면은 조그만 학교도 해도 좋다 이거여.

● **간사 김정길**

제가 보충말씀 좀 드릴께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거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25명이나, 50명정도 분교를 제외한 소규모 학교는 100명이라면 6학급이하 이 취지가 뭐냐면 말이죠.

이 열린 행정, 교육의 행정, 이게 이제 학부형들이나, 그 학교운영자체를 선생님들한테 공개행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발된게 아닙니까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은 6학급 정도면은 교장선생님들이 할려고 노력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겠지만은 지금까지 관행으로써 그냥 내가 학교를 운영해 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을 안할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말이지요.

그래서 시·군 교육장님들이 저 학교는 6학급이라도 한 번 해볼만한 데 말이야, "왜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생각을 안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때는 교육장님이 "그 학교 한 번 해보쇼", 할 수 있으면 말이야. 그래서 조일환위원님이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 허허.....

● 위원 조일환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박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학교를 열어라 이겁니다.

정말 교육개혁이 뭡니까?

그러면 저래도 100명이하 지금 단양같은데 100명이하 6학급 되는 데가 거의 입니다.

그러면 제가 교장이라면 이거 학교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예산, 결산 할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같으면은 정말 내 교육철학이라도 정말 "교육개혁에 나도 동참하겠다" 할 수도 있지만, 반면 제가 현장을 이렇게 하고 또 관행적으로 보면 "왜해" 하는 학교장도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시범학교를 운영했고, 금년에 시, 내년에 군, 후년엔 면까지 점진적으로 다하게 됩니다.

그래 점진적인 원칙으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교육장이 적어도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장이 그 지역을 봐서 야 단양에 똑같은 100명이하인데도 단양에도 여긴 좀 지역의 여론을 왜 교육장이 수렴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학교장이 해봐라 얼마든지, 그러면 안할 사람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염려를 하는 것이지, 여기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 위원 박동기

넣을려면은 교육장, 교육감을 다 넣어야 하고, 왜냐하면은 조그만 소규모 학교 6학급 이상, 100명이하라는 것은 초등 얘기고 주로, 중·고등학교는 3학급이지, 6학급이 아녀.

그리고 6학급이하 100명이하면은 초등학교도 3학급짜리도 있고, 4학급짜리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씀여.

그런데 넣을려면은 교육장, 교육감 다 넣

어야 하고, 이 법 취지는 사실은 그 조항은 그 학교장이 판단해서 의욕적으로 할려면 해 봐라 이런 얘깁니다.

● **위원 조일환**

만약에 이 조가 박위원님의 말씀대로라면은 애초에 교육부의 안이 학교장으로 나왔을 거예요.

여기도 바로 현장에서 이것을 잘 실시가 안될 염려가 있어서 충분한 고려를 해서 한 게 아니냐.....

● **관리국장 신재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요.

이게 지금 교육부 예시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인데 아까 우리 행정계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뜻은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가서 당해 학교 학부모하고 모여 놓고 "너희들 해봐라." 이게 자율권을 침해하는게 아니냐 하니까, 차라리 학교장이 자발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유도하는게 낫지 교육감이 가가지고 "너희 학교 괜찮을테니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시일변도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겁니다.

● **위원 조일환**

아니, 그건 아니예요.

신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그럼 학교장이 모든 자율권을 이렇게 줄려면 이게 운영위원회 본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장 중심에서 예산이고 뭐고, 그러면 학교장 뭐든지 자율권이라 혼자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수요자 측에서도 참여를 해라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게.

● **위원 안병일**

그런데 지금 신국장님 하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우리가 열린 교육이다, 교육자치다 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너무 획일적이고 어떤, 때로는 강압적인 어떤 명령계통 지시를 아주 안할 수는 없지마는 가급적 줄이고,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을 하고 학교장 혼자만의 생각만이 아닌 학부모 대표, 지역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주교육을 하는데 뜻이 있거든, 이런데 우리가 이 교육자치의 근본이념에서 위배되는, 위배가 100% 꼭 된다기 보다도 위배성이 있는 강압적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뭐 하라" 하기 싫은걸, 그러나 지금 교장이 설사 안하고 싶은 교장이 많다고 보더라도 일단은 그 교장이 소정의 자격과 역할을 갖추어서 임명이 됐으면은 그를 일단은 믿어주고 교육행정을 해야지, 그 사람이 안할 것이다 하는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생각으로 또 다시 묶는 식으로 명령적인 식으로 합의를 한다 하는 것은 교육개혁의 취지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하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걸로 압니다.

● **위원 조일환**

안위원님이 이걸 역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바로 학교장의 중심 때문에 이 교육이 열리지 않고 개혁이 안되는 것을 통제하는 기구입니다.

이게 예산, 학교의 모든 학사 행정을 여기를 통과하는 거고, 교장이 위원의 자격이지, 이 위원장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가라 그런 얘기예요.

● **위원 박동기**

아니 너무 그렇게 심오하게 따질게 아니라 여기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운영 총책은 학교장입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하되, 여기는 뭐냐고 하면은 어드바이스(advice) 기관입니다. 이 자문위원회하고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영권은 누구냐 할 것 같으면은 교장이예요. 교장 책임하에서 하는 겁니다.

다만 그 학교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교원들의 의견을 듣고,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지역 사회의 인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을 하는 겁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 제쳐놓고 학교의 모든 것을 운영하는게 아니예요, 그것을 착각을 하면은 안됩니다.

● **위원 조일환**

아니 이걸 자문기구라고 생각하시면은 큰 착오입니다. 이것은 의결기관입니다.

● **위원 박동기**

자문 의결기관이 뭐냐하면은 그 내용이 뭡니까?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이 뭐냐이거여. 그러니까 그 역할이 학교운영 전체의 권한을 꼭 부여한게 아니다 이거예요.

● **간사 김정길**

예,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20조에 보니까 말이지요. 교육청의 지원 지도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 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학교장으로 해놓고, 그대로 해놓으시고요, 이 조항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 조항에 따라서 나중에 교육장님이나 교육감님이 꼭 필요를 느끼는데도 안하는데는 충분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이런게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지금 그 문제는 열린 학교운영을 좀 자율적으로 해보자고 하는데 의도가 있는 이런 조항이니까, 학교장이냐, 교육장이냐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결정하기로 하고 일단 3조로 넘어가지요.

그래서 그 다음 조항을 심의하는 동안에 앞의 2조가 이해가 안되면은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고, 일단 이 문제는 보류를 하도록

하고 3조로 넘어가는게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2조의 학교장이냐, 교육장이냐 하는 문제는 이 조례를 심의한 후에 다시 결정하도록 하고 3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3조)

(끝에 실음)

여기까지 별 이의없겠습니까?

● **간사 김정길**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조 2항에 말이지요.

위원이 궐원될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첫째, 그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개월이면 한 학기입니다.

그러면은 한 학기동안에 위원을 선출 안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6개월되면은.

그러면 이 단계를 3개월이면은 3개월, 뭐 2개월이면은 2개월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1/4이상 궐원되지 아니한 때" 이것은 15명정도를 우선 임의로 잡는다 하면은 그 직능별로 따지면은 그 기업가가 2명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일반 지역사회 인사가 2명이 들어 갈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지역 인사가 다 빠져버려도 회의 그냥 진행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위원구성 비율의 운영원칙에 위배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3조 2항에 위원이 궐원될 때에는 보궐선출하도록만 되어 있는데 며칠만에 "1주면 1주, 2주면 2주안에 10일이면 10일, 20일이면 20일안에 보궐선출을 하고 잔여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설명을 드린게 "6월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1/4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한다." 하는 부분, 이것도 6월을 6개월이면은 한 학기인데 이것을 3개월이나, 2개월이나 이렇게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입니다.

1/4이상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원취지와 목적과 분배된 정수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세가지만 또 한 번 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조일환**

고맙습니다.

저도 그 거기 6개월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계를 느낀다, 해서 3개월정도가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역 위원의 보궐선거도 최소한 몇 일이내에 몇 일까지의 이건 한계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위원회 구성입니다.

어떻게 구성하느냐.

그런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 하면은 교육자치법시행령 22조 아까 신국장님이 낭독해주신 교원위원은 몇 %고, 그 다음에 학부모위원은 몇 %고, 또 지역위원 이것이 빠져있다, 제가 볼때에 그러니까 이 구성에서 그런 지침을 줘야지.

그리고 "인원은 7인이상 15인으로 한다.", 이런 것을 여기 한계를 줘야 되고, 또 여기에서 빠진 것은 제가 볼 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빠져있어요. 어느 위원이든, 어느 위원회든 감사는 넣어야 됩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위원의 선출이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말씀하시죠.

● **위원 조일환**

선출이 구성아닙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지요.

● **위원 조일환**

그럼 구성은 언제 나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시행령 27조에 나오지요.

시행령에 나오기 때문에 이 조례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 **위원 조일환**

아니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이 시행령에 준한 여기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지요. 세칙을 만드는 겁니다.

● **위원 조일환**

그럼 세칙에 이걸 넣었다고 해도 이 규정에.....

● **관리국장 신채철**

아닙니다.

법칙에는 그렇게 되는게 아니예요.

모법에 있는 것을 밑에 넣는게 아니예요.

● **위원 조일환**

안 넣어도 좋다?

● **관리국장 신재철**

예, 원래가 안 넣는 겁니다.

● **위원 조일환**

제 생각에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상위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감사는 여기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서 보고를 해가지고서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감사기능을

따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조금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9조를 보세요. 심의사항이 있습니다.

"제1항이 운영위원회는 영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지 심의·의결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아까 박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서 한 것이 결정적으로 학교를 구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의를 했을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간사 김정길**

예, 국장님 이것은 말이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간사 김정길**

시간이 물론 우리가 진지하게 토론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운영조례안 아닙니까, 이 조례안이 우리 교육위원회를 거쳐서 도의회를 거쳐서 공포가 되고 나면은 학교에서 여기에 대한 규칙을 정할게 아닙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맞습니다.

● **간사 김정길**

예, 그 규칙안에 전부가 감사니, 뭐 임원이니, 또 임원개설이라든지 이런게 다 들어갈거 아니예요?

●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지요.

● **간사 김정길**

그러면 우리는 조례안 아니예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지요.

● **간사 김정길**

그러면은 이 조례안만 본 뜻을 알고 진행하자 이거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말씀이 자꾸 나오니까.....

● **위원 김정길**

이 조례안이 완전히 심의가 되가지고 통과가 되면은 공포가 될게 아닙니까, 공포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규칙은 학교별로.....

● **위원 조일환**

그거 시행규정은 그런데, 지금 그 심의기구다, 제가 잘못 아는지는 몰라도 의결기구가 아니다, 그러면 심의라는 내용이 만약에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심의를 해서 좋다, 나쁘다 검토만 하고, 나머지의 결정권은 뭐 위원장이 합니까, 누가합니까?

심의를 했으면은 그 안건에 대해서 가부는 어떻게 결정도 안합니까?

● **행정과 행정계장 안용균**

결정은 합니다. 결정은 하되 의결은 아닙니다.

● **위원 조일환**

아니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을 때는 거부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심의기구도 아니고, 의결기구도 아니고 그럼 학교운영위원회를 뭐하러 토론합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성격상 이것을 자문적인 기구로 이것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조일환**

아니, 여기 청원권도 나오고 하는데.....

● **행정과장 이상찬**

제가 말씀을 드려 볼께요.

참 이게 성격상으로는 자문적인 기구이면서도 하나의 학교장을 구속한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는 당초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5월 31일 발표할 때에는 의결사항과 심의사항을 구분했었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이 의결이 싹 빠지고 심의로다가 바뀌었어요.

● **위원 조일환**

그러면 심의는 개념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안건이 학교장이 위원회에다가 회부를 하면은 위원장이 그것을 의제를 제출하겠죠, 그래서 학교에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에서 어떠한 돈이 나왔다, 자금이.

그럼 이것을 어떻게 쓰겠느냐,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회의를 하고 그러면 여러 위원들이 심의만해 좋다, 나쁘다, 그럼 결정은 학교장이 해라 그겁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지요.

● **위원 조일환**

그럼 위원장이 하라 그겁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죠,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지요.

● **위원 조일환**

그런데 그건 의결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지금 약간 법적으로 모호한데요.

● **위원 조일환**

아니, 그건 규정을 해줘야지, 이러면은 심의라면 통제권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권장자문기구, 절대 자문기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심의기구다 그 이상 어떤 심의를 해서 좋다, 나쁘다 떠들기만 했지, 결정할 의결권은 없다 이겁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지요, 그 의결이 아닙니다.

이런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권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딱 하면은 그것은 완전히 따라야 할 의결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심의·의결권은 여기서 심의한다는 것도 안건으로 내면은 아 이것은 좋다,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결정을 땅땅땅 두드리고 그 의결자체는 합니다.

그런데 기관이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 위원 조일환

그러면은 그건 왜 의결했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 원칙을 지금 심의기관, 의결기관을 자꾸 논하실려면은 그건 좀 다르지요.

● 위원 조일환

글세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학교장이 거기에서 의결한 것을 따라야 되고, 부당하다 할 때는 재심을 청구를 해야되고, 재심에서는 또 2/3이상이 찬성을 해야지 통과되게 되어 있어. 그러면 뭡니까, 강제규정이지, 어째 그게 의결이 아니예요.

● 행정과장 이상찬

그것은 학교장이 절대 안들었다고 볼 때에 법적으로 공법상에 학교장이 책임을 지느냐, 그 한계가 의결이냐, 자문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절대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걸 학교장이 불응했다고 해서 그 학교장이 반드시 처벌대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 간사 김정길

이걸 가지고 말이지요, 밤새도록 해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3조2항에 그 3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위원 조일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진행 발언 할께요.

이게 한 번 통과되기가 쉽지, 이게 우리가 밤을 새워도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못하고 내일이라도 이건 토의가 조례니 뭐니 하면서 "의결기구도 아닌데 말여 그걸 왜그렇게 하느냐" 이런쪽이다 이거여. 나는 자문기구다, 나는 이런 회의는 처음 봤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의결기구예요.

한 번 교육부에 알아 보십시오.

이 자치법령으로 나오고 이거는 의결기구입니다.

이 법령으로 나온게 의결기구 아니라면은 그럼 어떤 심의만 하고 만다, 저는 그 개념을 모르겠어요.

● 관리국장 신재철

심의·의결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심의·의결사항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9조에 보시면은 심의사항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 간사 김정길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9조 심의사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

면은 지난 번까지는 학교장이 전부 전반적인 행사를 종횡무진하게 전부 했지 않았습니까?

혼자서 여행도 결정하고, 뭐 물건 사는 것도 결정하고 전부 다 했었는데 이 심의사항을 두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가지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뭐 여행을 어디로 갈 것이냐, 텔레비는 뭘 살거냐, 책상은 얼마나 살거냐, 가격은 어떻느냐, 모든 것을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하게끔 만들어 놓은 기구란 말이예요.

그래서 이 심의사항을 넣어 놓은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장선생님이 봤을 때에 이게 좀 부당하단 말예요.

뭐 여행을 학교장께서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또 돈은 얼마를 들여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엉뚱하게 학부형들이 좀 잘못해왔을 때 그 때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간사 김정길**

그렇다면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7명이 됐든, 15명이 됐든 그 심의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부당하게 상식밖으로 결정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월전만 해도 학교장 마음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 내가 누구 업자를 아는데 말이야, 뭐 미리 좀 해줘.

이런식으로 전부 이루어져 왔단 말예요 하나의 관행으로써, 그래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기구를 두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조일환**

이게 통제의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그냥 심의만 하고 끝나는 기관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라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김 위원님 말씀같이 그렇게 학교장 혼자서 하는 것을 공통으로 의결을 해서 그것을 받아 들여라 부당할 때에는 재심할 수 있어, 재심할 때에는 또 위원회에서 재심을 해 그 때는 이제 과반수 이상이지만 여기서는 2/3이상 더 신중하게 토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학교장이 또 그것을 넘겨주면은 학교장 안대로 되면은 학교장 안대로 하는 것이고, 위원회 안대로 되며는 위원회 안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심의만 하고 끝난다니까 이건 아니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심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기서 통과를 안시키는 게 아닙니다.

● **위원장 이경윤**

제가 한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이 용어 해석에 대해서 참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나름대로의 견해가 다 맞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학교장

일방적으로 해오던 것을 견제하고 어느 정도 당신 마음대로 하지 말고,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알려가면서 독선으로 하는 것을 막자고 하는데 아마 이 목적이 있는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 발자국씩 양보해 주는 학교장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또 꿰뚫어지게 보면서 견제하는 역할로 이 운영위원회에 공감을 하시면은 해석이 될 것 같아요.

● 위원 박동기

사실은 말이지요, 학교장이 독선적으로 하고 직권을 남용을 해서 했다라고 하는 우리 이런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학교장도 민주적으로 많이 한겁니다.

왜냐하면은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육성회 임원이라는게 뭡니까?

결국 학부모 대표 아닙니까?

학부모 대표들에게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그리고 자모회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자모회 회원들에게 충분히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학교장이 우선 순위에 의해서 프로젝트(project)를 세워가지고 추진을 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그 방안은 지역사람의 몇 %, 교원들 몇 %, 학부모들 몇 % 넣는다는 자체는 뭐냐하면은 학부모 대표외 말하자면은 수요자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런 학교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또 학교운영회에 걸맞게끔 하기 위해서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교운영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 관리국장 신재철

3조 2항을 아까 김정길위원님께서 발의하신대로 위원의 궐원된 때에는 며칠이내를 여기서 넣어 주시지요.

● 간사 김정길

한 15일정도면 충분합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면 한 20일정도, 왜냐하면 이게 학부형들이 뽑게 되어 있어요.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 간사 김정길

그런데 이게 말이지요, 학부형이 또 뽑을는지, 또 일반 인사가 궐원이 될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궐원될지 모르는 경우이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만일의 경우 시일이 제일 오래걸리는 학부모 회의에서 뽑아야 할 경우를 생각을 했을 때에는 기일을 20일 정도로.....

● 위원장 이경윤

제가 학교에서 이러한 학부형을 상대로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쉽게 간단히는 안돼요.

학교행사가 따르고, 또 일반행사가 따르

고, 지역사회 여건이.

또 가정사정이 있고, 이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러한 보궐문제는 적어도 한달정도는 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제안을 해봅니다.

● **위원 조일환**

그런데 이게 전체 구성이 아니고, 한달 그러면은 너무 공백이 길어요.

한 20일정도만 해도 충분하고, 가정통신, 또 실제 학교에 가보면은 입후보 안됩니다.

대개가 다 담임선생님을 통해서 또는 그 위원회의 전체 학부모 이런데를 통해서 선출하게 되어 있고, 최소한의 리미트(limit)는 줘야 된다.

● **위원장 이경윤**

그러면 20일정도가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조일환**

그리고 6개월을 3개월로 하고.....

● **위원 박동기**

그런데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입법취지가 학기단위를 얘기하는겨?

● **관리국장 신재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1학기, 2학기.....

● **간사 김정길**

그러면 말이지요. 이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6개월이면 한학기인데 한학기동안에 그러면 전문성이 결여된 사람으로 해가지고 전부 어설프게 행정을 하거나 이게 안된단 말이지요.

● **위원 조일환**

그거는 제가보면은 3개월정도로 되는게, 왜그러느냐 하면 이걸 적용하는데는 3개월하더라도 학기중이라도 이건 빨리 보궐선거를 하자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3개월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3개월정도로 하는게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별 이의가 없으면은 3개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없으십니까?

● **간사 김정길**

그리고 또 정수의 1/4이상인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수의 1/4이라면은 15명으로 봤을 때 두 사람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반인이 한 두 사람정도가 들어 갈 수 있거든요.

지역인사가.

그러면은 지역인사가 두 사람 다 빠져버리면은 지역인사가 참여 안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1/4보다도 조금 낮춰가지고 해놓으면은 예를들어서 지역 인사나 전문 인사가 두 명이 들어가 있는데 한 명이 궐원되고 한 명이 있을 때에 회의가 운영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일환**

1/4이라는 인원은 7인이상 15인인데 지금 청주같은 데는 15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조그만 학교에서는 사실 7, 8명이나 10명내외에요.

그러니까 1/4해도 별로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시골에 가면은 60명이 안되는 학교도 있어요.

그런데는 모이는 인원 수가 몇 명이냐 하면은 아무리 모일려고 애를 써도 열분 모으기가 바빠요.

그 뒤에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잘 이해해 주시면 이건 그냥 큰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4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4조)

(끝에 실음)

여기까지 우선.....

● **간사 김정길**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게 말이죠. 5조 3항에 보면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몇 군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토의한 바대로 중앙집행기관에서 자꾸 다른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청주 각 학교에 열군데고, 다섯군데고 겸직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자치적으로 운영하라는 이런 자율권이 보장이 안된다 이런 얘기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조항을 보면은 10군데도 좋고, 20군데도 좋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좀 잘못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일환**

거기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면은 대개 교육기관이라는 거는 해당학교의 학부모중에 장학사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학교운영에 활용하신다는 뜻은 좋은데, 지금 김위원님 말씀은 그래요, 어느 학교에 이 분들도 제한을 줘야지, 다른 위원은 겸할 수 없다, 물론 자기 일 외

에 이 분에 대해서는 어떤 뜻이.....

● 관리국장 신재철

여기 법에요, 27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보면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일상생활의 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양이면은 단양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그 지역에 국한돼서 얘긴데 그렇다고 이 양반이 이 학교, 저 학교 열군데 학교를 다 운영위원 하라고 하면은 하지도 않을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러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을 확보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몇 군데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법의 취지 그겁니다.

● 행정과장 이상찬

지금 현재 홍보하고, 이끌어 주는 그것 때문에 이걸 집어 넣은거지.....

● 간사 김정길

그런데 지금 싯점이 시발점이니까, 물론 집행청에 있는 분들이 나가서 지도도 해주고, 감독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좋습니다.

이게 뭐 10군데를 나가시든, 20군데를 나가시던 다 괴롭지, 이것이 정착이 되었을 때 말이죠, 아니 실 국장님들이 가서 물론 지역별로 가가지고 두군데 세군데 이렇게 관여를 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의 소지가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갖다가 직원수도 상당한 숫자가 부족한데 위의 지침대로 행정과장님 보고 이번에 지역에 이렇게 시행이 되니까, 당신이 좀 갈만한데가 한 열군데 가서 지도를 하시오.

이러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예요.

●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승낙을 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위원으로 안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시범학교 운영을 해보니까, 대개 교육청에 장학사님들이나, 관리과장님한테 본인이 2개 학교이상을 한 경우가 하나도 없습니다.

● 위원 조일환

그러면 뭐 2개 교로 제한해도 괜찮겠네.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해학교 소재하는 지역을 일상생활의 근거지로 하며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학교 소재하는 지역을 기업활동을 근거로 하는 기업경영자, 당해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 한 자", 이 셋이 합쳐서 10%내지 30%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할래야 할 수도 없는 정도예요.

● **간사 김정길**

그러면은 뭣 때문에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 놓았냐 이거지요.

많이 할 수 없다면 한군데면 한군데, 두군데면 두군데 딱 해가지고 그냥 제한을 해놓지, 이걸 그냥 집행청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문호를 확 열어놓았냐 이겁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이것은 절대 통제가 아닙니다.

● **간사 김정길**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생각뿐이 안된단 말이예요.

● **관리국장 신재철**

이게 보면요, 한 사람이 한다고 절대 안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뭐 지역실정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장학사가 나가서 떠든다고 됩니까, 절대 안됩니다.

그래야 끼어야 한 사람 낄텐데 이것 가지고 얘기해야 안되는 거거든요.

● **위원장 이경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김정길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고, 또 여기 안으로 나온 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예요.

그러나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적에는 그렇게 우려할만한 일이 아니고, 또 학교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 그 때 가서 정착이 되면 이것은 두명, 또는 한 개교 뭐 이러한 제한을 해서 규정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이 안은 그렇게 중요한 사항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아량으로 받아 주시기를 그래서 본안대로 그냥 통과하지요?

● **간사 김정길**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도의회에 가면은 도의원들이 이 항목을 또 지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진지하게 토의를 해가지고 2개교라든지, 3개교라든지 못을 박아서 넘겨주는 것이 원안이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 가가지고 이게 두군데나 세군데를 못이 박혀 올 때에 우리 소위원회는 뭡니까, 이게.

그래서 3개교로 지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 **관리국장 신재철**

2개교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2개교정도로다 어때요,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면 문맥자체를 아주 고쳐야 돼요.

● **위원장 이경윤**

아니 왜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3개교를.....

● **행정과장 이상찬**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을 제외하고는 2개교이상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안병일**

위원장님, 아까 우리 김정길위원님의 말씀을 꼭 삽입을 하려면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2개교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이러지 말고, 차라리 위원은 한 학교이상은 할 수 없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여기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2개교 이상을 할 수 없다, 이것을 교육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도 2개이상은 할 수 없다 이런다면 오히려 이것을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어떻게 문맥을 매끄럽게 하던가.....

● **위원 조일환**

안위원님 이러면 돼요. 교육행정기관의 인사는 2개교의 위원을 담당할 수 있고.....

● **위원 안병일**

제 3자들이 볼적에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별도로 두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 같고, 차라리 그러면 2개를 겸할 수 없다고 하나로 그냥 못박아 놓아두면은 교육행정기관에 있는 사람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이 운영위원은 타학교를 겸직할 수 없다, 하나로 문맥이 맞아요.

●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게 하실려면요, 3항을 위원은 다른 학교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위원 박동기**

내 생각에는 말이지, 여기 교육부 안대로 교육행정기관에 있는 분들이 홍보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인포매이션(information)도 주기 위해서 그 위원으로 모시는 건데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 1인 2역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여. 그러면은 교육행정기관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2개교 겸임할 수 있는겨.

● **위원 안병일**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한 번 할래요.

이게 말이죠, 굉장히 사항이 중요해 가지고, 조례심사위원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 무식한 사람들이 한게 아니냐,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사항이면 대충 대충 넘어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는 역점을 두고, 그냥 웬만한 건 대충 넘어가고 해요.

이것도 다 생각해 갖고 만들었는데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 **위원 조일환**

안위원님, 저도 지루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가 이 번에 만들고 다음 회기에 개정할 수도 없는거고, 또 이것이 도의회 가서 교사분과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잘했네, 잘못했네 거기도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학교장 문제같은 것 상당히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충분히 교육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서 올렸는데 도의회 교사분과 위원회에서 야 이것 잘못됐다, 하고 거기서 수정을 하면은 오히려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조금 저기하더라도 심도있게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분량이 해보면은.

● **위원장 이경윤**

위원장의 입장으로서는 그저 일사천리로 통과했으면 제일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위원들의 의견이 나오면은 최대한의 수렴을 해서 의견교환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 할 수 없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3항은 문구수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면 3항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2개교 이상을 겸할 수 없으며, 기타 위원은 다른 학교위원을 겸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뜻이 그게 아닙니까, 그 문맥은 그런 지금 뜻으로 정서를 해서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그 3항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위원은 2개교 이상의 학교위원을 겸할 수 없으며, 다른 위원은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제6조로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6조)

(끝에 실음)

별 이의 없겠습니까?

● **위원 조일환**

아닙니다.

거기 6조에요, 교육부안을 보면은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써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수와 수당은 다르지요, 그래 수당은 급여를 말하는 겁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요, 위원회에 나오는 회의수당입니다.

● **위원 조일환**

하여튼 그건 알겠는데 여기서는 봉사직으로 수당등 그런데 여기는 저희 안을 보면은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그러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비라든가.

● **관리국장 신용철**

안받는 거지요.

● **위원 조일환**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심도있게 알아 봤는데 수당과 보수는 별개입니다.

봉사직으로 하는데 무보수다 하면은 급여,

일당은 안받는거고, 수당이라는 것은 항목을 정하기에 달려있고, 그래서 이 수당이라는 말을 넣느냐 안넣느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 박동기**

위원은 봉사직으로써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러면 되고.....

● **관리국장 신재철**

여기서의 보수는요. 월별로 지급하는 보수의 성격이 아니라, 반대급부로 오는 보수입니다.

● **간사 김정길**

18조의 운영경비 등에 보면은 말이지요.

"위원의 연수여비, 회의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 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해놓았단 말예요.

그러면은 이걸 지금 무보수로 한다 해놓고 학교의 규정으로써 문을 열어 놓은게 아주 묘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 **위원 안병일**

아니 이건 그게 아닌 것이 무보수 일정한 보수를 정한 것이 아니고, 그 때 나왔을 때 수고한 사람 담배값이라도 조금 줬다고 해서 그런 문제에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냥 그렇게 넘겨 버려요.

(장내 웃음)

● **위원장 이경윤**

그럼 4항에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이건 별 이의 없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7조 위원의 퇴직.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7조)

(끝에 실음)

● **위원 조일환**

거기에서는 "위원 퇴직"이라고 그랬는데 어떤데는 그것을 "위원의 자격상실"이라는 말도 썼고, 그래서 저는 퇴직이라는 말보다는 위원직 상실이 좀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는 제7조의 위원의 퇴직이라기 보다는 위원의 자격상실 그런쪽이 좋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예.

● **위원 조일환**

그래서 그렇게 할려면은 맨 뒤에도 3회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자격이 상실된다.

그리고 이것이 상실됐으면은 반드시 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행정사항이니까 됐고,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1항에 그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퇴직된다, 그 다음에 2항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자격상실이 두 가지가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법률용어로다가 퇴직으로다가 그 직을 물러나게 한다는게 퇴직이거든요.

● **위원 조일환**

여기에 보면은 학부모의 선출과정에서의 신상자료를 허위로 하면 자격상실 한다는 것은 여기 있습니다.

그건 별 문제가 없고 직장에서 퇴직 그런 게 아니라.....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 그건 조금 문제가 다른 겁니다.

법률용어가 퇴직은요, 본인의 위원으로서의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않았을 때에 그 직을 물러나게 하는게 퇴직이고, 자격상실은 이러 이렇게 정당하게 하지 않았을 때 자격이 상실이 되는거고, 그건 용어가 다른겁니다.

● **위원 조일환**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격상실로 정정을 하는 걸로 제안합니다.

● **위원장 이경윤**

그러면 지금 조위원이 얘기한 1항에 불참할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자격이 상실된다, 여기에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항은 됐고, 8조.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8조)

(끝에 실음)

여기에 이의없지요?

● **위원 조일환**

그거에 대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해서요. 제 나름대로 조금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산지역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원회의 구성비율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규정으로 정한다.

아까 한 비율이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번거롭지 않으면은 이 조례로다가 해주면 또 이 조례만 다루는 이런 데도 있고, 아까 그 비율 7인이상 15인이하, 또 교원위원은 몇 %하는 것을 여기에 삽입을 해주는건 어떻겠는가, 이런 식으로 몇 조의 규정에 준한다.

● **관리국장 신재철**

그럴 것 같으면 여기 시행령을 다 집어넣어야 돼요.

다른 조문도 그거에 의해서 다 집어넣어야

돼요.

● **위원 조일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그러면 이의없는 걸로 알고, 제9조 심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9조)

(끝에 실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조일환**

이것도 제가 보니까, 부산같은 데는 아까 교육과정 운영방법 이것말고, 앞에다가 교과용도서, 부교재, 또 정규학습 시간이외에 방학중의 교육활동 여기까지를 심의대상으로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제9항에 가서 요청한 사항, 제2조의 제1항 제8호의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은 위원 1인이상의 소개를 얻어서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이 건의라는 말하고, 청원이라는 말하고 어떻습니까?

● **행정과 행정계장 안용균**

이게 지금 의결기관같으면 청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작년도 시범학교를 정할 때 청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심의기관이 되면서 이 건의로 됐습니다.

● **위원 조일환**

그러면 대전에서는 보시다시피 청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는 의결기관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쓴겁니까?

● **행정과 행정계장 안용균**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교육부에서 회의할 때 이것 때문에 심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육부가 최종으로 넣기를 건의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 **위원 조일환**

그런데 대전은 거기도 다 했을텐데, 의결기관이 아닌데서는 청원을 못쓴다.

● **행정과 행정계장 안용균**

그래서 작년도에는 청원으로 했다가 금년에 건의로 바꾼겁니다.

● **위원 조일환**

아니 바꾼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심의기관이지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 **행정과 행정계장 안용균**

예.

● **위원 조일환**

그렇다면은 제가 재론을 안하는데 대전은 청원이라는 말로 바꿨다는 말이지.

● **위원 안병일**

그런데 이것은 법률상 어떤 회의 의결기관

의 규정상 본다면 건의가 맞지 청원은 아니단 말이지. 확실한 의결권을 행사해서 그것은 절대 결정권이 되든, 군의회나 지방의회, 도의회 이런 데서는 청원을 의원 몇 명의 소개로 낼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구속력은 있긴 있되, 절대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닌 심의기관에서는 청원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건의가 맞아요.

● 위원 조일환

아니 왜냐하면 건의라는 것은 받아서 뭐 취사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청원이라는건 서면으로 입증을 해주고, 법적으로 논해야 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심의기관이다, 의결기관이다, 나는 지금도 잘 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심의기구라는건 뭐고 의결기구는 뭐하러 하느냐 이거요.

예, 알겠어요. 그러면 청원이라는 것은 빼고.....

●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게 하고 아까 교육과정운영방법, 교과용도서 이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29조 운영위원회 기능 등 뭐 법에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조일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가겠죠?

● 위원 조일환

예.

● 위원장 이경윤

예, 다음 10조.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10조)

(끝에 실음)

● 위원 조일환

이것은 정기회기 횟수가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연 1회라든지, 연 2회라든지.

그래서 저는 이 임시회의도 전체 회의를 어떤 10회이상 30회를 넘을 수 없다든가, 아니면 정기회의는 학년초에 3월 30일까지 회기를 하고, 결산도 최소한도 학기별로 한다든가, 정기회의의 횟수나 기간이 명시되는 게 명확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정기회는 일반적으로 연 한 번이 정기회이거든요.

● 위원 조일환

아, 그러면 연 1회로 하고, 그럼 회기계획 규정은 필요없습니까?

● 행정과 행정계장 안용균

그것은 학교 실정에 따라서 규정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 위원 조일환

규정으로 하겠다, 조례에서는 안정해 주고, 그러면 이제 임시회도 10회이상 30회 이건 어떻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너무 이게 30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정부에서 제한을 정한 것은요.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좋은데, 툭하면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 **위원 조일환**

아니 그것은 상한선이고, 하한선을 말하는 건데 임시회 한 번해도 그만이고, 두 번해도 그만인데 이게 최소한도에.....

● **관리국장 신재철**

하한선까지 정하는 것은 조금.....

● **위원 조일환**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기전에 대비표를 보시면은 제10조가 있어요.

교육부 예시에 비교표를 보시면은 서류제출 요구를 저희들은 삭제를 했는데 이게 운영위원회 본 기능을 살린다면 제가 볼때에 이것은 삭제를 하지 않고, 원안대로 예시대로 삽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 **행정과 행정계장 안용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부에서의 예시안 10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교육부에서 담당계장들이 교육부하고 협의할 적에 삭제하기로 각 시·도가 똑같이 협의했던 겁니다.

왜 삭제를 하기로 했느냐면은 이 서류제출 요구사항이 안건의 심의와 관련되는 서류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걸 구태여 넣지 않아도 당연히 안건을 갖다가 운영위원회 서류가 가는건데 구태여 뭘 하느냐 해서 각 시·도가 넣지 않기로 했었는데, 일부 시·도에서 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넣은 시·도가 한 두군데 있습니다.

● **위원 조일환**

이것은 정상적으로 서류제출은 그런게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해석할 때는 그렇거든요.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한 어떤 그런 사항이지, 예를 들어서 무슨 규칙사항에 대해서 어떤 구입에 대한 자료를 달란다든가, 자료제출권같은 것 아니겠어요.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예요.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제출인데요.

● **위원 조일환**

글쎄 그러니까, 안건이 상정됐을 때 거기에 어떤 필요한 자료를 더 요구할 수 있다, 그런 것 아닙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은 안건에 필요한 부속서류는 서류에 첨부돼서 나가거든요.

● **위원 조일환**

그것은 아니죠. 여기서도 저희한테 주는

것에서 제가 심의를 한다면은 얼마든지 더 필요한게 있지, 왜 삭제를 하기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넣은 데도 있고, 삭제한데도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개를 넣었네, 그리고 두 개는 안넣고, 제가 혼자 생각할 때에는 아하 어떤 안건이 올라왔을 때 보충자료라든지, 또 위원회에서 필요한 예를든다면은 가격조사라든지, 저는 자료제출로 봤어요.

● 행정과장 이상찬

그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최대한의 서류를 부의안건으로 만들것이 아니냐, 그런 다음에 안건을 제출할 것 아니냐.

● 위원 조일환

그건 그래요.

● 행정과 행정계장 안용균

아니 그래서 중복이 된다고 그래서 왜냐하면은 안건을 갖다가 심의·의결할 때는 당연히 그 서류가 붙게 되는데 그 조항을 구태여 서류제출 요구라고 해서 또 뭐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삭제를 하게 된겁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하나 이런 건 염려가 되는 건 있어요.

직접 관련된 서류라 해가지고 나쁘게 봐서 뭐 가져와라, 연관지을려면은 다 지을수가 있거든요.

그럴려면 그 학교에서 운영위원회에 말려가지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해놓고, 얼마든지, 감시를 할 수 있으니까.....

● 위원 조일환

신국장님 선생님들이 말려갈 일은 절대로 없어.

학부모 관계, 위원들이 말려가요.

거의 다 학교장 의견대로 안건 올리기 전에는 충분히 다 상의를 합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그런데 이걸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좀 기피한다고 그랬는데 그나마 뭐 가져와라, 자꾸 관련되는 것 이래 놓으면은.....

이건 앞으로 정착이 되면은 스스로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스스로 자료를 낼 수 있도록 정착이 돼야죠.

● 위원 조일환

하여튼 저는 이것을 좀 삽입했으면 제안을 합니다.

● 위원장 이경윤

예, 정식으로 조위원께서 10조 삽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 위원 박동기

아니 넣으나, 안넣으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넣은다고 해서 크게 나쁠건 없잖어?

● 행정과 행정계장 안용균

안될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좀 어려운 일이지마는 제10조는 삽입을 해 주시도록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것은 동의를 받은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제11조.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11조)

(끝에 실음)

● **위원 조일환**

이것은 좀 죄송합니다.

찬성으로 결정, 통상 이런 의결기관에서는 동수일 때는 부결로 보는게 통상인데 이것을 다시 위원장에게 결정권을 주자,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의견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죠, 일반 회의규칙이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조일환**

요즘에 뭐 의장님이 관행이 그렇다는 말씀을 저는 들었는데 동수일때는 이거는 부결이라는.....

● **관리국장 신재철**

일반 회의규칙은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 **위원장 이경윤**

그건 여기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지요.

한 번 찾아보고, 공부를 하고 넘어가지요.

(집행기관석에서 찾아 보고 있음)

● **의사국장 엄갑도**

그건 저 의장님이 같이 표결을 했을 경우에 그때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되고, 일단 의장이 바로 그 표결에 참석을 안하고 위원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고, 의장님이 표결에 참석해서 동수일 때는 부결이고.....

● **위원 조일환**

그럼 이거는 위원장은.....

● **관리국장 신재철**

표결 안하지요.

일반 회의규칙에서는 위원장은 회의진행만 하고 표결을 안합니다.

● **위원장 이경윤**

의장으로서 직무수행을 하면서도 표결에 참석하지 안했을 때에는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의 권한으로다가 부결을 할 수 있고, 또 표결에 들어가서 위원의 자격으로다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 **위원 박동기**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제 위원들이 표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 동수라 이거여.

그 위원장은 어느쪽이냐 이거여, 찬반을 위원장이 결정하면 됩니다.

● **위원 조일환**

그건 맞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우리가 표결할 때 위원장님 참석.....

● **관리국장 신재철**

안하시죠.

어느 때 참석을 하시느냐면 이전마냥 투표를 할 때는 참여를 하시고, 그외 의사진행은 절대 찬반투표를 안합니다.

● **위원 조일환**

그럼 위원 동수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겨?

● **관리국장 신재철**

그때 의장님이 결정을 해서 나 찬성이다 그러시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 **위원 조일환**

그러면 위원중에도 위원장이 뽑혔어요, 여기도 그런데 위원장은 표결권이 없다.

● **관리국장 신재철**

의사진행권이 있는 겁니다.

● **위원 조일환**

그렇다면 이건 크게 문제될게 없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좋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다음 제13조.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13조)

(끝에 실음)

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14조.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14조)

(끝에 실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15조.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15조)

(끝에 실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 16조로 넘어가겠습니다.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16조)

(끝에 실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7조.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17조)

(끝에 실음)

별 이의없지요?

● **위원 조일환**

지금 빨리하시니까 제가 잘 못알아 듣는데 17조에 간사문제입니다.

이것을 조금 심도있게 짚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현지방문했을 때도 서무가 중학교도 있고, 국민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운영위원회 거의가 학사문제입니다.

물론 서류를 꾸미고, 사무적인 절차가 중요하더라도 사실상 교감은 위원도 아니고, 학교에서 보면은 어중간하게 일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사는 운영위원회 회의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무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서무책임자가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의견이?

● **관리국장 신재철**

그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는 있어요 사실.

일반적으로 거의가 학사업무인데 서무가 이 간사를 봐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게 옳으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느냐, 이 문제는 사실 고려해 보실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무가 전혀 그쪽 학사행정하고 관련이 없는 거라서 그것만 가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이나 모든 운영이 지금은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료를 받아가지고 간사는 교원으로서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 **위원 조일환**

지금 이중으로 해놓았는데 국장님 말씀같이 하면은 그 담임선생님들 전부다 학부모 상대는 선생님이 다해요.

그래서 이건 두길로 이렇게 묶어 놓는게 그냥 괜찮은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게 괜찮은가?

● **위원 박동기**

그냥 내비둬요.

왜냐하면은 그전에도 서무가 없을 때는 교원이 대개 했어요.

그러니까 교원 사무경감차원에서 학사행정이라고 하더라도 서무가 다 알아요.

● **관리국장 신재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서무 책임자를 당연직으로 묶느냐, 아니면 교직원중에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이 임명하느냐, 이렇게

풀어 두며는.....

● **위원 박동기**

당연직으로 하고, 서무가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이렇게 하는게 제일 나아요.

● **위원장 이경윤**

이건 통상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18조.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18조)

(끝에 실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19조.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19조)

(끝에 실음)

● **간사 김정길**

여기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다 된 것 같습니다.

거의가 끝났는데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에는 육성회라든지, 자모회라든지, 이런 자생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하는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하는 이 조항은 너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지요.

그렇다면은 운영위원회가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학부형회나 자모회나 이런 것은 그대로 다 존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학교에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자모회라든지, 학부형회라든지 이런데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걸 그 단체장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시켜 주면은 소외가 안된다 이겁니다.

그럼 운영위원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자모회나 또 학부모회에서 "이렇게 건의됐다", 전달을 해줄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해 놓고, 그리고 또 자율적으로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안만들어 놓고, 또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완전히 강제적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자생단체의 장을 운영위원으로서 추천을 해가지고 둘 수 있게끔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하는 이 강제조항을 삭제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야만이 학교의 자생단체에 있는 학부형이나 모든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생단체들이 도움을 줄려고 그러지, 모든 것은 회비를 낸다, 뭐 찬조를 낸다, 이렇게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만 싹 줘버리고, 거기서 질의된 사항이나, 결정된 사항을 공문으로 주든지, 이렇게 준다 이거예요.

주면은 자기들은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발언도 할 수 없고, 실정도 모르는데 상당히 그 유종의 미를 살릴 수 있는 이런게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조일환**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에서 자생조직, 또는 뭐 학교의 에어로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소년단이라든가, 자생조직 자율적으로 학교에 보니까, 그 책임자들 대개 운영위원이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그 분들의 참여를 운영위원회 참여를 막는게 아니예요.

단지 산하단체라는 말은 그 뜻을 제가 해석해 볼 때에 학교의 교육활동이 전부가 어떤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그 틀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떤 구속이나 그런 목적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생단체 어려움은 운영위원회에 같이 들어와서 협의를 할 수 있고, 나는 이 문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그 분들한테 활동에 활력을 줄려고 하는게 아니냐, 다만 우리 본도의 제안에서 "단"에 단서를 뺐어요.

이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는 것을 뺐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뭐 어떤 조직이라도 있겠죠, 자생조직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자생조직이라는 한계를 분명히 해줬다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항을 살리는 것이 좋겠다, 어떤 자생조직이든간에 뭐 교직원들의 친목장소에서도 자생이요, 뭐 그밖에 무슨 5학년이면 5학년 학급나름대로 어떤 조직도 자생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물론 학교활동에는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로 두되 이 허가를 받는 것은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발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까 김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하나로 꼭 들어가는건 아니고, 그 문맥을 읽어드리면은 그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

체로 둘 수 있되 "둘 수" 입니다. "두되"하면은 아주 강행규정으로 들어가는데 둘 수도 있고, 안둘 수도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산하단체로 본인들이 원해서 더 학교발전을 위해서 내가 그 산하로 들어가서 일익을 담당하겠다 하면은 들어 올 수도 있고, 우리는 그거 다 필요없이 자생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직을 받겠다 하면은 그냥 운영하셔도 되는 겁니다.

● **간사 김정길**

물론 자생단체라 해가지고 교장선생이 인정하는 전체를 이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 학부모회나 뭐 이런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 그 단체장은 학교운영위원에다가 포함을 시키는게 좋지 않겠느냐.

● **관리국장 신재철**

그것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법으로 나와 있어요.

운영위원회 구성비율은 당해 학교의 학부형을 대표하는 자 이게 40%내지 50%내에 들어가 있어요.

● **간사 김정길**

그럼 됐습니다.

● **위원 조일환**

제가 말씀드린 것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그 자생조직의 명시를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 **간사 김정길**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까?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셔야지, 예를 들어서 전교조다 해가지 학교장이 인정을 안해주는데 "우리 단체다" 이래가지고 전교조 대표라 해가지고서 "참가해야 겠다" 이러면 안되지요.

● **위원 조일환**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데 이걸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

● **위원장 이경윤**

그 문제는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을 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 그 조직이라는 그 자체를 그 사람들이 조직하는 걸 누가 말리며, 그게 허가 받아서 조직하는겨.

● **간사 김정길**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인정해 주는 단체야 되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그러니까 대표자가 그 활동에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냥 아무나 와서 막 떠들면 안되니까, 운영위원회 허가를 받아서 와서 자기의 발언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깁니다.

● **위원장 이경윤**

단서를 딴데는 삭제를 했는데 그것을 넣자는 말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며는 이 19조에 대해서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그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20조)

(끝에 실음)

이의 없습니까?

● **위원 조일환**

여기 교육감이 교육장, 학교장에게 심의요구권을 상당히 저희쪽에서는 강제규정을 한 겁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운영위원회가 부당하게.....

● **위원 조일환**

이것도 안될 때에는 어쩔 수 없는건데 하여튼 시정을 해보자, 어떤 강제규정은 아니지요, 이게.

● **행정과 행정계장 안응균**

임의규정입니다.

● **위원 조일환**

예, 좋습니다.

● **위원장 이경윤**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21조.

〈참 조〉

3.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조례안(제21조)

(끝에 실음)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조일환**

이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 제2조에 보면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도 통과안됐고, 이것은 당연히 이 문구는 수정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996년 이번에 최초로 되는 것은 1996년 조례공포한 날로부터 몇 일 이내로 한다든가 어떤 이런 규정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 **관리국장 신재철**

우리는 그 안에 통과를 될걸로 해서.....

● **위원 조일환**

그런데 지금 안됐으니까.

● **간사 김정길**

이게 말이지요, 이 시기가 조금 그런데요, 이걸 우리가 오늘 소위원회를 해가지고, 본회의를 통과해 가지고, 도의회에 아마 3월 16일부터나 17일부터나 될겁니다, 그럼 거기서 통과가 돼가지고 다시 교육감한테 통보를 해서 교육감님이 공포해가지고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런 절차를 밟으다보면은 아마 6월달정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빨라야 5월 중순이나 5월 하순되는데 지금 그러면은 일선학교에서 지금 조례도 규정이 전혀 안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고 있단 말예요, 이걸 어떻게 하자는 말이예요.

● **위원 조일환**

위원님 그것은 우리 조례를 만드는 사항은 별개고, 그건 나중에 어떤 행정질의를 하시든 별개고, 지금 우리가 조례를 축조심의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도의회에 통과가 되면은 통과한 날로부터 공포가 되는 거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아니지요.

● **위원 조일환**

우리가 공포하는 거지요, 그러면 며칠정도면은 공포합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그냥 공포한 날부터 개시하여가 어떻습니까?

● **위원 조일환**

그러면 되지요.

● **위원장 이경윤**

그러면 그 조항은 월 일을 고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조일환**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학교장"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문제는 내일로 소위를 미루시겠습니까?

내일로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토의를 하고 한 번 만들면 상당히 어려운 얘기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괜히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너무, 제 나름대로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좀더 잘 해보자는 뜻이니까 개인적인 저기는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경윤**

그럼 위원님들 내일 회의는 몇 시부터 하는게 좋겠습니까?

● **간사 김정길**

내일은 수정안도 만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전에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점심 먹고 오후에 하지요.

● **관리국장 신재철**

오늘 다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는 데요.

● **위원장 이경윤**

아까 미결로 돌렸던 교육장으로 하느냐, 학교장으로 하느냐 그것만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 **위원 조일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 교육개혁이 추진되고 정말로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작은 학교라도 이것이 운영이 돼서 학원이 민주적으로 되고, 소위 우리 수혜자 중심인데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자는 그런 충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학교장이 안하고, 하고 마음대로 한다, 그래가지고는 학생 100명 이상의 학교가 충청북도에 얼마나 됩니까?

수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는 교육개혁에 국가의 성패를 건겁니다.

교육이 변하지 않고는 안된다, 저는 좀 과장된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우리 교육자들이 발벗고 일어서야 되는데 제가 사석에서 우연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안해?", "아이 권장을 안하는데 미쳤어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퍼"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안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장이 해라 소용없어요.

왜 우리가 막대한 5% GNP 해가지고 교육이 변해라, 교육이 사람만들어 주시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문제 학교장 여기서 조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도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당해 학교보다는 한차원 위에 있는 교육장이 평가하는게 나을 거고, 교육감이 평가하는게 나을 것 아니냐, 행정을 통제하고, 이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감님 이번의 인사말씀에 교육개혁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 정말로 이 문제는 상당히 이 한 글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간사 김정길

이게 참 문제는 있습니다.

초·중학교는 여러 가지 시·군 교육장님이 관장하지마는 고등학교는 또 교육감님이 관장한단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교육감님이 너무 강경하게 이거해라 이렇게 문항을 해놓으면은 이게 또 강제로 하는 이런 생각도 들겠는데 이 문항을 조금 규정에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학교가 안하고 있을 때에는 교육감님이 소위 들어간다면 교육장님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요.

뭐 교육장 넣고, 또 교육감 넣고 또 넣어도 상관은 없겠지마는 문항을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한다든지, 뭐 지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기 보다 그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같으면은 지금 시·군 교육장님 그냥 해도 좀 부드럽게 해도.....

● 위원 조일환

그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님하고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꼭 하라고 지시하겠다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 **관리국장 신재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20조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교육청의 지원지도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1항이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가 있고, 그 다음에 2항 "교육감 및 교육장은 위원회에 대하여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교육감, 교육장이 그렇다고 해서 등한시 하고, 나는 몰라라 하고 내놓는건 아니예요.

● **위원 조일환**

아니 국장님 그건 지원·지도하는 것은 이 설치하고 별개죠.

그게 잘 되도록 운영이라는게 있는 거지.

저도 그 해석을 해봤는데 그거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했을 때에 지도하고 지원한다는 거지, 여기에 설치자체는 그래서 교육감님이 부당하게 여기 형편도 안되는 여기 해라 그럴 수도 없고, 적어도 교육부, 그 다음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 국가적인 이런 교육개혁의 행정을 하시지, "뭐 그 학교되지도 않을 것"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장 재량권을 맡겼을 때에는 우리 충북교육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에 상당한, 또 교육위원회에서 아무리 교육개혁해라, 학교운영위원회해라, "우리는 뭐 안할 수도 있는데 학교장 재량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되도록 여부를 결정한다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으로 살려 주는게 좋겠다.

● **위원장 이경윤**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리 것과 마찬가지로 표결에는 되도록 부치지 않겠습니다.

충분한 정의를 좀 다시 한 번 내려 주시기를 위원님들에게 호소하겠습니다.

● **간사 김정길**

이거 넣는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전 지금 조위원님 말씀과 초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생각을 한 번 해보았는데요.

100명이하이거나 6학급이하인 학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장,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원 등을 여론을 수렴하여 그 설치여부를 결정하고 또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 **간사 김정길**

집행부에서 말이죠. 그 문안이 들어 간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뭡니까?

● **행정과장 이상찬**

지금 말이에요, 이 학교운영위원회를 일방적으로 교육감님이 해라.....

● **간사 김정길**

지금 제가 왜 묻느냐면 말이죠. 지금 교

육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학교개혁을 하자고 해서 만들어진거지요.

그런데 학교운영을 공개시키자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도 지금 여기서 드릴 단계가 아닙니다마는 천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다 받고 있거든요.

지금 한 87%정도 받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 반대예요.

거의 반대인데 어떤 그런 강제규정이 하나 없으면은 제가 교장이라도 귀찮은데 안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조항을 넣어 놓았을 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없습니다.

다만 아까 자꾸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위원님하고 우리 하고 생각이 다른게요.

조위원님은 이렇게 교육장이나 교육감님이 하도록 해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한다 했는데 저희는 그만한 필요성이 있는 학교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이걸 여기서 교육감이 해라, 교육장이 해라 그것은 거꾸로 가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넣을려고 하는 겁니다.

● **간사 김정길**

그러면 우리가 이래 놓더라도 교장선생님들의 그 자질이나, 또 여러 가지의 입장에서 해야될 여건인데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 **관리국장 신재철**

그렇지요.

● **간사 김정길**

그러면 이 조항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 박동기**

그런데 나는 말이지요.

아까 얘기를 한게 뭔고 하면은 나는 그 조항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소규모 학교는 직원수도 적고, 좀 작은 학교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실은 운영위원회 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이런 얘깁니다.

그건 학교장이 너희들이 알아서 한 번 의욕적으로 할려면 하고, 정 못할 것 같으면 그만둬라, 그래서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교장이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원안은 맞는다 이거여.

● **간사 김정길**

박위원님, 물론 충분하게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말 미니학교, 엄청난 소학교에 그걸 안됐다 해가지고 교육감님이 아니 왜 이걸 안하느냐 이야기 하실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 **관리국장 신재철**

다만 이거는 저희가 염려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한 심층분석까지 해주셔서 이런걸 넣으라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

까지도 걱정을 해서 도의회에 가면은 교육감이 자율성해가지고 맨날 떠드는게 신문에 나는게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준다고 그랬는데 뭐 교육감, 교육장이 그걸 관여를 할려고 그러느냐, 혹여 그런 문제까지 나올 문제도 되고.....

● **위원 박동기**

그리고 저 학교에 지침내려 갔을 때에 학교장들이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더니 뭐 전부가 도에서 간섭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까봐 그러는겨.

● **위원장 이경윤**

예, 알겠습니다.

잠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장의 권한으로다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 1항에 이 학교장과 교육감, 교육장 이 문제 가지고 참 장시간 논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토론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일 오후에 다시 회의를 갖도록 해서 그때 결정을 짓도록 할테니, 그 안에 좀 더 충분히 연구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간사 김정길**

아니, 오늘 확정을 해서 이름을 지어줘야 수정안을 만들어 가지고 내일 오후에 우리가 내일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 **관리국장 신재철**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 **간사 김정길**

집행부에서 좋다고 그랬으니까요.

● **위원장 이경윤**

예,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오후에 하는 것을 정정을 해서 오늘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참 충정어린 마음에서 모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여 내일 2차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마련하여 제2차 소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하실 말씀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7시 30분 산회)

o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경윤, 간사 김정길, 위원 조일환, 박동기, 안병일.

o 출석공무원 : 5명

관리국장 신재철, 의사국장 엄갑도, 의사과장 강인형, 행정과장 이상찬, 행정과 행정계장 안용균.

o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별첨 1.

o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본회의 별첨 3.

o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본회의 별첨 4.

제61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 2 호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

1996년 3월 26일 (화요일) 14시 00분

의사일정 (제61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14시 00분 개회)

1.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경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전반적인 심사를 마쳤으므로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

2.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이경윤

이어서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어제 심사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수정조례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정길

간사 김정길위원입니다.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경윤

예,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토대로 설명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반대토론을 하시기 전에 맨 마지막에 부칙 제2조란을 다시한번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의 문맥상에 그 앞뒤가 잘 연결이 됐는가, 안됐는가 들어보니까 조금 생각해 볼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해서 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 간사 김정길

이게 그 얘기가 아닙니까, 제2조중 처음에 올라왔던 것이 "'98년 3월 31일까지의"를 그걸 고쳐가지고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개시하여" 그게 공포가 5월초가 될는지 모르니까말이지요.

"공포한 날로부터 개시하여 1년이상 2년이내의"로 한다 그 말이 아닙니까?

● 위원장 이경윤

예, 위원님들 그 문제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으면은 문맥의 연결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토론 없으시면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찬성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분 계시지 않으면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정안과 원안을 각각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바랍니다.

(5명 모두 거수)

표결결과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 위원 5명 만장일치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본 소위원회가 심사한 2건의 심사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작성하여 3차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05분 산회)

0 출석위원 : 5명

위원장 이경윤, 간사 김정길, 위원 조일환, 박동기, 안병일.

0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본회의 별첨 4.

0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 본회의 별첨 7.

(별첨 1)

條例審査小員會 議事日程(案)

第61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臨時會)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 第1次 小委員會 ●	
1996. 3. 25. (月) 14:00 -	1. 開會 2. 委員長 選任의 件 3. 幹事 選任의 件 4. 小委員會 議事日程(案) 5. 忠淸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等의 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6. 忠淸北道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關한 條例案 7. 散會	
	● 第2次 小委員會 ●	
1996. 3. 26. (火) 10:00 -	1. 開會 2. 忠淸北道敎育委員會敎育委員議政活動費等의 支給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 3. 忠淸北道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關한 條例案 4. 條例案審査報告書作成의 件 5. 散會	